

협정별 불인정공정 및 최소허용기준 사례수집 및 연구분석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014. 12.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 출 문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사업』에 관한
용역 중 「협정별 불인정공정 및 최소허용기준
사례수집 및 연구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기 영

연구진

〈연구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진 병 진 (선임연구원)

〈연구진〉

임 병 호 (연구원)

박 진 우 (연구원)

이 설 아 (연구보조원)

배 철 한 (연구보조원)

요약문

- 수출물품이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제조과정에서 각 협정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준수와 충족이 필수적
- 그러나 각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실제 생산 활동 과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또한 각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는 불인정공정*과 최소허용기준** 등 적용방법이나 범위가 협정마다 상이한 특례 및 제한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판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
- **(불인정공정)** 역내에서 일정한 공정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순한 공정만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한규정으로 협정마다 차이가 있어 기업들이 자사 생산물품의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세번이 변경되나 실질이 변하지 않는 사례 】

재 료		가공공정		제 품
소(0102)	⇒	도축	⇒	소고기(0201)
멸치(0301)		건조		마른멸치(0305)
페니실린(3003)		소매포장		소매용 페니실린(3004)

【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나 실질이 변하는 사례 】

재 료		가공공정		제 품
유리섬유(7019)	⇒	직조	⇒	직물(7019)

- **(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있어 투입된 모든 역외산 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 하나, 협정에서 달리 정한 일정기준 이하의 소량이 사용된 경우 투입된 역외산 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정하는 특례기준으로 협정마다 적용되는 물품 종류와 허용비율 및 기준에 차이가 있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
- 이처럼 불인정공정과 최소허용기준의 경우 그 적용방법과 범위가 난해함에도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연구된 사례가 없어 수출기업이 당해 특례기준을 활용하는데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발효된 FTA협정 및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콜롬비아 FTA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 및 최소허용기준에 대한 연구 분석 실시
- 협정별 불인정공정 연구 분석
 - 불인정공정의 개념과 도입목적에 파악한 후, 개별 협정별로 불인정공정 관련 규정을 분석
 - 개별 협정별로 불인정공정의 규정방법 및 포함내역을 분석하고, 해당 공정들이 물품의 실질적 변화(세번변경)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 불인정공정을 총 59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한 후 이를 다시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별 협정별로 해당 공정의 규정여부를 분석하고, 개별 공정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제시
 - 개별 공정별로 주로 적용될 수 있는 품목군을 농축산물, 섬유 및 의류, 화학제품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제시
 - 불인정공정의 적용 및 적용제외 사례를 기업의 실제적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제조공정과 제조명세(BOM : Bill Of Materials)를 근거로 설명

협정별 불인정공정 근거규정

협정명	근거규정
한-칠레 FTA	· 제4.13조(불인정공정)
한-싱가포르 FTA	· 제4.16조(불인정공정)
한-EFTA FTA	· 부속서 1 제6조(불충분공정)
한-아세안 FTA	· 부속서3 제8조(일반품목 불인정공정), 부록3 제2조(섬유류 불인정공정)
한-인도 CEPA	· 제3.6조(불인정공정)
한-EU FTA	·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한-페루 FTA	· 부속서3 제3.5조(불인정공정)
한-미 FTA	·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규정
한-터키 FTA	·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한-콜롬비아 FTA	· 부속서3 제3.14조(불인정공정)
APTA	· 부속서2 제3조(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 물품)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연구 분석

- 최소허용기준의 개념과 도입목적에 파악한 후, 개별 협정별로 최소허용기준 관련 규정을 규정방법 및 포함내역 중심으로 분석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협정명	근거규정
한-칠레 FTA	· 제4.6조(최소허용기준)
한-싱가포르 FTA	· 제4.10조(최소허용기준)
한-EFTA FTA	· 부속서 1 제5조(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한-아세안 FTA	· 부속서3 제10조(최소허용기준)
한-인도 CEPA	· 제3.8조(최소허용기준)
한-EU FTA	·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 품목별원산지기준 주석 5, 주석 6
한-페루 FTA	· 부속서3 제3.7조(최소허용기준)
한-미 FTA	· 제6.6조(최소허용기준)
한-터키 FTA	·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 품목별원산지기준 주석 5, 주석 6
한-콜롬비아 FTA	· 부속서3 제3.7조(최소허용기준)

○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관련 규정 비교·분석을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 도출

구 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미국	EU·터키	페루	콜롬비아
가격 기준	일반 품목	8%	10%	10%	10%	10%	10%	10%	10%	10%
	농수 산물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제외)		1류~14류 적용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중량 기준	섬 유	8%	8%	10%	7%	10%	7%	8~30% 일부 가격기준	10%	10%
근 거 규 정		제4.6조	제4.10조	부속서3 제10조	제3.8조	부속서 I 제5조 제2~3항	· 제6.6조 부속서6나 · 제4.2조제7항 (섬유)	제5조 2항 부속서1의 주석5.1 부속서2 목록	제3.7조	제3.7조

○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과정에서의 최소허용기준 적용여부 검토

- 최소허용기준 적용여부, 적용 시 적용비율, 제외세번 및 주요물품 최소
허용기준 산정사례 등 제시

목 차

Part 1 불인정 공정	1
I. 불인정 공정의 개요	3
1. 불인정 공정의 개념	3
2. 불인정 공정의 도입목적	5
1)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 보완	5
2) 역내가공촉진	8
II. 협정별 불인정 공정 규정 형태	9
1. 불인정 공정 규정형태	9
2. 협정별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10
1) 한-칠레 FTA	10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10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12
2) 한-싱가포르 FTA	13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13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15
3) 한-EFTA FTA	16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16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19
4) 한-ASEAN FTA	20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0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26

5) 한-인도 CEPA	27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7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31
6) 한-EU FTA	3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31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34
7) 한-페루 FTA	35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35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38
8) 한-미 FTA	38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38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57
9) 한-터키 FTA	58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58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61
10) 한-콜롬비아 FTA	62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6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64
1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65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65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67

III. 불인정 공정 유형별 제시 여부 68

1. 포장 관련	70
1) 협정별 포함 내용	70
2) 공정해설	76
2. 보존 관련	79
1) 협정별 포함 내용	79
2) 공정해설	81
3. 세정 관련	84

1) 협정별 포함 내용	84
2) 공정해설	86
4. 선별 관련	88
1) 협정별 포함 내용	88
2) 공정해설	90
5. 가공 관련	94
1) 협정별 포함 내용	94
2) 공정해설	105
6. 조립 관련	117
1) 협정별 포함 내용	117
2) 공정해설	122
7. 검사 관련	125
1) 협정별 포함 내용	125
2) 공정해설	127
8. 혼합 등 관련	128
1) 협정별 포함 내용	128
2) 공정해설	135

IV. 불인정공정 적용 및 적용제외 사례 검토 136

1. 포장 관련	136
1) 포장 또는 재포장	136
2) 적입(병, 상자 등)	138
2. 보존 관련	141
1) 운송 및 저장 목적 보존 작업(염수장 등)	141
2) 건조	143
3) 냉동	145
3. 세정 관련	148
1) 세탁(드라이 크리닝 포함)	148
2) 세척(먼지제거 포함)	150
4. 선별 관련	153

1) 채질	153
2) 분류 또는 등급화(선별 포함)	155
5. 가공 관련	158
1) 절단(축산물)	158
2) 절단(금속제품)	160
3) 분해 또는 해체	163
4) 분쇄(제분 포함)	165
5) 표시나 상표 부착(장식품 부착 포함)	167
6) 탈피(탈각 포함)	171
7) 뼈 제거(축산물)	173
8) 압착(농산물)	175
9) 도살(도축)	177
6. 조립 관련	180
1) 단순 조립	180
2) 세트구성(매칭 포함)	183
7. 검사 관련	186
1) 시험(실험)이나 측정	186
2) 품질검사	188
8. 혼합 등 관련	191
1) 혼합(농산물)	191
2) 혼합(화학제품)	193

Part 2 최소허용기준 197

I. 최소허용기준의 개요 199

1. 최소허용기준의 개념	199
2. 최소허용기준의 운영목적	201

II.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규정 형태 202

1. 최소허용기준 규정 형태202

2.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근거 규정205

 1) 한-칠레 FTA205

 2) 한-싱가포르 FTA207

 3) 한-EFTA FTA209

 4) 한-ASEAN FTA212

 5) 한-인도 CEPA214

 6) 한-EU FTA216

 7) 한-페루 FTA223

 8) 한-미 FTA225

 9) 한-터키 FTA231

 10) 한-콜롬비아 FTA238

III. 최소허용기준 적용 및 적용제외 사례 검토 241

1. 가격기준 적용사례241

 1) 냉동소갈비241

 2) 유자차243

 3) 된장245

 4) 냉동 홍게 살248

2. 중량기준 적용사례250

 1) 자수직물250

 2) 합성섬유제 양말252

부록 : 불인정공정 회피 간편 비즈니스모델 257

표 목 차

<표 1> 협정별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9
<표 2> 한-칠레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11
<표 3> 한-칠레 FTA 불인정 공정 유형	12
<표 4> 한-싱가포르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14
<표 5> 한-싱가포르 FTA 불인정 공정 유형	15
<표 6> 한-EFTA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17
<표 7> 한-EFTA FTA 불인정 공정 유형	20
<표 8> 한-아세안 FTA ‘일반물품’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2
<표 9> 한-아세안 FTA ‘섬유 및 의류’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5
<표 10> 한-아세안 FTA 불인정 공정 유형	26
<표 11> 한-인도 CEP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8
<표 12> 한-인도 CEPA 불인정 공정 유형	31
<표 13> 한-EU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32
<표 14> 한-EU FTA 불인정 공정 유형	35
<표 15> 한-페루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36
<표 16> 한-페루 FTA 불인정 공정 유형	38
<표 17> 한-미 FTA ‘일반물품’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40
<표 18> 한-미 FTA ‘광물성 연료 등(HS 제27류)’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41
<표 19> 한-미 FTA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HS 제6부)’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47
<표 20> 한-미 FTA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HS 제7부)’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52
<표 21> 한-미 FTA ‘섬유 및 의류’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54
<표 22> 한-미 FTA 불인정 공정 유형	58
<표 23> 한-터키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59
<표 24> 한-터키 FTA 불인정 공정 유형	61
<표 25> 한-콜롬비아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63
<표 26> 한-콜롬비아 FTA 불인정 공정 유형	65
<표 27>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66

<표 28>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불인정 공정 유형	67
<표 29> 협정별 ‘포장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71
<표 30> 협정별 ‘포장’ 관련 규정	72
<표 31> 포장의 분류	76
<표 32> 협정별 ‘보존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79
<표 33> 협정별 ‘보존’ 관련 규정	80
<표 34> 협정별 ‘세정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84
<표 35> 협정별 ‘세정’ 관련 규정	85
<표 36> 협정별 ‘선별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88
<표 37> 협정별 ‘선별’ 관련 규정	89
<표 38> 협정별 ‘폐기물·부스러기·고물’ 관련 규정	91
<표 39> 협정별 ‘가공 관련(일반물품)’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94
<표 40> 협정별 ‘가공 관련(일반물품)’ 관련 규정	96
<표 41> 협정별 ‘가공 관련(농축산물)’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102
<표 42> 협정별 ‘가공 관련(농축산물)’ 관련 규정	103
<표 43> ‘갑각류’ 및 ‘연체류’ 품목분류체계	111
<표 44> 협정별 ‘조립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117
<표 45> 협정별 ‘조립’ 관련 규정	118
<표 46> 협정별 ‘검사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125
<표 47> 협정별 ‘검사’ 관련 규정	126
<표 48> 협정별 ‘혼합 등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128
<표 49> 협정별 ‘혼합 등’ 관련 규정	130
<표 50>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02
<표 51>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요약	203
<표 52> 한-칠레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06
<표 53> 한-싱가포르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08
<표 54> 한-EFTA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11
<표 55> 한-아세안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13
<표 56> 한-인도 CEP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15
<표 57> 한-EU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17
<표 58> 한-EU FTA ‘섬유 및 의류’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19
<표 59> 한-페루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24

<표 60> 한-미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26
<표 61> 한-미 FTA ‘농수축산물’ 최소허용기준 적용예외 근거규정	227
<표 62> 한-미 FTA ‘섬유 및 의류’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30
<표 63> 한-터키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32
<표 64> 한-터키 FTA ‘섬유 및 의류’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34
<표 65> 한-콜롬비아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239

그림목차

<그림 1> 세번변경기준의 구조	6
<그림 2> 최소허용기준 적용사례	200

Part 1

불인정공정

1. 불인정 공정의 개념

불인정 공정(Non-qualifying Operation)은 최소공정(Minimal Operation), 불충분 공정 또는 단순공정 등으로도 표현되는데, FTA특혜를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원칙 중 하나인 충분가공원칙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충분가공원칙이란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불완전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역내의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나 가공’이 역내에서 수행되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면 FTA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품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국가로부터 만들어진 원재료가 사용되고 제조공정 또한 일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의 물품생산 패턴을 반영한 것이다.

즉, 일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당해 국가에서 전체 생산 공정이 일관되게 진행된 물품(완전생산품)에 대해서만 FTA특혜가 적용되도록 할 경우 FTA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상품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체약국 간의 경제교류 증대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FTA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역외국가의 재료가 투입된 불완전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을 유발하는 충분한 제조공정(가공)이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어야만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충분한 정도의 공정(가공)’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다수의 FTA협정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공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공정들을 열거 또는 예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불인정 공정(Non-qualifying Operation)이라 하며 동 규정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한 원산지상품 결정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비록 『품목별기준』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수행공정이 불인정 공정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상품이 원산지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인정 공정 제시방법의 경우 교역되는 전체 상품에 대해 원재료의 실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을 모두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제조공법의 변화나 새로운 상품의 등장을 예측하여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정마다 실질적 변화를 유발할 수 없는 다양한 공정의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2. 불인정 공정의 도입목적¹⁾

1)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 보완

세번변경기준(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은 HS Code의 변경이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한 형태로 불완전 생산품에 대해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²⁾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에는 세번이 어느 수준에서 변해야 원산지가 변하는 것으로 판단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변경을 요하는 단위가 ‘2단위→4단위→6단위’의 순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다.

하지만 실제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에 있어 제조공정(가공)이 진행되는 동안 세번의 변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거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 등 품목에 따라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 세번이 변경되나 실질이 변하지 않는 사례 】

재 료	⇒	가공공정	⇒	제 품
소(0102)		도축		소고기(0201)
멸치(0301)		건조		마른멸치(0305)
페니실린(3003)		소매포장		소매용 페니실린(3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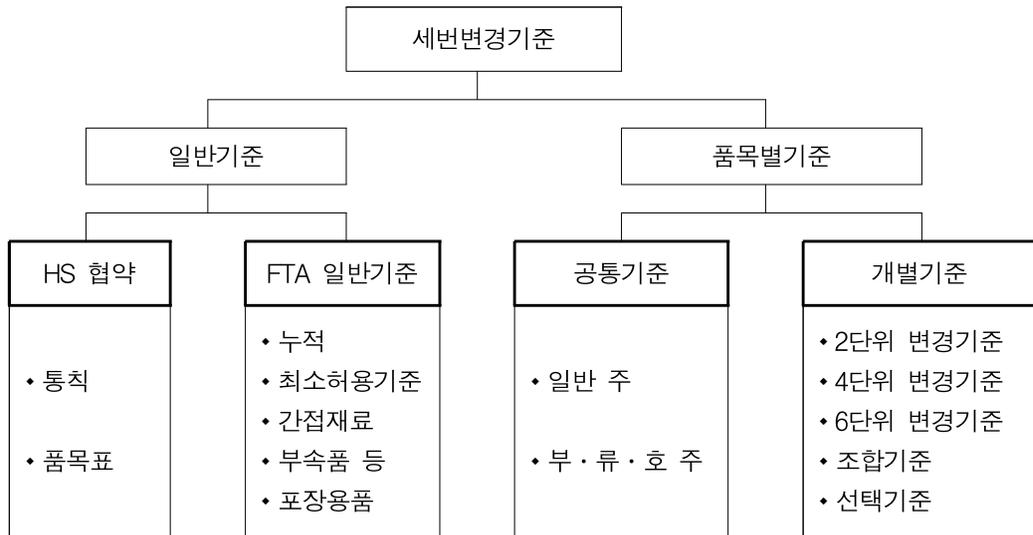
【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나 실질이 변하는 사례 】

재 료	⇒	가공공정	⇒	제 품
유리섬유(7019)		직조		직물(7019)

1) 이영달, 『2014년 개정판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년 2월, pp.116~117.

2) 세번(稅番)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체계(HS)에 따라 특정품목에 부여된 품목 번호를 말하며 HS코드로도 불린다.

<그림 1> 세번변경기준의 구조



이에 따라 역내에서 수행된 제조공정(가공)에 투입된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수행된 경우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날 정도의 충분한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불인정 공정의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

HS의 정식명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이며 부속서(Annex)상 원명은 『HS품목표(HS Nomenclature)』 라고 표기하고 있다

HS란 무역상품이 수출국의 생산자로부터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유통단계에 있어 각 단계의 권역마다 이 품목표를 기초로 하여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다목적·통일적 상품 명칭과 전산처리코드로 구성된 분류체계이다.

HS는 동일한 원재료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물품은 동일한 1개의 류(Chapter)에 함께 분류하고 그 류 내에서는 생산단계 및 가공단계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원재료→반제품(중간제품)→완제품(최종제품)’ 순으로 호별 수직배열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 원료를 기준으로 한 분류 : 5대 기초자원인 농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무기 및 유기화학약품
- 산업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식품공업제품(조제식품류·음료·주류 등 : 제4부), 피혁공업제품(제41류~제43류), 제지공업제품(제48류), 신발류공업제품(제64류), 섬유공업제품(11부 : 제50류~제63류), 요업공업제품(제69류), 유리공업제품(제70류), 귀금속제품(제71류), 철강공업제품(제72류~제73류), 비철금속제품(제74류~제83류), 기계공업제품(제84류), 전기전자제품(제85류), 자동차산업제품(제87류), 조선공업제품(제88류), 항공기산업제품(제89류) 등
- 용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접착제, 살균제, 살충제, 고무배합제, 부동액조제품 등
- 가공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커피·차류는 제9류에 분류되며 엑스·에센스 제품은 제21류로 분류하고, 육과 어류의 훈제는 제2류 또는 제3류에 분류되며 이들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은 제16류에 분류
-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복합기계, 다용도기계, 다기능기계, 기능단위 기계는 일반적으로 주기능이나 주용도에 따라 분류
- 독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 혼합품·복합재료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

HS품목분류표는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Heading(호)•Sub-Heading(소호)의 내용 및 부(部)·류(類)·소호(小號)의 주(註, Note)와 HS해석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21부 97류로 구성되며 77류는 유보되어 있어 별도의 상품이 분류되어 있지 않다.

4단위 호(Heading)와 6단위 소호(Sub-Heading)의 구조는 코드번호와 연결된 용어인 품목이 표시되어 있는데, 6단위 소호까지는 개별 국가가 임의대로 변경시킬 수 없는 협약품목으로 전 세계 품목분류가 세계 공통으로 되어 있고 7단위 이하의 자국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사용하므로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 HS코드의 구조 예시 : 0102.90-1000(젓소) 》

- 01 : 류(Chapter) ⇨ 산동물이 분류되는 류
- 0102 : 호(Heading) ⇨ 소(牛)가 분류되는 4단위 호
- 0102.90 : 소호(Sub-Heading) ⇨ 중우가 아닌 기타 소가 분류되는 6단위 소호
- 0102.90-1000 : HSK 10단위로 젓소가 분류되는 코드

2) 역내가공 촉진

불인정 공정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가공만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FTA특혜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 이상의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불인정 공정 규정은 결론적으로 협상단계에서는 원산지기준에 대한 합의를 쉽게 하고 『품목별기준』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1. 불인정 공정 규정형태

2014년 9월말 현재 발효 중인 9개 FTA협정과 국회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콜롬비아 FTA를 포함하여 10개의 FTA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는 모든 협정에서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생산 및 가공활동 중 충분한 가공으로 보지 않는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규정방식에 있어 불인정 공정을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에서 일부 규정³⁾하고 있는 한-미 FTA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협정들은 불인정 공정을 원산지규정의 『일반기준(General Rul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불인정 공정을 일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품목과 섬유류로 구분하여 2원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1> 협정별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협 정 명	근 거 규 정
한-칠레 FTA	· 제4.13조(불인정 공정)
한-싱가포르 FTA	· 제4.16조(불인정 공정)
한-EFTA FTA	· 부속서 1 제6조(불충분 공정)
한-아세안 FTA	· 부속서3 제8조(일반품목 불인정 공정), 부록3 제2조(섬유류 불인정 공정)
한-인도 CEPA	· 제3.6조(불인정 공정)
한-EU FTA	·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한-페루 FTA	· 부속서3 제3.5조(불인정 공정)
한-미 FTA	·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규정
한-터키 FTA	·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한-콜롬비아 FTA	· 부속서3 제3.14조(불인정 공정)
APTA	· 부속서2 제3조(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 물품)

3)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40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물 또는 다른 물질과의 단순한 희석 공정(물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2. 협정별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1) 한-칠레 FTA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칠레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을 협정문 제4장(원산지규정) 제4.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형식은 제1항에서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정의 범위를 명시하고 제2항에서 불인정 공정에 포함되는 공정들을 예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불인정 공정으로 분류되는 공정의 범위를 규정한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과정에서 물품을 보전하기 위한 작업이나 공정, 물품의 저장을 위한 작업이나 공정, 선적이나 운송촉진을 위한 작업이나 공정, 물품의 포장 및 전시 등과 관련된 작업이나 공정만이 수행된 경우에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될 수 있는 공정들을 공정의 명칭을 예시하여 제시하고 제시된 공정들만이 둘 이상 조합되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의 변화를 유발하였다고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국 내에서 다양한 공정들이 수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정상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정들의 조합만으로 제조(가공)과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충분한 가공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칠레 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이 다른 협정들에 비해 특이한 점은 여타의 협정들이 불인정공정에 해당될 수 있는 공정의 명칭에 대해 불인정 공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위와 동일 명칭의 공정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불인정 공정으로 판단되지 않는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단순한(simple)’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한-칠레 FTA는 해당 공정의 명칭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단순조립’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협정

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정만이 계약당사국에서 수행되어 『품목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단순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 협정에 비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표 2> 한-칠레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4.13조 불인정 공정></p> <p>1.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p> <p>가.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p> <p>나.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p> <p>다.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p> <p>2.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p> <p>가.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p> <p>나.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p> <p>다.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빼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p> <p>라.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p> <p>마.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p>	<p>Article 4.13: Non-Qualifying Operations</p> <p>1.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merely by reason of:</p> <p>(a) operations or processes that assure the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transportation or storage;</p> <p>(b) operations or processes to facilitate shipment or transportation; or</p> <p>(c) operations or processes relating to packaging or presentation of the goods for their respective sale.</p> <p>2. Operations or processe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inter alia:</p> <p>(a) airing, ventilation, drying, refrigeration, freezing;</p> <p>(b) cleaning, washing, sieving, shaking, selection, classification or grading, picking out, mixing, cutting;</p> <p>(c) peeling, unshelling or unflaking, grain removing, removal of bones, crushing or squeezing, macerating;</p> <p>(d) 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protecting materials thereof;</p> <p>(e) testing or calibrations, division of bulk shipments, assemble into packages, adherent of marks, labels or distinctive signs on the</p>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products or packing, packing, unpacking or repackaging
바.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f) dilution with water or with any other aqueous, ionised or salted solution;
사.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g) the simple assembly of goods, formation of sets;
아. 염화, 가당,	(h) salifying, sweetening;
자. 동물의 도살,	(i) slaughter of animals;
차. 분해, 그리고	(j) disassembly; and
카.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	(k) the combination of one or more of these operations.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한-칠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경우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만, 한-칠레 FTA의 경우 ‘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을 제외하고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들을 예시하면서 곡물·의류·음료 등 예시된 공정이 적용될 수 있는 특정물품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해당 공정들은 전체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구분되어 있는 공정들은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세번의 변경을 유발할 수 있으나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표 3> 한-칠레 FTA 불인정 공정 유형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건조, 냉동, 체질, 혼합, 절단,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찌 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 희석, 단순조립, 세트구성, 염화, 가당, 도살, 분해	보전작업(공정), 포장, 전시작업(공정), 환풍, 통풍, 냉장, 세탁, 세척,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먼지제거, 도포, 시험이나 측정, 분류, 포장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상표부착, 포장해체나 재포장

2) 한-싱가포르 FTA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을 협정문 제4장(원산지규정) 제4.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형식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들을 열거한 후 열거된 공정중 하나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나 둘 이상의 조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산지상품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 불인정공정의 제시방식은 앞서 살펴본 한-칠레 FTA가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범위를 먼저 제시하고 불인정 공정에 포함될 수 있는 공정들의 명칭을 예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들을 열거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한-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될 수 있는 공정의 명칭에 대해 불인정 공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위와 동일 명칭의 공정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불인정 공정으로 판단되지 않는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단순한(simple)’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다.

이로 인해 협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계약당사국에서 수행되어 『품목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단순한(simple)’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 협정에 비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 한-싱가포르 FTA에서 열거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들 중 ‘단순한(simple)’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정에는 포장작업·절단·혼합·조립·세트구성 등이 있는데, 이들 공정 중 포장작업을 제외하고는 품목에 따라 세번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공정의 수행을 통해 『품목별기준』이 충족된 경우 ‘단순한(simple)’ 정도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 명확한 구분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다른 협정들에 비해 기업과 관세당국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표 4> 한-싱가포르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4.16조 불인정 공정></p> <p>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 일정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제4.2조의 원산지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p> <p>가. (건조·냉동·염수장 보관과 같이)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과 그 밖의 유사한 작업</p> <p>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p> <p>다. 제품 또는 그 포장의 의장·상표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 부착</p> <p>라. 분해</p> <p>마. 시험 또는 측정</p> <p>바. 병·통·상자에 넣기 및 그 밖의 간단한 포장 작업</p> <p>사. 탈피·탈각 또는 박편·탈곡·뼈 제거·분쇄 또는 압착 및 연질화를 포함한 단순 절단</p> <p>아. 단순 혼합</p> <p>자.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p> <p>차. 단순한 물품의 세트 구성</p> <p>카. 동물의 도살</p> <p>타. 품질 검사 또는 분쇄</p>	<p>Article 4.16: Non-Qualifying Operations</p> <p>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this Chapter,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satisfied the requirements for an originating good in Article 4.2 merely by reason of going through certain operations or processes including, inter alia, the following :</p> <p>(a)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product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such as drying, freezing, keeping in brine) and other similar operations;</p> <p>(b) 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packages;</p> <p>(c) affixing marks, label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p> <p>(d) disassembly;</p> <p>(e) testing or calibrations;</p> <p>(f) placing in bottles, cases, boxes and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p>(g) simple cutting, including peeling, unshelling or unflaking, grain removing, removal of bones, crushing or squeezing, and macerating;</p> <p>(h) simple mixing;</p> <p>(i) simple assembly of parts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p> <p>(j) simpl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p> <p>(k) slaughter of animals;</p> <p>(l) quality check or grinding</p>

<p>파.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 제거, 녹 방지를 위한 기름 칠,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보호 재료의 도포</p> <p>하. 염화 또는 가당</p> <p>거.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 용액에 의한 희석</p> <p>너. 대량 선적의 분류. 그리고</p> <p>더. 상기 가호 내지 너호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작업의 조합</p>	<p>(m) 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protecting materials;</p> <p>(n) salifying or sweetening;</p> <p>(o) dilution with water or with any other aqueous, ionized or salted solution</p> <p>(p) division of bulk shipment; and</p> <p>(q)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hrough (p), carried ou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when non-originating materials are used in those operations.</p>
--	---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한-싱가포르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경우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만,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에도 한-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도살 (slaughter of animals)’ 을 제외하고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들을 열거하면서 곡물·외류·음료 등 예시된 공정이 적용될 수 있는 특정물품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해당 공정들은 전체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구분되어 있는 공정들은 특정물품에 대해서는 세번의 변경을 유발할 수 있으나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표 5> 한-싱가포르 FTA 불인정 공정 유형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p>건조, 냉동, 염수장, 조립, 분해,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 제거, 분쇄 또는 압착, 연질화, 절단, 혼합, 염화 또는 가당, 희석</p>	<p>보존 작업(공정), 포장, 포장해체, 표시 부착, 시험 또는 측정, 적입, 먼지제거, 도포, 분류</p>

3) 한-EFTA FTA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EFTA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을 협정문 부속서 I 제1부(원산지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형식은 제1항에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불충분한 공정의 판단 방법으로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들 중 하나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나 둘 이상의 조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산지상품이 될 수 없다.

한-EFTA FTA의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불인정 공정의 제시방식은 앞서 살펴본 한-싱가포르 FTA 등 대부분의 협정들과 같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들을 열거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페인팅 및 광택작업, 적입(積入), 조립, 시험 및 측정에 있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simple)’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각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도구나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정만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해당 공정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공정의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계·도구·설비 등이 있는지와 그들 장치들이 해당 공정의 수행만을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품의 혼합에 대해서도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별기준을 ‘단순한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각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혼합되는 상품은 같은 종류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여 혼합되는 객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혼합은 불인정공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혼합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도구나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혼합공정만이 수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혼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의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계·도구·설비 등이 있는지와 그들 장치들이 해당 공정의 수행만을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혼합의 경우 혼합의 결과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도구나 설비가 동원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인정 공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혼합된 물품 간에 분자간의 결합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분자결합이 형성되는 경우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구조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EFTA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에서 체약당사국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사에서 수행한 공정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물품일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공정들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6> 한-EFTA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p> <p>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부속서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p>	<p>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s</p> <p>1.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the following operati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to confer the status of originating products, whether or no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 are satisfied:</p>

가.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의 해체와 조립	(b) changes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다. 세탁, 세척과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c) affixing marks, label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라. 섬유류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	(d)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작업	(e)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바.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곡물 및 쌀의 도정	(f)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사. 당류 착색 및 각설탕 작업	(g) 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sugar lumps;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탈각	(h)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i)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차.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j)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카.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 및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작업	(k)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타. 상표·라벨·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 하거나 인쇄	(l)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파.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m)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n)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거. 단순한* 시험 및 측정	(o) 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
너. 동물의 도살. 또는	(p) slaughter of animals; or
더. 가호 내지 너호에 규정된 작업의 둘 이상의 조합	(q)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to (p).

<p>* “단순한”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p>	<p>*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p>** “단순히 혼합”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은 분자간 결합의 파괴 또는 새로운 분자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 “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p>
<p>2.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에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모든 작업이 함께 고려된다.</p>	<p>2. All operations carried out in a Party on a given product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working or processing undergone by that product is to be regarded as insufficient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p>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한-EFTA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경우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EFTA FTA의 경우 ‘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 을 제외하고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들을 열거하면서 곡물·의류·음료 등 예시된 공정이 적용될 수 있는 특정물품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한-칠레 FTA나 한-싱가포르 FTA와는 달리 열거되어 있는 불인정 공정들 중 특정 공정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품목을 제시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적용되는 물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여타의 공정들의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체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 7> 한-EFTA FTA 불인정 공정 유형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탈각, 탈피, 표백, 연마, 도정, 분쇄, 절단, 매칭(세트구성), 접착, 혼합, 조립, 분해, 도살, 체질	보존 작업(공정), 포장, 포장해체, 세탁, 세척, 먼지제거, (섬유류)다림질 또는 압착, 도포 및 광택작업, 착색, 씨 제거, 선별, 분류, 등급화, 적입, 표시부착(인쇄), 시험 및 측정

4) 한-ASEAN FTA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아세안 FTA는 특이하게 불인정 공정을 2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협정문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협정문 부록3(부속서 3에 대한 해석 주석) 제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협정문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물품에 대한 불인정 공정의 규정형식은 제1항에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충분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된 경우 당초의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인정 공정 이상의 충분한 가공이 수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척·세정·제거, 도장 및 광택 공정에 대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simple)’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각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기구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로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정만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공

정이 실제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의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계·기기·장비 등이 있는지와 그들 장치들이 해당 공정의 수행만을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품의 혼합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한-EFTA FTA와 같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별기준을 단순한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각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혼합되는 상품은 같은 종류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여 혼합되는 객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혼합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혼합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기기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혼합공정만이 수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혼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의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계·기기·장비 등이 있는지와 그들 장치들이 해당 공정의 수행만을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혼합의 경우 혼합의 결과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기기나 장비가 동원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인정 공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혼합된 물품 간에 분자간의 결합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분자결합이 형성되는 경우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구조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의 도축의 경우에도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범위를 각주3에서 다른 협정에 비해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타의 협정들이 도축 자체에 대해서만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아세안 FTA에서는 도축이란 단순한 도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살 후 연이어 이루어지는 저장과 운송 목적의 절단·냉장·냉동·염장·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도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불인정 공정에 해당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비원산지 동물을 수입하여 계약당사국 내에서 도축하여 얻어진 육류 등은 물론 이를 저장과 운송목적으로 절단·냉장·냉동·염장·건조 또는 훈제 등 일차적으로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표 8> 한-아세안 FTA ‘일반물품’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8조 불인정 공정></p> <p>1. 이 부속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결합으로만 수행된 경우, 그 상품은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p> <p>가. 운송 혹은 저장 중에 상품을 우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 공정</p> <p>나.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p> <p>다.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 세척, 세정, 제거</p> <p>라.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p> <p>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p> <p>바.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p> <p>사. 단순한 껍질 벗기기, 씨 제거, 또는 탈각</p>	<p>Article 8: Non-Qualifying Operations</p> <p>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in this Annex,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f the following operations are undertaken exclusively by itself or in combination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p> <p>(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good remain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p> <p>(b) changes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p> <p>(c) simple*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p> <p>(d)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p> <p>(e)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p> <p>(f) 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sugar lumps;</p> <p>(g) simple peeling, stoning, or un-shelling;</p>

4) 도축 이후 연이어 이루어지는 절단·냉장·냉동·염장·건조 또는 훈제 등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저장과 운송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공정들을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타 협정들의 경우 당해 공정의 수행 목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절단·냉장·냉동·염장·건조 또는 훈제 등이 도축에 연이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당해 공정들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p>아.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p> <p>자. 채질,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p> <p>차.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모든 다른 단순한 포장 공정</p> <p>카. 표식,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지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p> <p>타. 다른 종류간이건 아니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p> <p>파.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체하기</p> <p>하. 단순한 실험 또는 측정</p> <p>거. 동물의 도축***</p> <p>* “단순한”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p> <p>** “단순한 혼합”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은 분자간 결합의 파괴 또는 새로운 분자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h)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p> <p>(i)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matching;</p> <p>(j)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p>(k)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p> <p>(l)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p> <p>(m)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n) 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 or</p> <p>(o) slaughtering of animals***</p> <p>* “simple” generally describes an activity which does not need special skills,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p>** “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n activity which does not need special skills,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p>
--	---

<p>*** “도축”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이에 연이어 이루어진 저장과 운송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을 의미한다.</p> <p>2.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수행된 공정이 제1항에 규정된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되었을 때 처음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p>	<p>***Slaughtering means the mere killing of animals and subsequent processes such as cutting, chilling, freezing, salting, drying or smoking,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for storage and transport.</p> <p>2.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retain its initial originating status, when exported from another Party, where operations undertaken have not gone beyond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p>
--	--

다음으로 협정문 부록3(부속서 3에 대한 해석 주석) 제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HS 제50류~제63류에 해당하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불인정 공정의 규정형식은 섬유 및 의류의 제조과정에서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단순한 공정들을 열거하고 당해 공정들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충분한 가공이 수행된 것으로 보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에 대해 한-아세안 FTA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정들을 특징별로 구분하여 보면 ‘결합’, ‘미관상 정리’, ‘마무리공정’, ‘자수(embroidery)’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중 ‘결합’의 경우 의류를 만들기 위해 재단된 직물을 붙이는 공정은 물론 형상을 갖춘 의류에 기능성을 더하기 위해 주머니를 붙이는 공정이나 상표 및 취급방법과 관련된 식별표나 각종 장식품을 붙이는 공정 등 다양한 결합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미관상 정리’에는 다림질이나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포장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마무리공정’에는 중형 제단이나 끝단의 봉제, 스티칭이나 오버로킹,⁵⁾ 탈색, 방수, 디케이팅,⁶⁾ 줄임, 머서라이징⁷⁾ 등 이미 완성되었거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직물이나 의류에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공정들이 포함된다.

5) 스티칭(stitching)이나 오버로킹(overlocking)은 모두 옷감에 대한 마무리공정으로 스티칭은 일렬로 바느질을 하는 것을 말하며, 오버로킹은 휘감치기라고도 하는데 옷감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바느질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케이팅(decating)은 직물의 섬유에 광택을 내고 보풀의 감촉을 부드럽게 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처리하는 마무리공정이다.

7) 머서라이징(mercerizing)은 무명류의 섬유에 광택을 내는 소다 처리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수(embroidery)’에 대해서는 자수상품에 수행된 자수공정이 전체 면적의 5% 미만이거나 총 중량의 5% 미만인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자수공정이 완료된 비원산지 자수상품에 대해 체약당사국 내에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 이하의 추가적 자수공정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공정의 수행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발현시키는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표 9> 한-아세안 FTA ‘섬유 및 의류’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2.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불인정 공정</p> <p>제50류 내지 제63류 상품의 원산지 지위 판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의 공정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자체로만 수행된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을 포함한 제5조(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p> <p>가. 단순 결합 공정, 라벨링, 다림질 또는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또는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p> <p>나. 중횡 제단 및 끝단 봉제, 특정 상업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p> <p>다. 끈, 밴드, 구슬, 코드, 고리 그리고 아이렛과 같은 장식품을 집고, 누비고, 잇고 부친 트리밍 그리고/또는 결합</p> <p>라. 탈색, 방수, 디케이팅, 줄임, 머서라이징, 또는 단지 최종 공정을 수행할 목적의 유사한 공정</p>	<p>2. Non-Qualifying Operations for Textile and Garment</p> <p>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in Annex 3, a good from Chapters 50 through 63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f the following operations are undertaken exclusively by itself or in combination within each paragraph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whether or not both RVC and CTC criteria, are satisfied:</p> <p>(a)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ing, ironing or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p> <p>(b) cutting to length or width and hemming, stitching or overlocking of fabrics which are readily identifiable as being intended for a particular commercial use;</p> <p>(c) trimming and/or joining together of accessory articles, such as straps, bands, beads, cords, rings or eyelets, by sewing, looping, linking or attaching;</p> <p>(d) bleaching, waterproofing, decating, shrinking, mercerizing, or similar operations for the purposes of having merely undergone the finishing operations, or</p>

<p>마. 자수 상품의 전체 면적의 5% 미만 에 해당하는 자수 또는 자수 상품 의 총 중량 5% 미만에 해당하는 자수</p>	<p>(e) embroidery which represents less than five (5) percent of the total area of the embroidered goods or embroidery which contributes less than five (5)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e embroidered goods.</p>
--	---

(2) 불인정공정의 유형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경우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일반물품에 대해 불인정 공정으로 열거한 제8조의 규정에서는 ‘동물의 도축(slaughtering of animals)’ 이나 곡물 및 쌀의 탈각 등과 같이 특정 공정이 수행될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경우와, 특정물품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물품에 대해 불인정공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되는 물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정들의 경우 전체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적용되는 불인정 공정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섬유 및 의류 관련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 10> 한-아세안 FTA 불인정 공정 유형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p>표백, 연마, 도정, 탈피, 탈각, 분쇄, 절단, 혼합, 조합, 해체, 도축, 단순결합, 재단 및 봉제</p>	<p>보존 작업(공정), 포장, 포장해체, 먼지제거, 세척, 세정, 도장 및 광택, 채색, 씨 제거, 채질, 선별, 구분, 등급분류, 등급화, 매칭, 적입, 표시부착(인쇄), 실험 또는 측정, 다림질 또는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 장식부착, 탈색, 방수 등, 일부 자수</p>

5) 한-인도 CEPA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인도 CEPA에서는 불인정 공정을 협정문 제3장(원산지규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형식은 제1항에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불충분한 공정의 판단 방법으로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품 운송 중 상태유지를 위해 상품에 추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보존공정들을 각주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 공정들은 추가적으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장 및 광택공정, 적입(積入), 조립, 시험 및 측정에 있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각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기기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의 혼합에 대해서도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별기준을 단순한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각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혼합되는 상품은 같은 종류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여 혼합되는 객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혼합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도구나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혼합의 결과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도구나 설비가 동원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인정 공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혼합된 물품 간에 분자간의 결합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분자결합이 형성되는 경우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구조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인도 CEPA에서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에서 체약당사국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사에서 수행한 공정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물품일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공정들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11> 한-인도 CEP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3.6조 불인정 공정></p> <p>1.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은, 다음의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제3.4조의 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p> <p>가. 상품이 운송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는 보존작업*</p> <p>나. 포장의 변경, 그리고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p> <p>다. 먼지·산화물·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세척·세정 또는 제거</p> <p>라.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p> <p>마.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화 또는 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 매칭</p> <p>바. 단순 결합공정·라벨링·프레싱·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p> <p>사. 중형 재단 및 감침질, 또는 특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p>	<p>Article 3.6: Non-Qualifying Operations</p> <p>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this Chapter,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satisfied the requirements for an originating good in Article 3.4 merely by reason of going through the following operations or processes:</p> <p>(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p> <p>(b) changes of packaging or packing, and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p> <p>(c) washing, cleaning or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p> <p>(d)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p> <p>(e)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p> <p>(f)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ling,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p> <p>(g) cutting to length or width and hemming, or stitching or overlocking of fabrics which are readily identifiable as being intended for a particular commercial use;</p>

- | | |
|--|---|
| <p>아. 끈·띠·구슬·코드·고리 및 아일릿 같은 장식품을 함께 재봉하거나, 봉합하거나, 잇거나, 붙이는 트리밍 및/또는 결합</p> <p>자. 원사·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 물품에 대한 탈색·방수·디케이팅·수축·머서라이징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완성 공정</p> <p>차. 곡물 및 쌀의 탈각·부분 또는 전체 표백·연마 및 도정</p> <p>카.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p> <p>타. 탈피·씨제거 및 탈각</p> <p>파. 박편·과쇄·압착·썰기·연질화 및 뼈제거</p> <p>하. 연마·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및 재포장</p> <p>거.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한**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p> <p>너. 표식·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시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p> <p>더.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p> <p>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을 부품으로 해체</p> <p>머.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p> <p>버. 상품의 특성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 희석</p> | <p>(h) trimming and/or joining together by sewing, looping, linking or attaching accessory articles such as straps, bands, beads, cords, rings and eyelets;</p> <p>(i) one or more finishing operations on yarns, fabrics or other textile articles, such as bleaching, waterproofing, decating, shrinking, mercerizing or similar operations;</p> <p>(j)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p> <p>(k) 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sugar lumps;</p> <p>(l) peeling, stoning and unshelling;</p> <p>(m) unflaking, crushing, squeezing, slicing, macerating and removal of bones;</p> <p>(n)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and repackaging;</p> <p>(o)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p>(p)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p> <p>(q)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p> <p>(r)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s) 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p> <p>(t) mere 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 that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p> |
|--|---|

<p>서. 동물의 도축, 또는</p> <p>어. 가호부터 서호까지에 언급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공정의 조합</p> <p>2.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에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모든 공정이 고려된다.</p> <p>* 보존 작업은 건조·냉동·염장·통풍·펼침·냉장·소금 또는 이산화유황에 담기·손상된 부분의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p> <p>** “단순한”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p> <p>*** “단순한 혼합”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 반응이란 생화학 공정을 포함, 분자 내부 결합을 깨뜨려서 새로운 내부 결합을 형성하거나 분자내의 원자의 공간의 배열을 변경시킴으로써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들어 내는 공정을 의미한다.</p>	<p>(u) slaughtering of animals; or</p> <p>(v)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u).</p> <p>2. All operations carried out in a Party on a given product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working or processing undergone by that product is to be regarded as insufficient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p> <p>* Preserving operations include drying, freezing, keeping in brine, ventilation, spreading out, chilling, placing in salt or sulfur dioxide, removal of damaged parts, and like operations</p> <p>**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p>*** “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p>
---	--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한-인도 C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경우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2> 한-인도 CEPA 불인정 공정 유형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칭(세트구성), 결합, 압착, 재단 및 봉제, 탈각, 연마 및 도정, 탈피, 박편, 파쇄, 압착, 썰기, 연질화 및 뼈 제거, 분쇄, 절단, 혼합, 조립 및 해체, 희석, 도축	보존 작업(공정), 포장, 포장해체, 먼지 제거, 세척, 세정, 도장 및 광택, 체질, 선별, 구분, 분류, 등급화, 표시부착(인쇄),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장식부착, 탈색, 방수 등, 표백, 채색, 씨 제거, 적입, 시험 또는 측정

6) 한-EU FTA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EU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을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형식은 제1항에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불충분한 공정의 판단 방법으로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열거되어 있는 불인정 공정들 중 ‘단순한’ 이라고 명시된 공정들의 불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 주해 5에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도구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EU 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들 중 ‘단순한’ 이 결합되어 있는 공정에는 페인팅 및 광택공정, 분쇄 또는 절단, 상자에 넣기, 포장, 혼합, 조립 등이 있는데 이들 공정의 경우 해당 공정만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공정이 실제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의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계·도구·장비 등이 있는지와 그들 장치들이 해당 공정의 수행만을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이 결합되어 있는 공정들 중 페인팅 및 광택공정, 상자에 넣기, 포장의 경우에는 공정의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계·도구·장비 등이 있는지와 그들 장치들이 해당 공정의 수행만을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들 공정의 수행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는데 이는 이들 공정의 수행만으로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해 5에서는 상품의 혼합에 대해서도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기준에 따르면 혼합의 경우 혼합의 결과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기구나 장비가 동원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인정 공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란 여타의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혼합된 물품 간에 분자간의 결합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분자결합이 형성되는 경우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구조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EU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에서 체약당사국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사에서 수행한 공정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물품일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공정들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13> 한-EU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p> <p>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공정은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p>	<p>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p> <p>1.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the following operati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p>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to confer the status of originating products whether or no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 are satisfied:

(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b) change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c)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d)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e)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f)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g) operations to colour or flavou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

(h)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

(i)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j)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k)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or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l)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m)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

<p>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p> <p>거. 시험 또는 측정</p> <p>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p> <p>더. 동물의 도살</p> <p>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상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국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p> <p>(주해5)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p>	<p>(n)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o) testing or calibrations;</p> <p>(p)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through (o); or</p> <p>(q) slaughter of animals.</p> <p>2. All operations carried out in a Party on a given product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working or processing undergone by that product is to be regarded as insufficient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p> <p>(Explanatory Notes 5)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p>
--	--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경우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EU FTA는 불인정 공정으로 열거한 공정들에 대해 ‘동물의 도살(slaughtering

of animals)’ 이나 과일·견과류·채소에 대한 탈피 등과 같이 특정 공정이 수행될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경우와, 특정물품을 제한되지 않고 모든 물품에 대해 불인정 공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되는 물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정들의 경우 전체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가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4> 한-EU FTA 불인정 공정 유형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압착, 탈각, 연마 및 도정, 탈피, 분쇄, 절단, 매칭(세트구성), 혼합, 조립 또는 분해, 도살	보존 작업(공정), 포장, 포장해체, 세탁, 세척, 먼지제거, (섬유류)다림질 또는 압착, 페인팅 및 광택, 표백, 착색, 착향, (결정당)제분, 씨 제거,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적입, 표시부착(인쇄), 시험 또는 측정

7) 한-페루 FTA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페루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을 협정문 제3장(원산지규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형식은 제1항에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불충분한 공정의 판단 방법으로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불인정 공정에 부가된 단어들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페인팅 및 광택공정, 적입(積入), 포장, 조립에 있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가호에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도구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상품의 혼합에 대해서도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별기준을 ‘단순한’ 정도에 대한 정의를 다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혼합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도구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혼합(Simple Mixing)’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호에서 혼합의 결과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도구나 장비가 동원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인정 공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혼합된 물품 간에 분자간의 결합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분자결합이 형성되는 경우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구조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페루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에서 체약당사국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사에서 수행한 공정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물품일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공정들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15> 한-페루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3.5조 불인정 공정></p> <p>1. 이 장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 지위 부여의 목적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다.</p> <p>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p> <p>나. 포장상태의 변경 또는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p> <p>다.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p>	<p>Article 3.5: Non-Qualifying Operations</p> <p>1. The following operati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non-qualifying operations to confer the status of originating goods, whether or not the requirements under this Chapter are satisfied</p> <p>(a)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p> <p>(b) changes of packing or breaking-up or assembly of packages;</p> <p>(c)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p>

<p>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p> <p>마. 단순한 페인팅 그리고 광택 공정</p> <p>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p> <p>사.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p> <p>아. 다른 종류인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p> <p>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p> <p>차. 동물의 도살, 또는</p> <p>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p> <p>2. 해당 상품에 행해진 공정이 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해 당사국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p> <p>3. 이 조의 목적상,</p> <p>가.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p> <p>나. 단순한 혼합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하나, 화학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p>	<p>(d)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p> <p>(e)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p> <p>(f)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p> <p>(g)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ing operations;</p> <p>(h)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p> <p>(i)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j) slaughter of animals; or</p> <p>(k)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through (j).</p> <p>2. All operations carried out in a Party on a given good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operations undergone by that good are to be regarded as non-qualifying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p> <p>3. For purposes of this Article:</p> <p>(a) 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p>(b) simple mixing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but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 and</p>
--	---

<p>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c)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 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 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p>
---	---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한-페루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경우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페루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으로 열거한 공정들에 대해 ‘동물의 도살(slaughtering of animals)’ 이나 식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 등과 같이 특정 공정이 수행될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경우와, 특정 물품을 제한되지 않고 모든 물품에 대해 불인정 공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되는 물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정들의 경우 전체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가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6> 한-페루 FTA 불인정 공정 유형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탈각, 연마 및 도장, 혼합, 조립 또는 분해, 도장	보존 작업(공정), 포장, 포장해체, 세척, 세탁, 먼지제거, (식물)다림질 또는 압착, 페인팅 및 광택공정, 표백, 적입,

8) 한-미 FTA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미 FTA에서는 여타의 협정들이 불인정 공정을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의 『일

반기준(General Rule)』에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협정문 부속서 6-가의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는 등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불인정 공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부(Section)나 류(Chapter)의 주에서 필요에 따라 해당 영역에 적용되는 불인정 공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미 FTA협정상 불인정 공정이 제시되어 있는 부나 류는 HS 제27류에 해당하는 광물성 연료, HS 제6부의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HS 제7부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HS 제11부의 섬유 및 의류 등이다.

다만, 규정형식은 HS 제1류에서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단순 희석(mere dilution)’ 과 같이 불인정 공정의 명칭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협정에서 충분한 가공으로 간주하는 공정을 제시하면서 해당 공정의 수행정도가 충족될 수 없는 경우를 부연하여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즉, HS 제1류에서 제40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 등의 희석 등 불인정 공정을 제외하고 해당 부(Section) 및 류(Chapter)에 제시되어 있는 공정들은 특별히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제시되어 있는 공정이 수행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한-미 FTA협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불인정 공정의 규정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물품⁸⁾에 대한 불인정 공정 규정형식은 『품목별기준』의 일반주해 제1조 사호에서 “HS 제1류 내지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상품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물이나 다른 물질로 희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상품이 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여 ‘단순히 희석(mere dilution)’ 을 통한 세번의 변경 등은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mere dilution)’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8) 한-미 FTA협정문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기준) 제1부 일반주해 제1항 사호에서는 HS 제1류에서 제40류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Section) 및 류(Chapter)의 규정에서 별도로 불인정공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범위에 속하는 모든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인정공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물품을 부(Section) 및 류(Chapter)의 규정에서 별도로 불인정공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 일반물품으로 구분하였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주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석으로 인해 상품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회석뿐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정의 수행 결과 『품목별기준』을 충족하면서 상품의 본질적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공정은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표 17> 한-미 FTA ‘일반물품’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부속서 6-가 품목별원산지기준></p> <p>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기준의 해석 목적상</p> <p>사. 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회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p>	<p>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p> <p>1. For purpose of interpreting the rules of origin set forth in this Annex:</p> <p>(g) for Chapter 1 to 40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solely by reason of mere 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 that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p>

아울러 HS 제27류의 광물성 연료 등에 대해서는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이 발생한 경우나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이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화학반응의 경우 단순한 첨가(혼합) 또는 제거 등 협정에서 화학반응으로 보지 않는 3가지 경우를 제시하여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상압증류나 감압증류공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압증류공정의 경우 비원산지 원유를 계약당사국 내에서 상압증류공정을 통해 LPG, 납사, 등유, 경유 등을 얻은 경우 해당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며, 상압증류공정 후 남은 비원산지 상압잔사유를 계약당사국 내에서 감압증류공정을 통해 감압경유와 감압잔사유로 분리한 경우 해당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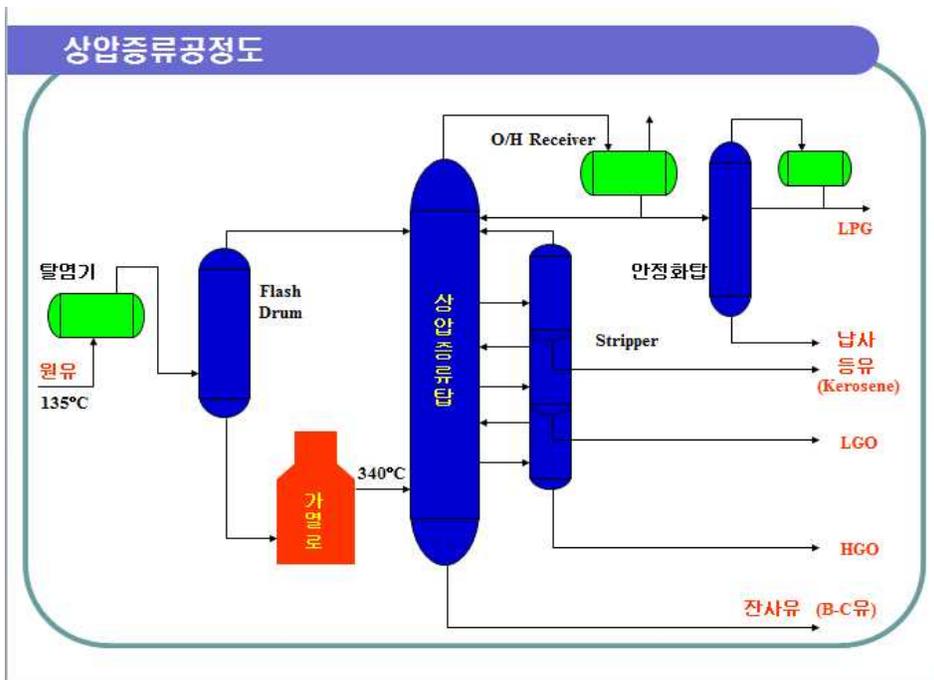
<표 18> 한-미 FTA '광물성 연료 등(HS 제27류)'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부속서 6-가 품목별원산지기준></p> <p>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p> <p>주 : 이 류의 목적 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에서 원래의 입체 자리 변경에 따라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 포함)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p>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로 간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압증류법 :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 점에 따라 분획되고 증기를 냉각하면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2. 감압증류법 :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p>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p> <p>Chapter 27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p> <p>Note :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that result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p> <p>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 for the reaction for the purpose of this defini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dissolving in water or other solvents; (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 (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p>For purpose of heading 27.10, the following process confer origi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Atmospheric distillation: A separation in which petroleum oils are converted, in a distillation tower, into fraction according to boiling point and the vapor then condensed into different liquefied fraction. (b) Vacuum distillation: Distillation at a pressure below atmospheric but not so low that it would be classed as molecular distillation.

《 상압증류법(Atmospheric distillat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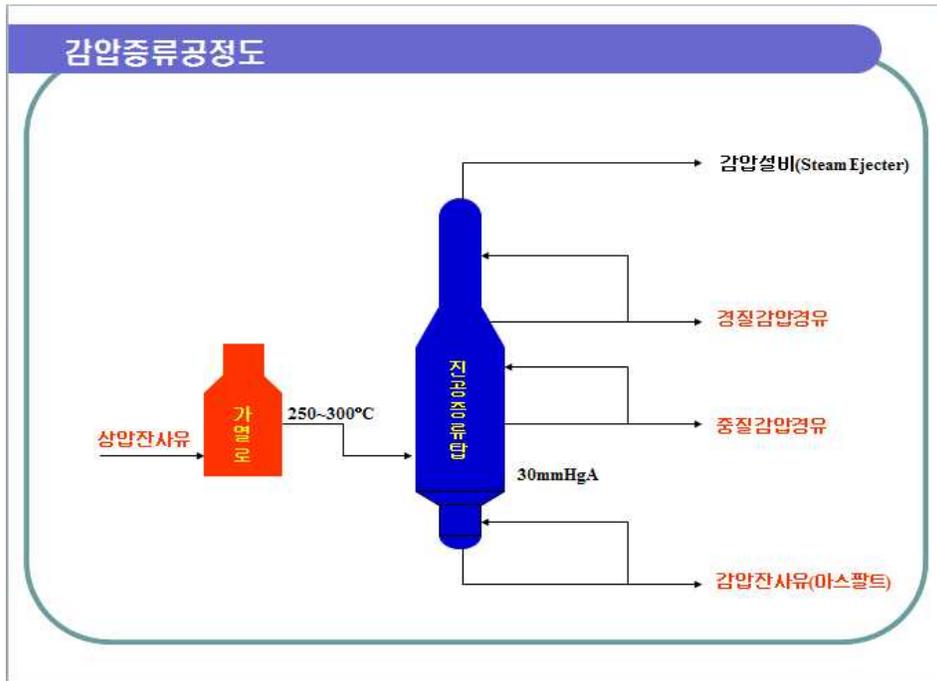
석유정제공정의 제1단계로서 Topping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정은 비중차이를 이용하여 LPG, 납사, 등유(kerosene), 경유(gsa oil) 및 상압잔사유를 분리하는 공정이다.

- 탑상 제품은 LPG와 납사는 액화 후 납사안정화탑으로 이송
 - LPG ⇒ LPG메록스공정
 - 납사 ⇒ 납사수첨탈황공정이나 제품저장탱크(석유화학)
- 탑 중간제품인 등유와 경유는 스팀 스트리핑
 - 등유 ⇒ 등유메록스공정(메르캅탄류 제거)
 - 경유 ⇒ 경유수첨탈황공정(유황 제거)
- 탑저 제품(상압잔사유)
 - 감압증유공정 ⇒ 감압경유, Coke, 아스팔트
 - 중유수첨탈황공정, 유동층 접촉분해 공정 ⇒ MTBE
 - 저장탱크(방카유)



《 감압증류법(Vacuum distillation) 》

상압잔사유를 부가가치가 높은 감압경유와 감압잔사유로 분리하는 공정으로 대기압보다 낮은 감압상태에서 분리하는 공정이다.



그리고 HS 제6부(제28류~제38류)의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주 1에서는 규칙 1부터 규칙 7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각 규칙의 제한사항 이상을 거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 2에서는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약당사국 내에서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물 등의 단순희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목별로 정해져 있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며, 세번의 변경이나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부가가치의 충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규칙 1부터 규칙 7까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게 된다.

주 1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각 규칙의 특징을 살펴보면 규칙 1(화학 반응)의 경우 HS 제2823호의 산화티타늄을 제외하고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 반응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규칙 2(정제)의 경우에는 정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되 정제의 결과로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되거나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8가지 용도 중 하나에 적합한 상품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규칙 2를 적용할 경우 8가지 용도 중 하나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판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정제의 결과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에 있어서는 정제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다고 할 때 정제 공정의 수행 이전과 수행 이후 불순물의 제거정도를 정확히 계량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충족여부에 대한 판별이 되게 되므로 엄격한 공정관리 방법의 보유가 필요하다.

또한 혼합 및 배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규칙 3의 경우에는 HS 제6부에 해당하는 11개 류 중 8개 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⁹⁾ 해당 규칙에 따르면 혼합 및 배합이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 생산된 물품이 투입된 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 본연의 목적과 용도와 관련된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지닌 상품이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합 및 배합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의 수행을 위한 재료의 투입비율을 관리하는 명세서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공정이 당해 명세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공정의 수행결과 생산되는 상품이 원재료와 다른 특성을 지닌 특유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입자크기의 변화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4는 HS 제6부에 해당하는 11개 류 중 3

9) 규칙 3이 적용되는 류는 제30류(의료용품), 제31류(비료), 제33류(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제34류(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제36류(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등이다.

개 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¹⁰⁾ 해당 규칙에 따르면 공정의 수행 결과 원재료와 다른 입자크기를 가지는 물질로 변화된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자크기의 변화가 단순 분쇄나 압착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중합체에 의해 용해된 후 침전에 의해 입자크기가 변화된 경우에는 충분히 가공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만들어진 결과물의 입자 크기·분포·표면적이 사전에 정의된 상태에서 해당 정의에 부합되도록 수행되고, 공정의 수행결과 생산되는 상품이 원재료와 다른 특성을 지닌 특유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입자크기의 변화를 유발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의 수행 결과 얻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입자 크기·분포·표면적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고,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해당 정의에 부합되도록 균질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규칙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물질의 경우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표준물질이 만들어진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표준용액을 포함하여 표준물질이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나 비율을 가지며 분석·검증·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준물질은 HS 제3822.30호[보증된 참조물질(이 류의 주 제 2호 가목에 따른 것으로서 제4류, 제13류, 제15류, 제17류, 제22류, 제25류부터 제 27류까지, 제30류부터 제41류까지, 제68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에 분류되는 ‘보증된 참조물질(CRM :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¹⁾

10) 규칙 4가 적용되는 류는 제30류(의료용품), 제31류(비료), 제33류(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등이다.

11) HS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주 2 가. 제382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나.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즉, HS 제28류 및 제29류를 제외하고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순도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석·검증·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으로 만들어졌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표준물질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품목별기준』의 충족여부나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규칙 6은 이성체 분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일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 혼합물에 대한 유리 또는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물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학 조성과 분자량은 같으나 성질이 다른 2가지 이상의 화합물인 이성질체(異性質體)¹²⁾가 분리공정을 거쳐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한 경우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물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¹³⁾

마지막으로 규칙 7은 분리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조 혼합물에서 분리 공정만을 통해 생성된 물품이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화학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규정과 상치되는 것으로, 분리를 통해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화학반응이 동시에 발생하여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가공을 거쳐 생성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강조하는 기준으로 판단된다.

12) 이성질체에는 원소 조성과 분자량은 같지만 결합 형태가 다른 구조이성질체와 원자들의 공간 배열이 다른 입체이성질체가 있는데, 구조이성질체에는 분자식이 C₂H₆O로 동일하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에탄올과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메틸에테르가 있고 입체이성질체에는 좌우대칭으로 거울상이지만 겹치지 않는 쌍으로 존재하는 광학이성질체와 분자 구조가 고정되어 있는 기하이성질체가 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3) 예를 들어 C₂H₆O로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이성체인 액체 상태의 에탄올과 기체 상태의 메틸에테르를 각각의 물질로 분리한 경우 개별 물질들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표 19> 한-미 FTA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HS 제6부)'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부속서 6-가 품목별원산지기준></p> <p>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제38류)</p> <p>주 1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음의 주석3부터 주석9까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주 2 : 주 1에도 불구하고 이 부에 규정된 해당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p> <p>규칙 1 : 화학반응 원산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2823호의 것을 제외한다)은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p> <p>주 :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 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p>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p>	<p>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p> <p>Section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Chapter 28-38)</p> <p>Note 1 : A good of any chapter or heading in Section VI that satisfies one or more of Rules 1 through 7 of this Section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those rules.</p> <p>Note 2 : Notwithstanding Note 1,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if it meets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satisfies the applicable value content requirement specifies in the rules of origin in this Section.</p> <p>Rule 1 : Chemical Reaction Origin. A good of Chapters 28 through 38, except goods of heading 38.23, that results from a chemical rea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p> <p>Note :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that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on good:</p> <p>(a) dissolution in water or in another solvent;</p>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 정제

정제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 4) 특수 광학용
 -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 6) 생명공학용
 -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 8) 핵등급용

규칙 3 : 혼합 및 배합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

- (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
- (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Rule 2 : Purification

A good of Chapters 28 through 38 that is subject to purification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provided that the purification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Parties and results in the following:

- (a) the elimination of not less than 80 percent of the impurities; or
- (b)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impurities resulting in a good suitable:
 - (i) as a pharmaceutical, medicinal, cosmetic, veterinary, or food grade substance;
 - (ii) as a chemical product or reagent for analytical, diagnostic, or laboratory uses;
 - (iii) as an element or component for use in micro-elements;
 - (iv) for specialized optical uses;
 - (v) for non-toxic uses for health and safety;
 - (vi) for biotechnical use;
 - (vii) as a carrier used in a separation process; or
 - (viii) for nuclear grade uses.

Rule 3 : Mixtures and Blends

A good of Chapters 30, 31, or 33 through 38, except for heading 39.08,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proportionally controlled mixing or blending (including dispersing) of materials to conform to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resulting in the

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4 : 입자크기의 변화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해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5 : 표준물질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물질의 생산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

규칙 6 : 이성체 분리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production of a goo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relevant to the purposes or uses of the good and are different from the input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ule 4 : Change in Particle Size

A good of Chapters 30, 31, or 33,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controlled modification in particle size of the good, including micronizing by dissolving a polymer and subsequent precipitation, other than by merely crushing or pressing, resulting in a good having a defined particle size, define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r defined surface area, which is relevant to the purposes of the resulting good an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from the input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ule 5 : Standards Materials

A good of Chapters 28 through 38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production of standards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standards materials” (including standard solutions) are preparations suitable for analytical, calibrating, or referencing uses, having precise degrees of purity or proportions that are certified by the manufacturer.

Rule 6 : Isomer Separation

A good of Chapters 28 through 38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isolation or separation of isomers from mixtures of isomer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p>규칙 7 : 분리금지</p> <p>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p>	<p>Rule 7 : Separation Prohibition</p> <p>A good of Chapters 28 through 38 that undergoes a change from one classification to another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as a result of the separation of one or more materials from a man-made mixture shall not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unless the isolated material underwent a chemical rea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p>
--	---

HS 제7부(제39류~제40류)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의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주 1에서는 규칙 1부터 규칙 5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각 규칙의 제한사항 이상을 거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 2에서는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국 내에서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물 등의 단순희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목별로 정해져 있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며, 세번의 변경이나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부가가치의 충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규칙 1부터 규칙 5까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게 된다.

주 1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각 규칙의 특징을 살펴보면 규칙 1(화학 반응)의 경우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칙 2(혼합)에서는 혼합공정이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물품이 투입된 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 본연의 목적과 용도와 관련된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지닌 상품이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여 단순한 혼합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규칙 3(정제)의 경우에는 정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상품은 원산지상품

으로 인정하되 정제의 결과로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되거나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8가지 용도 중 하나에 적합한 상품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규칙 3(정제)을 적용할 경우에는 8가지 용도 중 하나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판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정제의 결과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에 있어서는 정제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다고 할 때 정제 공정의 수행 이전과 수행 이후 불순물의 제거정도를 정확히 계량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충족여부에 대한 판별이 되게 되므로 엄격한 공정관리 방법의 보유가 필요하다.

입자크기의 변화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4는 HS 제7부에 해당하는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와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중 제39류에만 적용되는데, 해당 규칙에 따르면 공정의 수행 결과 원재료와 다른 입자크기를 가지는 물질로 변화된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자크기의 변화가 단순 분쇄나 압착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지 용해에 의해 용해된 후 침전에 의해 입자크기가 변화된 경우에는 충분히 가공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만들어진 결과물의 입자 크기·분포·표면적이 사전에 정의된 상태에서 해당 정의에 부합되도록 수행되고 공정의 수행결과 생산되는 상품이 원재료와 다른 특성을 지닌 특유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입자크기의 변화를 유발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의 수행 결과 얻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입자 크기·분포·표면적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고,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해당 정의에 부합되도록 균질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성체 분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규칙 5에서는 일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 혼합물에 대한 유리 또는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물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학 조성과 분자량은 같으나 성질이 다른 2가지 이상의 화합물인 이성질체(異性質體)가 분리공정을 거쳐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로 분리된 경우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물질들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 20> 한-미 FTA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HS 제7부) 불안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부속서 6-가 품목별원산지기준>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제39류~제40류)</p> <p>주 1 : 따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제7부의 규칙 제1항 내지 제5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로 간주한다.</p> <p>주 2 : 주 1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이 부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 적용이 되거나 부가가치 요건에 충족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p> <p>규칙 1 : 화학반응 원산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역내에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주 :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 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p>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 Section VII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Rubber and Articles Thereof (Chapter 39-40)</p> <p>Note 1 : A good of any chapter or heading in Section VII that satisfies one or more of Rules 1 through 5 of this Section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those rules.</p> <p>Note 2 : Notwithstanding Note 1,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if it meets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satisfies the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specified in the rules of origin in this Section.</p> <p>Rule 1 : Chemical Reaction A good of Chapters 39 and 40 that results from a chemical rea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p> <p>Note :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that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dissolution in water or another solvent; (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 (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규칙 2 : 혼합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계획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혼합 또는 융합(분산을 포함한다)의 결과로 물품의 목적 또는 용도에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제품이 제조되어 원료 물질과 다르고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로 간주한다.

규칙 3 : 정제

정제 조건에 충족한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정제는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 1) 의약품, 의약품, 화장품, 수의약 또는 식품 등급 물질
 - 2) 분석, 진단,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 4) 특수 광학용
 -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 6) 생명공학용
 -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담체, 또는
 - 8) 핵등급용

Rule 2 : Mixtures and Blends Origin

A good of Chapters 39 and 40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proportionally controlled mixing or blending (including dispersing) of materials to conform to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resulting in the production of a goo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relevant to the purposes or uses of the good and are different from the input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ule 3 : Purification

A good of Chapters 39 and 40 that is subject to purification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provided that the purification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results in the following:

- (a) the elimination of not less than 80 percent of the content of existing impurities; or
- (b)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impurities resulting in a good suitable:
 - (i) as a pharmaceutical, medicinal, cosmetic, veterinary, or food grade substances;
 - (ii) as a chemical product or reagent for analytical, diagnostic, or laboratory uses;
 - (iii) as an element or component for use in micro-elements;
 - (iv) for specialized optical uses;
 - (v) for non toxic uses for health and safety;
 - (vi) for biotechnical use;
 - (vii) for carriers used in a separation process; or
 - (viii) for nuclear grade uses.

<p>규칙 4 : 입자크기의 변화</p> <p>제39류의 물품은 계획적이고 조절된 물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수지 용해와 다음에 수반되는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의 결과로 원료와 다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진 물품으로 되어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로 간주된다.</p>	<p>Rule 4 : Change in Particle Size</p> <p>A good of Chapter 39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controlled modification in particle size for a good, including micronizing by dissolving a polymer and subsequent precipitation, other than by merely crushing or pressing, resulting in a good having a defined particle size, define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r defined surface area, which is relevant to the purposes of the resulting good an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from the input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p>
<p>규칙 5 : 이성체 분리</p> <p>제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p>	<p>Rule 5 : Isomer Separation</p> <p>A good of Chapter 38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isolation or separation of isomers from mixtures of isomer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f both of the Parties.</p>

한-미 FTA에서는 HS 제50류에서 제63류에 해당하는 섬유와 의류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협정문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해 규정은 한-아세안 FTA처럼 전적으로 불인정 공정만을 다루는 형태는 아니며 섬유 및 의류상품이 충분히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하면서, 최소허용기준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표 21> 한-미 FTA '섬유 및 의류'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규정></p> <p>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제50류 내지 제63류)</p>	<p>Annex 4-A Specific Rules of Origin for Textile or Apparel Goods</p> <p>Section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Chapter 50 through 63)</p>

규칙 1 : 수입당사국은 제51류, 제52류, 제54류,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의 방직용 섬유상품이 다음으로부터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 가.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섬유원료 및 원사, 또는
- 나. 가호에 언급된 섬유원료 및 원사의 그리고 이 부속서상 원산지인 하나 이상의 섬유원료 및 원사의 혼합물

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섬유원료 및 원사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섬유원료 및 원사를 중량으로 7퍼센트까지 포함할 수 있다. 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원사에 들어있는 탄성사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한다.

규칙 2 : 수입당사국은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또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는 경우,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칼라 및 커프스를 제외하고, 의류 겹감 원단이 완전히 다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 가.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원단
- 나.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원사로부터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Rule 1. : An importing Party shall consider a textile good of Chapter 51, 52, 54, 55, 55, or 60 to be originating if it is wholly form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rom:

- (a) one or more fibers and yarns on its list in Appendix 4-B-1; or
- (b) a combination of the fibers and yar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nd one or more fibers and yarns originating under this Annex.

The originating fibers and yar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may contain up to seven percent by weight of fibers and yarns that do not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this Annex. Any elastomeric yarn contained in the originating yar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must be wholly form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ule 2 : An importing Party shall consider an apparel good of Chapter 61 or 62 to be originating if it is cut or knit to shape, or both,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if the fabric of the outer shell, exclusive of collars and cuffs, where applicable, is wholly of:

- (a) one or both fabrics on its list in Appendix 4-B-1;
- (b) one or more fabrics or knit to shape components form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rom

형성된 하나 이상의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원단, 나호에 언급된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 또는 이 부속서상의 원산지 상품인 하나 이상의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의 혼합물

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섬유 또는 원사를 중량으로 7퍼센트까지 포함할 수 있다. 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에 들어있는 단성사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한다.

규칙 3 : 수입당사국은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상품을 경우에 맞게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에 기술된 보이는 안감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그러한 재료가 부록 4-나-1의 목록에 포함되고 그 상품이 그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를 위한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상품인 것으로 간주한다.

*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1) 원단을 언급하는데 사용하는 때에는 더 이상의 과정 없이 사용하도록 준비된 마무리된 원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산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과

one or more of the yarns on its list in Appendix 4-B-1; or

(c) any combination of fabric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he fabrics or knit to shape compon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r one or more fabrics or knit to shape components originating under this Annex.

The originating fabrics or knit to shape compon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may contain up to seven percent by weight of fibers or yarns that do not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this Annex. Any elastomeric yarn contained in an originating fabrics or knit to shape compon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must be wholly form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ule 3 : An importing Party shall consider an apparel good of Chapter 61 or 62 to be originating regardless of the origin of any visible lining fabric described in Chapter Rule 1 for Chapter 61 or Chapter 62, as the case may be, if such material is included in its list in Appendix 4-B-1 and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is Agreement.

* **Wholly formed and finished** means:

(a) when used in reference to fabric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necessary to produce a finished fabric ready for use without further processing. These process and operations include formation

<p>작업은 제직, 편직, 니들링(미봉), 터프팅, 펠팅, 인텐글링 또는 다른 그러한 과정과 같은 형성 과정과 표백, 염색 그리고 날염을 포함하는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그리고</p> <p>2) 원사를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p>	<p>processes, such as weaving, knitting, needling, tufting, felting, entangling, or other such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including bleaching, dyeing, and printing; and</p> <p>(b) when used in reference to yarn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beginning with the extrusion of filaments, strips, film, or sheet, and including drawing to fully orient a filament or slitting a film or sheet into strip, or the spinning of all fibers into yarn, or both, and ending with a finished yarn or plied yarn.</p>
---	--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경우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미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을 제시할 때 일반적으로 예시 또는 열거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협정들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HS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해당 공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시되어 있는 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가 다른 협정들에 비해 특징적인 점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동물의 도살(slaughtering of animals)’을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여 단순히 도살(도축)만이 수행된 경우 불인정 공정으로 인정되어 해당 공정의 수행만을 통해 얻어진 물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도살(도축)을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비원산지 산 동물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도살(도축)하여 얻어진 육류 등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곡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게 설정되어 있는데, 여타의 협정들이 곡물 등 농산물에 적용될 수 있는 불인정 공정을 열거하거나 예시하여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 FTA에서는 물 등의 희석을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표 22> 한-미 FTA 불인정 공정 유형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희석,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분리	-

9) 한-터키 FTA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터키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을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형식은 제1항에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하고 제2항에서 불충분한 공정의 판단 방법으로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열거되어 있는 불인정 공정들 중 ‘단순한(simple)’ 이라고 명시된 공정들의 불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 각주에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도구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터키 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들 중 ‘단순한’ 이 결합되어 있는 공정에는 페인팅 및 광택공정, 분쇄 또는 절단, 상자에 넣기, 포장, 혼합, 조립 등이 있는데 이들 공정의 경우 해당 공정만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공정이 실제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의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계·도구·장비 등이 있는지와 그들 장치들이 해당 공정의 수행만을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혼합의 경우에도 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 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혼합된 물품 간에 분자간의 결합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분자결합이 형성되는 경우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구조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터키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에서 체약당사국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사에서 수행한 공정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물품일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공정들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23> 한-터키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p> <p>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공정은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p> <p>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p> <p>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 해체 및 조립</p> <p>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p> <p>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p> <p>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p> <p>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p>	<p>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p> <p>1.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the following operati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to confer the status of originating products whether or no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 are satisfied:</p> <p>(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p> <p>(b) change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p> <p>(c)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p> <p>(d)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p> <p>(e)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p> <p>(f)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p>

<p>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p> <p>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p> <p>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p> <p>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p> <p>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p> <p>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p> <p>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p> <p>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p> <p>거. 시험 또는 측정</p> <p>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p> <p>더. 동물의 도살*</p> <p>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상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국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p>	<p>(g) operations to colour or flavou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p> <p>(h)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p> <p>(i)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p> <p>(j)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p> <p>(k)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or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p>(l)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p> <p>(m)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p> <p>(n)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o) testing or calibrations;</p> <p>(p)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through (o); or</p> <p>(q) slaughter of animals.</p> <p>2. All operations carried out in a Party on a given product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working or processing undergone by that product is to be regarded as insufficient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p>
---	--

<p>*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p>	<p>*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p>
---	---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한-터키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경우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터키 FTA는 불인정 공정으로 열거한 공정들에 대해 ‘동물의 도살(slaughtering of animals)’ 이나 과일·견과류·채소에 대한 탈피 등과 같이 특정 공정이 수행될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경우와, 특정물품을 제한되지 않고 모든 물품에 대해 불인정 공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되는 물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정들의 경우 전체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가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4> 한-터키 FTA 불인정 공정 유형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압착, 탈각, 연마 및 도정, 탈피, 분쇄, 절단, 매칭(세트구성), 혼합, 조립 또는 분해, 도살	보존 작업(공정), 포장, 포장해체, 세탁, 세척, 먼지제거, (섬유류)다림질 또는 압착, 페인팅 및 광택, 표백, 착색, 착향, (결정당)제분, 씨 제거,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적입, 표시부착(인쇄), 시험 또는 측정

10) 한-콜롬비아 FTA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을 협정문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형식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불인정 공정만이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불인정 공정으로 고려되는 공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상품 운송 중 상태유지를 위해 상품에 추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공정들을 각주 6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 공정들은 추가적으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페인팅 및 광택공정, 적입(積入), 포장, 혼합, 조립, 분해, 분쇄, 절단에 있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각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구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품의 혼합에 대해서도 혼합되는 상품은 같은 종류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여 혼합되는 객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혼합된 물품 간에 분자간의 결합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분자결합이 형성되는 경우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구조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①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 ②용매물을 포함한 용제의 제거, ③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는 화학반응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5> 한-콜롬비아 FTA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3.14조 불인정 공정></p> <p>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 또는 처리 중 하나 또는 그의 조합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p> <p>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p> <p>나. 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p> <p>다.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p> <p>라. 방직용 섬유류의 다림질 또는 압착</p> <p>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p> <p>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p> <p>사.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p> <p>아.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p> <p>자.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사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p> <p>차. 완전한 상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p>	<p>Article 3.14 : Non-Qualifying Operations</p> <p>Notwithstanding other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merely by reason of going through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operations or processes:</p> <p>(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good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p> <p>(b) change of packaging, or breaking-up or assembly of packages;</p> <p>(c)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p> <p>(d)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p> <p>(e)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p> <p>(f)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p> <p>(g)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p>(h) affix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the good or its packaging;</p> <p>(i)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 operations to color or flavo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p> <p>(j) simple assembly of parts of goods to constitute a complete good or disassembly of goods into parts;</p>

<p>카. 동물의 도살</p> <p>타.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p> <p>파.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또는</p> <p>하.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p> <p>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생화학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 내는 가공을 말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다음은 화학반응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p> <p>가. 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p> <p>나. 용매물을 포함한 용제의 제거, 또는</p> <p>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p>(k) slaughter of animals;</p> <p>(l)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p> <p>(m)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or</p> <p>(n)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p> <p>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p> <p>(a) dissolving in water or other solvents;</p> <p>(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p> <p>(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p>
---	---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한-콜롬비아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경우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콜롬비아 FTA는 불인정공정으로 열거한 공정들에 대해 ‘동물의 도살(slaughtering of animals)’ 이나 곡물의 탈각 또는 과일·견과류·채소에 대한 탈피 등과 같이 특정

공정이 수행될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경우와, 특정물품을 제한되지 않고 모든 물품에 대해 불인정 공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되는 물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정들의 경우 전체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가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6> 한-콜롬비아 FTA 불인정 공정 유형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탈각, 연마 및 도장, 혼합, 조립 또는 분해, 도살, 탈피, 연마, 분쇄 또는 절단, 매칭(세트구성)	보존 작업(공정), 포장, 포장해체, 세탁, 세척, 먼지제거, (섬유)다림질 또는 압착, 페인팅 및 광택공정, 표백, 적입, 표시부착(인쇄), 착색 또는 착향, (결정당)제분, 씨 제거,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1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는 불인정 공정을 협정문 부속서 2(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제3조(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 물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형식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한 후 열거된 공정을 포함하여 일정한 수준의 작업 또는 공정만으로 원산지상품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 불인정 공정의 제시방식은 대부분의 FTA협정들과 마찬가지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들을 열거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는 한-칠레 FTA나 한-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될 수 있는 공정의 명칭에 대해 불인정 공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위와 동일 명칭의 공정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불인정 공정으로 판단되지 않는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단순한(simple)’ 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협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정만이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어 『품목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단순한(simple)’ 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 협정에 비해 불인정 공정의 판단에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 열거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들 중 ‘단순한(simple)’ 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정에는 먼지제거·체질 또는 선별·분류·등급화·조합(물품의 세트구성 포함)·세척·도장·절단·혼합·조립 등이 있는데, 이들 공정 중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 『품목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먼지제거·체질 또는 선별·분류·등급화·세척·도장 등의 경우에는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조합(물품의 세트구성 포함)·절단·혼합·조립 등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 『품목별기준』의 충족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공정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도에 해당하는 범위의 명확한 구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표 27>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3조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 물품></p> <p>마. 제1조 나호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작업과 공정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데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 또는 저장을 위해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이산화황 또는 기타 수용성 용액 처리, 손상부분 제거, 기타 유사한 작업) 2. 먼지제거, 체질 또는 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물품의 세트 구성 포함), 세척, 도장, 절단 등 단순작업 	<p>Rule 3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p> <p>(e) Whether or not the requirements of Rule 1(b) are satisfied, the following operations or processes ar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to confer the status of originating product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products in good condition either for transportation or storage (ventilation, spreading out, drying, chilling, placing in salt, sulphur dioxide or other aqueous solutions, removal of damaged parts, and like operations); (ii) S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painting, cutting up

3. 탁송품의 포장변경, 분해, 조립	(iii) 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consignments;
4. 얇게 썰기, 병·플라스크·가방·상자 등의 내부에 절단 또는 재포장 또는 설치, 카드 또는 판지 등의 부착	(iv) Simple slicing, cutting or repacking or placing in bottles, flasks, bag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etc.
5. 생산품 또는 포장에 마크·라벨 또는 기타 구분표시 등 부착	(v) The affixing of marks, labels or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6. 단순 혼합	(vi) Simple mixing
7. 완성품의 구성을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vii) Simple assembly of parts of products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
8. 동물의 도살	(viii) Slaughter of animals;
9. 탈피, 박편, 탈곡, 빼제거, 그리고	(ix) Peeling, unflaking, grain removing and removal of bones; and
10. 상기 제시된 둘 또는 그 이상 작업이 혼합된 경우	(x)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specified above.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경우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열거한 공정들에 대해 ‘동물의 도살(slaughtering of animals)’을 제외하고는 특정 공정이 수행될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한정하여 열거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적용되는 물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정들의 경우 전체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 28>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불인정 공정 유형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합(세트구성 포함), 얇게 썰기, 혼합, 조립, 도살, 박편	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용액처리, 손상부분 제거, 먼지제거,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세척, 도장, 절단, 포장변경·분해·조립, 적입, 마크·라벨 표시, 탈피, 탈곡, 빼 제거

불인정 공정은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를 제외하고 협정별로 ‘운송 및 저장 목적의 보존 작업’ 과 같이 공통된 경우가 있는 반면, 한-칠레 FTA의 ‘전시작업’ 과 같이 특정 협정에서만 지정된 경우도 있다.

또한 개념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나 사용되는 용어 또는 단어가 틀린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적용되는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게다가 ‘조립이나 혼합 또는 희석’ 등의 경우 단순히 조립(혼합 또는 희석 포함)된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협정에서 따로 ‘단순히(simple)’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¹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단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의 경우 조립에 대해 ‘단순조립’ 을 불인정 공정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고 한-싱가포르 FTA는 ‘단순 혼합’ 이나 ‘단순 조립’ 등을 불인정 공정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협정들과 달리 ‘단순(simple)’ 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적용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¹⁵⁾

반면, ‘단순’ 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는 나머지 협정들의 경우 ‘단순’ 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한 정의를 각주의 형태나 본문 내에 둬으로써 상대적으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주고 있다.

한편,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을 세번의 변경 등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포장, 보존, 세정, 선별, 검사 등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가공, 조립, 혼합 등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특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14) 분석대상인 11개 협정 중 ‘단순한’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정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4개 협정이다.

15) 예를 들면 ‘단순조립’의 경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에서는 ‘부품 단순조립’규정을 두지 않아 단순조립만 수행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반면, 다른 FTA들에서는 부품을 단순조립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쪽이건 “단순한 정도”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개별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의 종류를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각 협정에서 당해 공정을 불인정 공정에 어떤 형태로 포함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분해 보고자 한다.

1. 포장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포장¹⁶⁾과 관련된 사항 중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정들은 단순히 포장(재포장 포함)만 진행된 경우, 병이나 상자 등에 제품을 나누어 담은 공정만 진행된 경우 및 포장의 해체작업만 진행된 경우 등이다.

『품목별기준』에서 불인정 공정을 일부 제시하고 있는 한-미 FTA를 제외하고 전체 협정에서 포장(재포장 포함)만 진행된 경우에는 불인정 공정으로 분류하여 원산지상품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포장공정과 관련한 불인정 공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한-미 FTA의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여타 협정과 마찬가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마찬가지의 사례로 적입(병, 상자 등)의 경우 한-칠레 FTA와 한-미 FTA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한-칠레 FTA는 협정상 제4.13조 제1항 다호¹⁷⁾에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미 FTA의 경우 각 물품의 『품목별기준』에 원산지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제외세번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¹⁸⁾ 정확한 용어가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용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6) 한국공업규격(KSA) 1001에 따르면 '포장이라 함은 물품의 운송 및 보관에 있어 그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이나 포장한 상태 및 기술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낱 포장(단위포장), 속 포장(내부포장), 겉 포장(외부포장)의 3종류로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낱 포장(단위포장)	개별 물품의 포장을 말하며 물품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혹은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와 용기로서 물품을 싸는 기술 상태를 말한다.
속 포장(내부포장)	포장화물 내부의 포장으로서 습기, 빛, 열,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용기로서 물품을 싸는 기술 상태를 말한다.
겉 포장(외부포장)	내부포장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외부포장으로서 목상자, 포대, 봉 등의 용기에 넣고 기호 및 화물날인을 마치는 기술 상태를 말한다.

17)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Operations or processes relating to packaging or presentation of the goods for their respective sale)

18) 병에 나누어 담은 것만으로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는 대표적 품목인 HS 제3003호의 페니실린과 HS 제3004호의 소매용 페니실린의 경우 HS 제3003호에 대해서는 CTH가 적용되는 반면 HS 제3004호에 대해서는 CTH(ex.3003)이 적용되어 단순히 HS 제3003호의 페니실린을 소매용에 적합한 작은 병에 옮겨 담은 공정만으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 29> 협정별 '포장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포장 또는 재포장	○	○	○	○	○	○	○		○	○	○
적입(병, 상자 등)		○	○	○	○	○	○		○	○	○
선적 및 운송 촉진 작업(공정)	○										
포장해체	○	○	○	○		○	○		○	○	○

주 : 각 협정별 표기는 다음과 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또한 적입(積入)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대부분의 협정들이 포장공정 자체의 난이도나 종류를 불문하고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EFTA FTA와 한-인도 CEPA에서는 단순한 공정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단순(simple)’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단순한’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말하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포장과정에 특별한 기술·기계·도구 또는 설비가 투입되는 경우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포장과 단순하지 않은 포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한-EFTA FTA와 한-인도 CEPA의 경우에도 포장공정의 수행만으로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아 ‘단순’ 한지의 여부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여타의 협정들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볼 때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에서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포장공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여타의 협정들은 적용되는 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포장공정 자체를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으로 제시될 수 있다.

<표 30> 협정별 '포장' 관련 규정

구 분	규 정
FCL	<p>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operations or processes relating to packaging or presentation of the goods for their respective sale)</p> <p>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testing or calibrations, division of bulk shipments, assemble into packages, adherent of marks, labels or distinctive signs on the products or packing; packing, unpacking or repackaging)</p>
FSG	<p>포장의 변경 및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packages)</p> <p>병·통·상자에 넣기 및 그 밖의 간단한 포장 작업(placing in bottles, cases, boxes and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FEF	<p>포장의 변경 및 포장의 해체와 조립(changes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p> <p>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 및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작업(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p>* '단순한'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FAS	<p>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changes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p> <p>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모든 다른 단순한 포장 공정(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p>단순 결합 공정, 라벨링, 다림질 또는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또는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ing, ironing or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p>

FIN	<p>포장의 변경, 그리고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changes of packaging or packing, and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p>
	<p>단순 결합공정 · 라벨링 · 프레스 ·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ling,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p> <p>연마 ·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및 재포장(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and repackaging)</p> <p>병 · 캔 · 플라스크 · 가방 · 케이스 · 상자에 단순한**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p>** ‘단순한’ 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 기계 ·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FEU	<p>포장의 변경, 포장물 해체 및 조립(change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p> <p>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or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p>(주해5)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 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Explanatory Notes 5)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p>

F P E	<p>포장상태의 변경 또는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changes of packing or breaking-up or assembly of packages)</p> <p>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ing operations)</p> <p>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F U S	-
F T R	<p>포장의 변경, 포장물 해체 및 조립(change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p> <p>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or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p>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 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p>
F C O	<p>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change of packaging, or breaking-up or assembly of packages)</p> <p>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p>

	<p>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말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다음은 화학반응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p>
ATPA	<p>탁송품의 포장변경, 분해, 조립(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consignments)</p> <p>얇게 썰기, 병·플라스크·가방·상자 등의 내부에 절단 또는 재포장 또는 설치, 카드 또는 판지 등의 부착(Simple slicing, cutting or repacking or placing in bottles, flasks, bag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etc.)</p>

2) 공정해설

포장은 목적과 사용하는 방법, 대상 물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며 종류에 따라 특징과 사용되는 기술도 다르다.

<표 31> 포장의 분류

구분	종류	내용
목적에 따른 분류	소비자포장	일반 상품을 제공하는 목적의 것(예 : 캔, 세제 등)
	수송포장	화물 수송을 위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예 : 냉동차, 플랜트의 나무데두리 곤포 등)
	선물포장	세모, 추석 등의 선물용품 세트포장
사용방법에 따른 분류	벌크포장	특정 루트를 대량 수송하는 경우(예 : 드럼통, 폴라서블 컨테이너 등)
	업무용 포장	대량 사용의 기업과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것(예 : 드럼통의 생맥주, 대용량 식용유 등)
	포션팩	최소 사용단위의 포장(예 : 도시락의 소스, 1인용프림 등)
대상품에 따른 분류	식품포장	육, 야채 등 신선식품, 가공식품, 음료 등
	가전제품포장	냉장고, 세탁기, TV 등
	의약품 포장	일반 의약품, 약국용 의약품, 병원용 의료약품 등
	잡화 포장	샴푸, 완구 등
	공업용 포장	시멘트, 건축자재, 도료 등

포장 또는 재포장은 내용물에 해당하는 비원산지물품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단순히 포장하거나 내용물을 분할하여 소량으로 포장하는 등의 경우로, 협정별로 정하고 있는 내용물의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의 발생 등 충분한 수준의 본질적인 특성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원산지물품을 단순히 역내에서 판매에 적합한 상태로 포장하거나 운송 등에 편리하도록 포장만을 진행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포장해체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데 수입된 비원산지물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내용물을 획득한 경우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될 정도로 충분한 가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포장 또는 재포장]

선적 및 운송촉진 작업은 개별 물품을 컨테이너에 입고하고 고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선적과정을 수월하게 하거나 운송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또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변화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운송 상의 편의와 물품 보호만을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단순히 이 공정의 수행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의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선적 및 운송 촉진 작업]

적입작업(공정)은 포장의 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데 비원산지물품을 역내에서 상자에 나누어 담거나 병 등을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 전용 운송용기에 담는 공정으로 여타의 포장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본질적 특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적입작업(공정)]

2. 보존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개별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존과 관련한 공정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건조, 냉장, 냉동 등과 같이 상품의 운송이나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정들이 포함된다.

<표 32> 협정별 '보존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운송 및 저장 목적 보존작업	○	○	○	○	○	○	○		○	○	○
환풍 또는 통풍	○				○						○
건조	○	○			○						○
냉장	○				○						
냉동	○	○			○						○
염수장		○			○						○
기름 등의 도포	○	○									

주 : 각 협정별 표기는 다음과 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시하고 있는 형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칠레 FTA의 경우 협정문 제4.13조 제1항에서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는 작업이나 공정’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될 수 있는 다양한 공정들을 제2항에서 예시하고 있다.

둘째, 한-인도 CEPA에서는 보존 작업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됨을 규정한 후 보존 작업에 해당되는 공정들을 각주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불인정 공정을 제시하고 있는 한-미 FTA의 경우에는 보존과 관련된 공정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 협정을 제외한 여타의 협정들은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을 불인정 공정으로 정의하여 이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공정들이 불인정됨을 제시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협정들에 있어 불인정 공정에 해당될 수 있는 공정들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 작업이 이루어진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물품의 품질이나 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3> 협정별 ‘보존’ 관련 규정

구 분	규 정
FCL	<p>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는 작업이나 공정(operations or processes that assure the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transportation or storage)</p> <p>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airing, ventilation, drying, refrigeration, freezing)</p> <p>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protecting materials thereof)</p>
FSG	<p>(건조·냉동·염수장 보관과 같이)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과 그 밖의 유사한 작업(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product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such as drying, freezing, keeping in brine) and other similar operations)</p> <p>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 제거, 녹방지를 위한 기름칠,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보호 재료의 도포(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protecting materials)</p>
FEF	<p>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p>
FAS	<p>운송 혹은 저장 중에 상품을 우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 공정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good remain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p>

FIN	<p>상품이 운송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는 보존 작업*(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p> <p>* 보존 작업은 건조·냉동·염장·통풍·펼침·냉장·소금 또는 이산화유황에 담기·손상된 부분의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Preserving operations include drying, freezing, keeping in brine, ventilation, spreading out, chilling, placing in salt or sulfur dioxide, removal of damaged parts, and like operations)</p>
FEU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FPE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FUS	-
FTR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FCO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공정(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good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ATPA	운송 또는 저장을 위해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이산화황 또는 기타 수용성 용액 처리, 손상부분 제거, 기타 유사한 작업)(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products in good condition either for transportation or storage (ventilation, spreading out, drying, chilling, placing in salt, sulphur dioxide or other aqueous solutions, removal of damaged parts, and like operations))

2) 공정해설

‘건조’는 공정이 수행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의 변경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¹⁹⁾

19) 멸치(HS 제0301호)의 경우 건조공정을 거치게 되면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여 마른 멸치(HS 제0305호)로 변경되나, HS 제8류에 분류되는 식용의 과실이나 견과류 등은 일반적으로 신선상태의 것과 건조된 것이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단순히 ‘건조’ 만이 수행된 경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건조’를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협정의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에서 ‘건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불인정 공정에 ‘건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용상 차이가 없다.



[건조공정]

냉장·냉동·염장 등은 공통적으로 물품의 부패 등을 방지하고 운송 상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물품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공정이다.

이 또한 건조와 같이 수행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의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냉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며 냉동이나 염장은 세번의 변경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공정을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들의 경우에는 냉장·냉동·염장 등을 통해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는 등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비원산지물품에 대해 단순히 냉장·냉동·염장만이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냉장·냉동·염장을 별도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협정의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에서 ‘냉장·냉동·염장’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냉장]



[냉동]



[염장]

3. 세정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세정(洗淨)과 관련된 불인정 공정은 적용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일반적인 물품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섬유 및 의류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경우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를 개별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에 따라 분류해 보면 세척이나 먼지제거의 경우 전체 물품에 고루 적용될 수 있는 불인정 공정이며, 세탁이나 드라이 크리닝은 섬유 및 의류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불인정 공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34> 협정별 '세정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세탁	○		○	○	○	○	○		○	○	
세척	○		○	○		○	○		○	○	○
먼지제거	○	○			○						○
드라이 크리닝				○	○						

주 : 각 협정별 표기는 다음과 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특징적인 점은 대부분의 협정이 세탁이나 세척에 대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불인정 공정을 일반물품과 별개로 구분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세탁을 일반적인 세탁과 드라이 크리닝으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한-인도 CEPA의 경우에도 다른 협정들과 달리 섬유 및 의류에 대해 드라이 크리닝을 별도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한-싱가포르 FTA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는 세정(洗淨)과 관련한 불인정 공정으로 먼지제거만이 포함되어 있고 세탁이나 세정 등은 제시되

어 있지 않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의 경우 다른 협정들이 세정 공정의 난이도나 종류를 불문하고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단순한 공정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단순(simple)’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 ‘단순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말하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세정 과정에 특별한 기술·기계·도구 또는 설비가 투입되는 경우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세정과 단순하지 않은 세정으로 구분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도 세정 공정의 수행만으로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아 ‘단순’한지의 여부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여타의 협정들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5> 협정별 ‘세정’ 관련 규정

구 분	규 정
FCL	<p>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cleaning, washing, sieving, shaking, selection, classification or grading, picking out, mixing, cutting)</p> <p>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protecting materials thereof)</p>
FSG	<p>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 제거, 녹방지를 위한 기름칠,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보호 재료의 도포(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protecting materials)</p>
FEF	<p>세탁, 세척과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affixing marks, label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p>
FAS	<p>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 세척, 세정, 제거(simple*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p>

	<p>* ‘단순한’ 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simple’ generally describes an activity which does not need special skills,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p>단순 결합 공정, 라벨링, 다림질 또는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또는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ing, ironing or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p>
FIN	<p>먼지·산화물·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세척·세정 또는 제거 (washing, cleaning or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p> <p>단순 결합공정·라벨링·프레싱·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ling,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p>
FEU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FPE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FUS	-
FTR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FCO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ATPA	먼지제거, 체질 또는 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물품의 세트 구성 포함), 세척, 도장, 절단 등 단순작업(S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painting, cutting up)

2) 공정해설

세탁은 주로 섬유와 의류 상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정의 특성상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비원산지 섬유 및 의류를 계약당사국 내에서 세탁만 진행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특이한 점은 세탁만으로는 세번의 변경 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협정에서 섬유 및 의류의 청결을 위한 세탁을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탁공정]

섬유 및 의류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세탁과 달리 세척이나 먼지제거는 농수축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으로 물품의 외관 및 내관을 청결히 해 주는 작업과정인데, 이 또한 세탁과 마찬가지로 공정의 특성상 세번의 변경 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비원산지물품에 대해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척]



[먼지제거]

4. 선별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양질의 물품을 분류해 내는 공정에 해당하는 선별은 한-칠레 FTA의 경우 해당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채질(체질)·분류 또는 등급화·선별만을 불인정 공정으로 열거하고 있다.

<표 36> 협정별 '선별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채질	○		○	○	○	○			○	○	○
진동	○										
선택	○										
분류 또는 등급화	○		○	○	○	○			○	○	○
선별	○		○	○	○	○			○	○	○
감별						○			○	○	

주 : 각 협정별 표기는 다음과 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선별과 관련하여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및 한-미 FTA는 별도로 해당될 수 있는 불인정 공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선별 자체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선별을 통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별과 관련된 공정들을 불인정 공정으로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3개 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채질·선별·분류·등급화 등이 대표적인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협정에 따라 진동이나 감별 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37> 협정별 '선별' 관련 규정

구 분	규 정
FCL	세탁, 세척, 체질 ,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cleaning, washing, sieving , shaking , selection , classification or grading , picking out , mixing, cutting)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testing or calibrations, division of bulk shipments , assemble into packages, adherent of marks, labels or distinctive signs on the products or packing; packing, unpacking or repackaging)
FSG	-
FEF	체질 ,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sifting , screening , sorting , classifying , grading ,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FAS	체질 ,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sifting , screening , sorting , classifying , grading , matching)
FIN	체질 · 선별 · 구분 · 분류 · 등급화 또는 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 매칭(sifting , screening , sorting , classifying , grading or matching ,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FEU	감별 , 체질 ,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sifting , screening , sorting , classifying ,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FPE	-
FUS	-
FTR	감별 , 체질 ,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sifting , screening , sorting , classifying ,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FCO	감별 , 체질 ,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sifting , screening , sorting , classifying , grading ,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ATPA	먼지제거, 체질 또는 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물품의 세트 구성 포함), 세척, 도장, 절단 등 단순작업(S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 sorting , classifying ,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painting, cutting up;)

2) 공정해설

‘채질(체질)’은 가루상태의 물품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해내는 공정으로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선별·분류 또는 등급화·선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비원산지물품 중 양질의 상품만을 분류해 내는 공정으로 해당 공정의 수행을 통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 변화가 발생될 수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공정이 될 수 없다.



[채질]



[선별]

다만, 폐기물·부스러기·고물 등의 경우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선별 과정을 거쳐 획득된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개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부스러기·고물 등에 대한 원산지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집된 것으로서 더 이상 원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국 내에서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별도의 수집과정을 통해 획득된 폐기물·부스러기·고물의 경우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면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하다면 투입 원료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파생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을 통해 획득된 폐기물·부스러기·고물의 경우에는 수집과정에서 선별·선별·분류 등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정만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당사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처럼 폐기물·부스러기·고물 등에 대해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을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하는 이유는 이들 물품의 경우 사용된 재료나 거래관계 등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추적하거나 확인하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²⁰⁾

<표 38> 협정별 ‘폐기물·부스러기·고물’ 관련 규정

구 분	규 정
FCL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waste and scrap derived from)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생산, 또는(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r)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provided that such goods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FSG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waste and scrap derived from)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생산, 또는(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r)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provided that such goods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FEF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고,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재료(articles collected there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nor are capable of being restored or repaired and are fit only for disposal or recovery of parts or raw materials) 당사국에서 수행한 소비나 제조공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waste and scrap resulting from consumption or manufacturing operations conducted there, fit only for disposal or recovery of raw materials)

20)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년 개정판 원산지결정기준』, p.88.

FAS	<p>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articles collected from there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nor are capable of being restored or repaired and are fit only for the disposal or recovery of parts of raw materials, or for recycling purposes)</p> <p>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waste and scrap derived from)</p> <p>(1)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production there; or)</p> <p>(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used goods collected there, provided that such goods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p>
FIN	<p>당사국 영역에서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를 포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으며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articles collected there, including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production there,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nor are capable of being restored or repaired and are fit only for disposal or recovery of parts or raw materials, or for recycling purposes)</p>
FEU	<p>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used articles collected the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or for use as waste)</p> <p>당사자 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waste and scrap derived from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conducted there)</p>
FPE	<p>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waste and scrap derived from)</p> <p>1)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 또는(manufacturing operations conduc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or Peru; or)</p> <p>2)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or Peru)</p> <p>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한다.(provided that such waste and scrap is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p>
FUS	<p>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waste and scrap derived from)</p> <p>1)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또는(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r)</p>

	<p>2)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provided such goods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p> <p>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고상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recovered goods deriv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rom used goods and utiliz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in the production of remanufactured goods)</p>
F T R	<p>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used articles collected the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or for use as waste)</p> <p>당사자 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waste and scrap derived from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conducted there)</p>
F C O	<p>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waste and scrap derived from)</p> <p>1)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r)</p> <p>2)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p> <p>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한다(provided that such waste and scrap is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p>
A T P A	<p>수출국에서 더 이상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고물품으로부터 회수된 부품 및 원재료(parts or raw materials recovered there from used articles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nor are capable)</p> <p>수출국에서 회복이나 수선을 통해 더 이상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의 수선에만 적합한 중고물품(used articles collected there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there nor are capable of being restored or repaired and which are fit only for disposal or for the recovery of parts or raw materials)</p> <p>수출국에서 제조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과 부스러기(waste and scrap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operations conducted there)</p>

5. 가공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가공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성상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개별 협정에서는 공정의 수행결과로 물품의 성상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정이 ‘단순한’ 공정(가공)의 수행결과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9> 협정별 ‘가공 관련(일반물품)’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절단	○	○	○	○	○	○			○	○	○
연마			○	○	○	○	○		○	○	
도장(페인팅) 또는 광택			○	○	○	○	○		○	○	○
분해 또는 해체	○	○	○	○	○	○	○		○	○	
파쇄나 분쇄	○	○	○		○	○			○	○	
표시나 상표 부착	○	○	○	○	○	○			○	○	○
다림질 또는 압착			○	○		○	○		○	○	
제단				○	○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				○	○						
장식품 부착				○	○						
탈색				○	○						
방수				○	○						
머서라이징				○	○						
자수상품의 부분 자수				○							

주 : 각 협정별 표기는 다음과 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여기서 ‘단순한’이란 개별 물품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품목별기준』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의 가공을 말하는 데, 개별 협정에서는 ‘단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를 제외하고 별도로 ‘단순한’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²¹⁾

협정별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될 수 있는 가공의 종류는 적용되는 물품에 따라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한 일반물품과 농축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공정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다만, 불인정 공정의 제시방법에 따른 특성상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결정당의 제분’이나 ‘곡물의 탈피’ 등과 같이 특정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제시된 공정 자체가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일반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불인정 공정이라 하더라도 농축산물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일반물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불인정 공정은 절단·연마·도장 또는 광택·분해, 해체·표시나 상표 부착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공정 중 절단의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에 해당될 수 있는 ‘단순절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한-칠레 FTA나 한-싱가포르 FTA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을 활용하여 절단만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장(페인팅) 및 광택의 경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및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불인정 공정을 제시하고 있는 한-미 FTA를 제외하고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공정의 경우 특성상 동 공정의 수행만으로 물품의 본질적 특성변화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낮음에도 ‘단순한’ 도장(페인팅) 및 광택과 그렇지 않은 도장(페인팅) 및 광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21)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공정의 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술·기계·장비·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에 해당하는 공정들이 수행되는 경우 단순가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되는 불인정 공정은 한-인도 CEPA와 한-아세안 FTA를 제외한 대부분의 협정에서 표시나 상표부착·다림질 또는 압착 등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인도 CEPA와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불인정 공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른 협정들에 비해 다양한 공정들을 불인정 공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섬유 및 의류상품에 있어 한-아세안 FTA가 가지는 특징은 자수상품에 대해 자수가 체결당사국 내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5%) 이상의 자수공정이 수행되거나 자수상품 총 중량의 일정비율(5%) 이상의 자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0> 협정별 '가공 관련(일반물품)' 관련 규정

구 분	규 정
FCL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cleaning, washing, sieving, shaking, selection, classification or grading, picking out, mixing, cutting)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testing or calibrations, division of bulk shipments, assemble into packages, adherent of marks, labels or distinctive signs on the products or packing ; packing, unpacking or repackaging)
	분해 (disassembly)
FSG	제품 또는 그 포장의 의장·상표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 부착 (affixing marks, label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분해 (disassembly)
FEF	섬유류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작업(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 '단순한'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p>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p> <p>상표·라벨·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p> <p>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 ‘단순한’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F A S	<p>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p> <p>* ‘단순한’ 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simple’ generally describes an activity which does not need special skills,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p>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p> <p>표식,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지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p> <p>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체하기(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단순 결합 공정, 라벨링, 다림질 또는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또는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ing, ironing or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p> <p>중형 제단 및 끝단 봉제, 특정 상업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cutting to length or width and hemming, stitching or overlocking of fabrics which are readily identifiable as being intended for a particular commercial use)</p>

	<p>끈, 밴드, 구슬, 코드, 고리 그리고 아이릿과 같은 장식품을 집고, 누비고, 잇고 부친 트리밍 그리고/또는 결합(trimming and/or joining together of accessory articles, such as straps, bands, beads, cords, rings or eyelets, by sewing, looping, linking or attaching)</p>
	<p>탈색, 방수, 디케이팅, 줄임, 머서라이징 또는 단지 최종 공정을 수행할 목적의 유사한 공정(bleaching, waterproofing, decating, shrinking, mercerizing, or similar operations for the purposes of having merely undergone the finishing operations; or)</p>
	<p>자수 상품의 전체 면적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자수 또는 자수 상품의 총 중량 5% 미만에 해당하는 자수(embroidery which represents less than five (5) percent of the total area of the embroidered goods or embroidery which contributes less than five (5)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e embroidered goods)</p>
FIN	<p>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 ‘단순한’ 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p>단순 결합공정·라벨링·프레싱·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ling,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p> <p>종횡 재단 및 감침질 또는 특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cutting to length or width and hemming, or stitching or overlocking of fabrics which are readily identifiable as being intended for a particular commercial use)</p> <p>끈·띠·구슬·코드·고리 및 아이릿 같은 장식품을 함께 재봉하거나, 봉합하거나, 잇거나, 붙이는 트리밍 및/또는 결합(trimming and/or joining together by sewing, looping, linking or attaching accessory articles such as straps, bands, beads, cords, rings and eyelets)</p> <p>원사·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 물품에 대한 탈색·방수·디케이팅·수축·머서라이징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완성 공정(one or more finishing operations on yarns, fabrics or other textile articles, such as bleaching, waterproofing, decating, shrinking, mercerizing, or similar operations)</p>

	<p>연마·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및 재포장(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and repackaging)</p> <p>표식·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시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i>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i>)</p> <p>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을 부품으로 해체(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 “단순한” 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FEU	<p>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p> <p>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p> <p>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p> <p>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p> <p>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주해5)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 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Explanatory Notes 5)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p>

F P E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단순한 페인팅 그리고 광택 공정(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F U S	-
F T R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 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

F C O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 표시의 부착(affix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the good or its packaging)
	<p>완전한 상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simple assembly of parts of goods to constitute a complete good or disassembly of goods into parts)</p> <p>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말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다음은 화학반응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p> <p>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또는(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or)</p>
ATPA	먼지제거, 체질 또는 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물품의 세트 구성 포함), 세척, 도장, 절단 등 단순작업(s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painting, cutting up)
	탁송품의 포장변경, 분해, 조립 (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consignments)
	생산품 또는 포장에 마크·라벨 또는 기타 구분표시 등 부착 (The affixing of marks, labels or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완성품의 구성을 위한 부품의 단순조립 (Simple assembly of parts of products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정들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농산물의 경우에는 비원산지물품을 단순히 상품화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씨를 제거하는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 변화를 유발시키지 않는 대부분의 공정들이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41> 협정별 '가공 관련(농축산물)'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탈피	○	○	○	○	○	○			○	○	○
탈각 또는 박편	○	○	○	○	○	○	○		○	○	○
탈곡	○	○									○
도정			○	○	○	○	○		○	○	
씨 제거			○	○	○	○			○	○	
뼈 제거	○	○									○
표백			○	○		○	○		○	○	
압착	○	○			○						
연질화	○	○									
도살(도축)	○	○	○	○	○	○	○		○	○	○
절단	○	○	○		○	○			○	○	○
염화 또는 가당	○	○									
당류 착색			○	○	○	○			○	○	
착향			○			○			○	○	
각설탕 작업(공정)				○	○	○			○	○	
(결정당) 제분						○			○	○	
표시나 상표 부착	○	○	○	○	○	○			○	○	○

주 : 각 협정별 표기는 다음과 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이는 이들 협정의 경우 비원산지 결정당을 제분하여 가루상태의 당으로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곡물을 제분하여 『품목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

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제분을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협정의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의 충족여부만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 연질화나 뼈의 제거 및 도축 등이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도축(도살)의 경우에는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다.²²⁾

축산물의 경우 도축(도살)을 제외하고 세번의 변경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정은 ‘뼈 제거’인데, 이 공정에 대해서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는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협정에서 축산물도 농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품목별기준』에서 원산지상품을 사용한 경우에만 FTA특혜가 가능하도록 제외하거나 동물성 생산품에 대해 계약당사국 내에서의 출생이나 사육 등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어 불인정 공정으로 해당 공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상 차이는 없다.

<표 42> 협정별 ‘가공 관련(농축산물)’ 관련 규정

구 분	규 정
FCL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peeling, unshelling or unflaking, grain removing, removal of bones, crushing or squeezing, macerating)
	염화, 가당(salifying, sweetening)
	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
FSG	탈피·탈각 또는 박편·탈곡·뼈 제거·분쇄 또는 압착 및 연질화를 포함한 단순 절단(simple cutting, including peeling, unshelling or unflaking, grain removing, removal of bones, crushing or squeezing, and macerating)
	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
	염화 또는 가당(salifying or sweetening)
FEF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곡물 및 쌀의 도정(husking, partial

22) 이는 한-미 FTA를 제외하고 모든 협정이 비원산지 산 동물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도축하여 얻은 육과 식용설육 등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p>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p> <p>당류 착색 및 각설탕 작업(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sugar lumps)</p> <p>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탈각(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p> <p>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p>
FAS	<p>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p> <p>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sugar lumps)</p> <p>단순한 껍질 벗기기, 씨 제거, 또는 탈각(simple peeling, stoning, or un-shelling)</p> <p>동물의 도축*(slaughtering of animals*)</p> <p>* “도축”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이에 연이어 이루어진 저장과 운송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을 의미한다(Slaughtering means the mere killing of animals and subsequent processes such as cutting, chilling, freezing, salting, drying or smoking,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for storage and transport)</p>
FIN	<p>곡물 및 쌀의 탈각·부분 또는 전체 표백·연마 및 도정(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p> <p>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sugar lumps)</p> <p>탈피·씨제거 및 탈각(peeling, stoning and unshelling)</p> <p>박편·파쇄·압착·썰기·연질화 및 뼈제거(unflaking, crushing, squeezing, slicing, macerating and removal of bones)</p> <p>동물의 도축(slaughtering of animals)</p>
FEU	<p>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p> <p>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operations to colour or flavou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p> <p>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p> <p>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p>
FPE	<p>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p> <p>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p>
FUS	-

FTR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operations to colour or flavou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
	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
FCO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 operations to color or flavo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
	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
ATPA	얇게 썰기, 병·플라스크·가방·상자 등의 내부에 절단 또는 재포장 또는 설치, 카드 또는 판지 등의 부착(Simple slicing, cutting or repacking or placing in bottles, flasks, bag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etc)
	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
	탈피, 박편, 탈곡, 뼈제거(Peeling, unflaking, grain removing and removal of bones)

2) 공정해설

‘절단’은 공정의 특성상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한 일반물품과 농축산물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으로 협정별 규정방식의 특성에 따라 수행방법을 기준으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될 수 있는 ‘단순한’의 의미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의 좌측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 절단’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절단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계·기구·장치·도구 등이 없이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 공정으로 분류되는 ‘단순 절단’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우측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구·장치·도구 등을 이용하여 절단이 수행된 경우에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절단’ 공정을 축산물에 적용되는 경우로 가정하여 보면 당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구·장치·도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협정에서 ‘절단’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상품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당사국 내에서 ‘절단’ 공정이 수행된 경우 당해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기술이나 기계장비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품목별기준』에서 ‘절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원산지상품 사용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확인하여야만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단순절단]



[절단]

이어서 물품의 외관을 가다듬는 작업과정에 해당하는 연마나 광택은 작업과정의 특성상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공정이다.

따라서 연마나 광택을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협정과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의 경우에도 해당 공정이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마]



[광택]

분해 또는 해체는 한-미 FTA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원산지물품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분해 또는 해체과정을 거쳐 획득한 반제품 및 부품품 등은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별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반면,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분해 또는 해체를 통해 얻어진 부품 등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²³⁾ 동 규정에 따르면 중고 상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한 후 정상적인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세척·검사 등을 수행하여 얻은 물품은 재생용품에 해당하는 원산지상품으로 인

23) 한-미 FTA 제6.22조(정의) 재생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결과로 나온 개별적인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가. 중고 상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고,

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척·검사·테스팅 또는 그 밖의 다른 공정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나 상표부착은 특성상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한 일반물품과 농축산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공정인데, 해당 공정의 수행이 물품 자체에 대해 수행될 수도 있고 물품의 포장에 대해 수행될 수도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자체의 특성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표부착을 별도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한-미 FTA나 한-페루 FTA의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해 또는 해체]



[표시나 상표부착]

파쇄나 분쇄는 모두 물품을 잘게 부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쇄의 경우가 파쇄보다 입자크기가 작다.

이 공정들은 일반적인 모든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물품의 성상 변화는 물론 세번의 변경 등 본질적인 특성의 변화까지를 유발할 수 있는 공정이나, 계약당사국 내에서 비원산지물품을 사용하여 당해 공정들만 수행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협정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파쇄]



[분쇄]

다림질이나 장식품 부착은 주로 섬유나 의류에 적용되는 불인정 공정으로 이미 구체적인 형상과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 미관상 좋은 상태로 만들거나 해당 제품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공정으로 해당 공정의 수행 여부가 대부분의 불인정 공정들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변화를 유발시키지는 않는다.



[다림질]



[장식품 부착]

이 공정들은 섬유 및 의류에 대해 다른 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불인정 공정을 제시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에서만 규정되

어 있으며, 해당 공정들을 별도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협정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공정의 수행만으로 『품목별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오바로크·탈색·자수’ 등의 경우에도 다림질이나 장식품 부착과 같이 주로 섬유나 의류에 적용되는 불인정 공정으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다른 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불인정 공정을 제시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에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공정은 자수의 경우와 같이 특성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일부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자수’는 한-아세안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도 자수공정의 대부분(95% 이상)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자수’ 상품에 대해 대부분의 공정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 비원산지물품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5% 미만의 일부 ‘자수’만 수행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5% 미만의 일부 ‘자수’만 수행되어 있는 비원산지 ‘자수’ 상품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95% 이상의 ‘자수’ 공정을 통해 완성품으로 만든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바로크]



[탈색]



[자수]

탈피(탈각)는 곡물이나 갑각류·연체동물 및 동물의 껍질질을 벗기는 공정으로 물품의 성상에 변화를 발생시키고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세번의 변화 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도 변화를 발생시키는 공정이다.

갑각류나 연체동물의 경우 껍질을 벗기는 공정을 수행하게 되면 물품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현행의 품목분류 체계상 4단위 이하의 세번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²⁴⁾ 해당 물품에 대해 완전생산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을 『품목별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개별 협정의 특징상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표 43> ‘갑각류’ 및 ‘연체류’ 품목분류체계

HS	품 명
0306	갑각류[<u>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u>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u>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u>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지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	연체동물[<u>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u>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u>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u>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반면, 곡물의 경우에는 탈피(탈각)가 물품의 성상 변화는 물론 현행 품목분류 체계상 세번의 변경 등 본질적인 변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데,²⁵⁾ 탈피(탈각) 공정은 한-미 FTA를 제외한 전체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어 해당 공정을 통해 『품목별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탈각을 제외하고 탈피의 경우에는 동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공정인데 이는 동

24) 현행 품목분류 체계상 갑각류(HS 제0306호) 및 연체류(HS 제0307호)는 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된다.

25) 각종 견과류 등이 분류되는 HS 제8류에서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껍질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6단위 기준에서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물로부터 가죽을 벗겨 내는 공정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피공정을 통해 획득된 원피 등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되어지는 ‘동물’에 대해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해당 공정의 수행 이전에 원피를 획득하기 위해 투입되는 동물이 살아 있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최소한 사육되고 살아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당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탈피공정을 통해 얻어진 동물의 가죽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한편, 박편은 물품을 얇게 썰거나 조각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경우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탈각(탈피)과는 달리 물품의 성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본질적인 특성에는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탈피나 박편을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협정과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미 FTA의 경우에도 해당 공정이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탈피(탈각)]



[박편]

탈곡은 수확된 농산물로부터 곡물을 추출하는 공정이며 도정은 곡물의 껍질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벗기는 작업으로 곡물 등 농산물에 적용되는 불인정 공정이다.

해당 공정들의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모든 협정에서 식물성 생산품의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되지 않은 비원산지물품을 탈곡이나 도정하여 얻은 물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탈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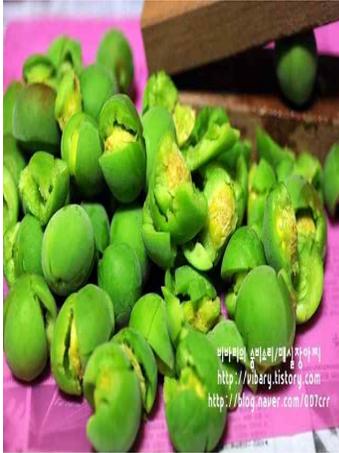


[도정]

씨 제거는 식물성 생산품인 농산물에 적용되는 불인정 공정이며 빼 제거는 동물성 생산품인 축산물에 적용되는 불인정 공정으로, 씨 제거의 경우 품목분류 체계상 세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나 빼 제거는 품목에 따라 세번의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먼저, 씨 제거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의 탈곡이나 도정과 마찬가지로 원재료가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비원산지물품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씨를 제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동물성 생산품에 적용되는 빼 제거는 한-EU FTA와 한-미 FTA를 제외한 대부분의 협정이 원재료인 산동물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비원산지 육류를 체약당사국 내에서 빼를 제거하는 공정이 수행되었다는 이유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²⁶⁾



[씨 제거]



[뼈 제거]



표백은 협정에 따라 농산물이나 섬유 및 의류 등 다양한 물품에 불인정 공정으로 적용되는데, 특성상 물품의 정상변화에는 영향을 미치나 본질적인 특성에는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표백을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협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정이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²⁷⁾

압착의 경우에는 물품에 따라 세번의 변경 등 본질적인 특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체약당사국 내에서 비원산지물품에 대해 단순히 압착공정만이 수행된 결과로 세번의 변경이나 부가가치의 증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26) 동물성 생산품에 대해 출생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한-EU FTA의 경우 뼈의 제거가 불인정공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사육된 산 동물이 도축되어 얻어진 육류를 뼈 제거 공정을 통해 상품화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다른 부가 요건 없이 도축(도살)된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한-미 FTA의 경우에도 살아 있는 상태로 체약당사국 내에서 도축되어 얻어진 육류에서 뼈를 제거하는 공정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진행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게 된다.

27) 표백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공정이거나 주로 원사를 포함하여 섬유나 의류 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인데, 표백 공정의 수행여부는 일반적으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6단위 수준 이상의 세번에는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고 국가별로 정하고 있는 6단위 이하의 코드 수준에서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세번변경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HS 제44류에 분류되는 목재와 그 제품의 경우 품목분류 체계상 두께에 따라 6단위 수준에서의 세변이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물품의 경우 압착을 통해 물품의 두께가 변화하여 원재료와 다른 세변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압착공정이 수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백]



[압착]

도축(도살)은 동물성 생산품에 적용되는 불인정 공정으로 한-미 FTA를 제외하고는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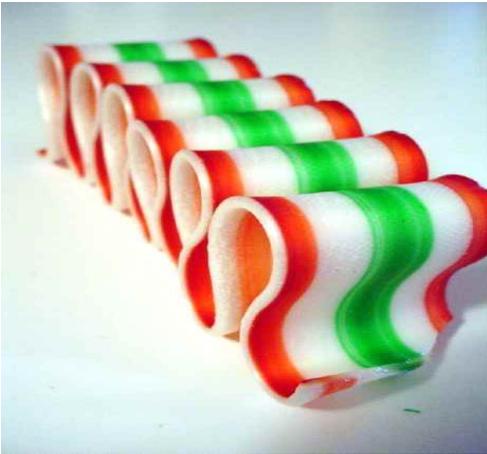


[도축(도살)]

특징적인 것은 위의 뼈 제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성 생산품에 대해 사용되는 동물의 출생요건을 따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EU FTA를 제외하고 도축(도살)을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협정들이 원재료인 산동물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비원산지동물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도축(도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생산된 동물성 생산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당류의 착색은 농산가공품에서 주로 적용되는데 그 의미는 비원산지 농산가공품에 당류를 도포하거나 색상을 입하는 공정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각설탕 작업은 당류를 특정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비원산지 설탕 등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특정 크기나 형상으로 재가공하여 각설탕으로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충분가공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당류 착색]



[각설탕 작업]

6. 조립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부품 단위에서 완제품 단위로 변경되는 조립은 물품의 성상 변화는 물론 본질적인 특성의 변화까지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협정에서는 단순한 조립의 결과로 생산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의 변화와 관계없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단순한’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가공에서와 같이 별도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공정의 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술·기계·장비·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에 해당하는 공정들이 수행되는 경우 단순 조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44> 협정별 ‘조립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단순 조립	○	○	○	○	○	○	○		○	○	○
세트구성	○	○	○	○	○	○	○		○	○	○
매칭	○	○	○	○	○	○			○	○	
(섬유류)단순결합				○	○						
봉제				○	○						

주 : 각 협정별 표기는 다음과 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또한 세트구성을 포함하여 매칭(조합)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품들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만드는 행위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로 세트구성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미 FTA의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여타의 협정들과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진다.

아울러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에서는 섬유류의 단순결합이나 봉제가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고 제시함으로써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물 자체가 원산지상품이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표 45> 협정별 ‘조립’ 관련 규정

구 분	규 정
FCL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the simple assembly of goods, formation of sets)
FSG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simple assembly of parts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
	단순한 물품의 세트 구성(simpl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FEF	채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 “단순한”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FAS	채질,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matching)
	다른 종류간이건 아니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 “단순한 혼합” 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은 분자간 결합의 파괴 또는 새로운 분자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체하기(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단순 결합 공정, 라벨링, 다림질 또는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또는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ing, ironing or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p> <p>종횡 제단 및 끝단 봉제, 특정 상업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cutting to length or width and hemming, stitching or overlocking of fabrics which are readily identifiable as being intended for a particular commercial use)</p>
FIN	<p>체질 · 선별 · 구분 · 분류 · 등급화 또는 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 매칭(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p> <p>단순 결합공정 · 라벨링 · 프레싱 · 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 ·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ling,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p> <p>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을 부품으로 해체(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 “단순한”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FEU	<p>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p> <p>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주해5)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로 하지도 아니</p>

	<p>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Explanatory Notes 5)</p> <p>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p>
F P E	<p>다른 종류인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p> <hr/> <p>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p>
F U S	-
F T R	<p>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p> <hr/> <p>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p> <p>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 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p>

	<p>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p>
F C O	<p>완전한 상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simple assembly of parts of goods to constitute a complete good or disassembly of goods into parts)</p> <p>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말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다음은 화학반응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p> <p>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p>
ATPA	<p>먼지제거, 체질 또는 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물품의 세트 구성 포함), 세척, 도장, 절단 등 단순작업(s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painting, cutting up;)</p> <p>탁송품의 포장변경, 분해, 조립(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consignments)</p> <p>완성품의 구성을 위한 부품의 단순조립(Simple assembly of parts of products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p>

2) 공정해설

조립은 비원산지물품을 계약당사국 내에서 특정한 케이스 등에 배치 및 연결함으로써 단일한 용도와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공정으로써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조립과정에서 가공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기구·장치·도구 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조립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을 통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립과정에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기구·장치·도구 등이 활용된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조립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부분품 등의 가공정도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투입되는 부분품 등이 이미 완제품의 규격 및 모델에 특화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공이 완료되어 있는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품목분류의 체계상 세번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립]

세트구성을 포함함 매칭(조합)은 개별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물품들을 하나의 조합으로 만드는 행위로 비원산지물품을 하나의 조합으로 만드는 행위가 원산지상

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세트물품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세트의 구성만으로 FTA특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반해, 나머지 협정들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 이하까지는 비원산지물품이 세트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트 자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²⁸⁾

다만, 이들 협정들의 경우에도 세트를 구성하는 공정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비율 이외의 모든 물품은 원산지상품으로 구성되어야만 완성품 전체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트 구성]

[봉제]

섬유류의 단순결합이나 봉제는 직물을 특정 형상이나 기능을 지닌 의류로 만들기 위해 모양에 따라 재단된 직물을 제 위치에 고정되도록 박음질 등을 통해 이어 붙이는 공정이다.

28) 협정별 세트물품에 대한 특례

구분	EFTA, EU, 터키	미국		페루	콜롬비아
		일반품목	섬유류		
인정여부	○	○	○	○	○
허용한도	EXW가격의 15% 이하	조정가격의 15% 이하	관세가치의 10% 이하	FOB가격의 15% 이하	조정가격의 15% 이하

이들 공정을 통해 직물이 의류로 변경되게 되어 본질적인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나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비원산지직물만을 사용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만을 거쳐 생산된 의류에 대해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7. 검사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시험이나 측정 및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한-페루 FTA와 한-미 FTA, 한-콜롬비아 FTA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제외하고 전체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험이나 측정을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협정들 중에서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U FTA 및 한-터키 FTA는 시험이나 측정 자체를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 등 3개 협정에서는 단순한 시험이나 측정은 불인정 공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순한’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별도의 주석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이나 측정은 특성상 해당 공정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품목별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없어 ‘단순한’의 정도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표 46> 협정별 ‘검사 관련’ 불인정 공정 포함 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시험(실험)이나 측정	○	○	○	○	○	○			○		
품질검사		○									

주 : 각 협정별 표기는 다음과 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따라서 대부분의 협정에서 ‘단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공정의 수행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구·도구·장치 또는 장비 등이 공정의 수행과정에 투입되면 ‘단순하지 않은 공정’으로 본다 되어 있는데, 다른 공정들과 달리 시험이나 측정의 경우 공정의 수행과정에 특별히 제작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구·도구·장치 또는 장비 등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는 충분한 가공이 발생하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표 47> 협정별 '검사' 관련 규정

구 분	규 정
FCL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testing or calibrations, division of bulk shipments, assemble into packages, adherent of marks, labels or distinctive signs on the products or packing; packing, unpacking or repackaging)
FSG	시험 또는 측정(testing or calibrations) 품질 검사 또는 분쇄(quality check or grinding)
FEF	단순한* 시험 및 측정(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 * “단순한”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FAS	단순한 실험 또는 측정(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
FIN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 ** “단순한” 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FEU	시험 또는 측정(testing or calibrations)
FPE	-
FUS	-
FTR	시험 또는 측정(testing or calibrations)
FCO	-
ATPA	-

2) 공정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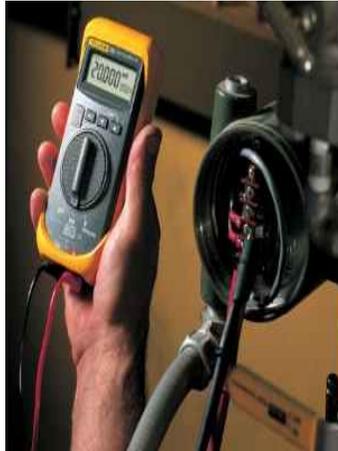
시험이나 측정 및 품질검사는 물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이다.

공정의 수행범위는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검사부터 성능이나 기능의 측정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행될 수 있으나, 공정의 특성상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협정의 경우에도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 물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시험]



[측정]



[품질검사]

8. 혼합 등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혼합과 관련된 불인정 공정은 ‘(단순)혼합과 희석’ 등이 있는데 ‘(단순)혼합’에 대해서는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혼합’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협정에서 ‘혼합’을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기구·장치·도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혼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혼합’의 결과 화학적 반응²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국 내에서 물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혼합’만이 수행된 경우 해당 공정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의 결과 생성된 물품의 특성이 투입된 원재료와 다른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표 48> 협정별 ‘혼합 등 관련’ 불인정공정 포함 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단순)혼합	○	○	○	○	○	○	○	○	○	○	○
희석	○	○			○			○			

주 : 각 협정별 표기는 다음과 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또한 ‘혼합’의 대상이 되는 원료에 대해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혼합’되는 물품의 종류

29) 단순 혼합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협정들은 ‘화학적 반응’을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간 결합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분자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 내에서 원자의 새로운 공간배열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가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물품을 ‘혼합’ 하여 새로운 물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킬 정도의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혼합’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한-EU FTA, 한-터키 FTA 및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다른 협정과 달리 ‘모든 재료와 당류(설탕)와의 혼합’이 불인정 공정으로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음식료품의 경우 당류(설탕)의 첨가만으로도 2단위 또는 4단위 수준에서의 세번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비원산지 음식료품에 당류(설탕)를 혼합하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은 충분한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혼합 및 배합’에 대해 불인정 공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요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혼합 및 배합’이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혼합 및 배합’의 결과 생성된 물품이 투입된 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이나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 FTA에서 ‘혼합 및 배합’공정이 불인정 공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혼합 및 배합’을 수행하는 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혼합(배합)비율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물품의 특성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하고 그 사용목적에 부합되어야만 충분한 가공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이다.

‘희석’의 경우에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한-미 FTA 등 4개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희석’에 대해 물이나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해 ‘희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인도 CEPA와 한-미 FTA는 여기에 더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물이나 다른 물질로 ‘희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49> 협정별 '혼합 등' 관련 규정

구 분	규 정
FCL	<p>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cleaning, washing, sieving, shaking, selection, classification or grading, picking out, mixing, cutting)</p> <p>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dilution with water or with any other aqueous, ionised or salted solution)</p>
FSG	<p>단순 혼합(simple mixing)</p> <p>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 용액에 의한 희석(dilution with water or with any other aqueous, ionized or salted solution)</p>
FEF	<p>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p> <p>** “단순히 혼합”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은 분자간 결합의 파괴 또는 새로운 분자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p>
FAS	<p>다른 종류간이건 아니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p> <p>** “단순한 혼합” 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은 분자간 결합의 파괴 또는 새로운 분자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n activity which does not</p>

	<p>need special skills,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p>
FIN	<p>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 “단순한 혼합” 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 반응이란 생화학 공정을 포함, 분자 내부 결합을 깨뜨려서 새로운 내부 결합을 형성하거나 분자내의 원자의 공간의 배열을 변경시킴으로써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들어 내는 공정을 의미한다. (“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 toms in a molecule)</p> <hr/> <p>상품의 특성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 희석(mere 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 that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p>
FEU	<p>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 (주해5)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 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p>

<p>F P E</p>	<p>다른 종류인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단순한 혼합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하나, 화학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simple mixing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but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 and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 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 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p>
<p>F U S</p>	<p>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for Chapter 1 to 40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solely by reason of mere 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 that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p> <p>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보지 아니한다.(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 for the reaction for the purpose of this defini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dissolving in water or other solvents)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p>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A good of Chapters 30, 31, or 33 through 38, except for</p>

	<p>heading 39.08,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proportionally controlled mixing or blending (including dispersing) of materials to conform to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resulting in the production of a goo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relevant to the purposes or uses of the good and are different from the input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p> <p>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계획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혼합 또는 융합(분산을 포함한다)의 결과로 물품의 목적 또는 용도에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제품이 제조되어 원료 물질과 다르고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 로 간주한다.(A good of Chapters 39 and 40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proportionally controlled mixing or blending (including dispersing) of materials to conform to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resulting in the production of a goo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relevant to the purposes or uses of the good and are different from the input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p>
F T R	<p>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p> <p>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 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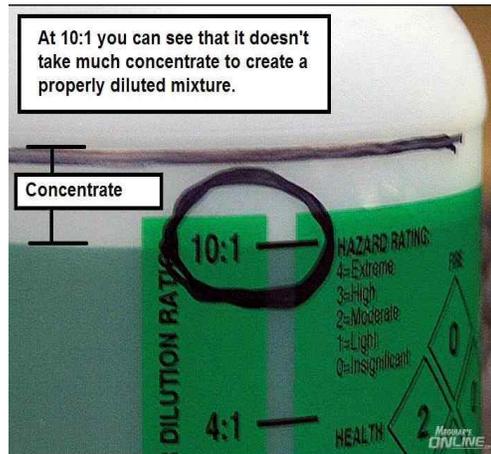
F C O	<p>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사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 operations to color or flavo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p> <p>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말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다음은 화학반응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p> <p>가. 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dissolving in water or other solvents)</p> <p>나. 용매물을 포함한 용제의 제거, 또는(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p> <p>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p>
ATPA	단순 혼합(Simple mixing)

2) 공정해설

‘혼합’ 과 ‘희석’ 은 둘 이상의 독립된 물품이 한데 섞인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혼합’ 의 경우 동일한 물질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희석’ 은 ‘물 또는 다른 용해제를 가하여 묽게 함’ 으로 되어 있는 사전적 의미와 같이 서로 다른 물질 간에만 발생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혼합]



[희석]

1. 포장 관련

1) 포장 또는 재포장

가. 물품개요

계약당사국 내에서 비원산지물품을 수입하여 ‘포장(Packaging)’ 공정을 수행하여 완제품을 만든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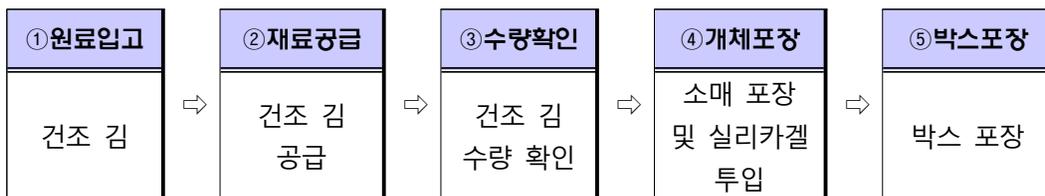
□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1212.21.1010	마른 김	-	-	30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1212.21.1010	건조한 것	마른 김	-	5매	-	미상
2	2811.22.9010	이산화규소	실리카겔	-	1포	-	KR
3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포장지	-	20매	-	KR
4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	KR

□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 산 지 결 정 기 준
칠 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 세 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 도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 U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 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 키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물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물품들은 포장 또는 포장의 변경만으로는 『품목별기준』의 충족이 불가능해 동 사례와 마찬가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물품에 따라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물품이 별도의 세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품목별기준』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대용량 포장 상태의 것을 소매용에 적합한 정도로 포장하거나 재포장만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에 적용된 제조공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원산지상품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적입(병, 상자 등)

가. 물품개요

체약당사국 내에서 비원산지물품을 수입하여 ‘병에 담는(Placing in Bottles) 적입’ 공정을 수행하여 완제품을 만든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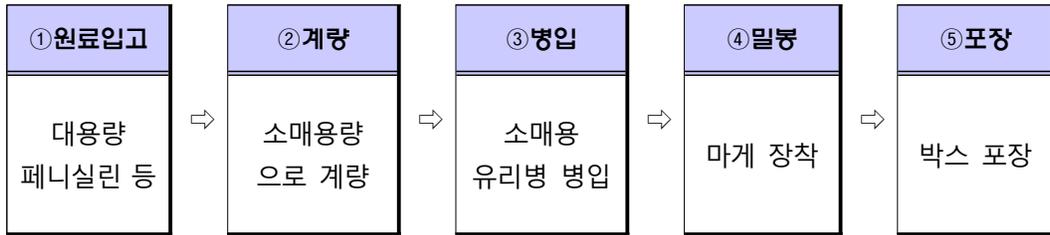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3004.10.1000	소매용 페니실린	150	160	300g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3003.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	페니실린	-	500cc	100	미상
2	7010.90.0000	유리로 만든 병	유리병	-	1개	20	KR
3	3923.50.0000	플라스틱 마개	마개	-	1개	2	KR
4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3	KR

□ 제조과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콜롬비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CTC	불충족	불충족	
	MC			
한-아세안	CTC	불충족	불충족	
	RVC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CTC	불충족
			RVC	불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한-칠레) 해당** : 검토 물품인 소매용 페니실린(HS 제3004호)에 적용되는 『품목별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투입된 원재료들이 완제품과 4단위 세번이 달라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지만, 한-칠레 FTA 제4.13조 제1항 다호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에 병에 넣은 공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기타 협정) 고려 불필요** : 한-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들은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이 선택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한-EFTA·한-아세안·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비원산지 페니실린(HS 제3003호)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져 협정별로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 수준을 만족하게 되어 『품목별기준』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인 소매용 페니실린(HS 제3004호)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보존 관련

1) 운송 및 저장 목적 보존 작업(염수장 등)

가. 물품개요

신선 또는 냉장 상태의 비원산지 마늘을 수입하여 운송이나 저장목적으로 ‘염수장 (Keeping in Brine)’ 공정을 거쳐 보존처리한 마늘을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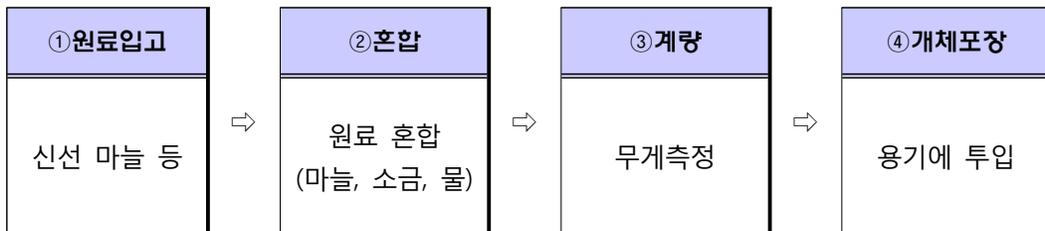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0711.90.1000	염수장한 마늘	-	-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703.2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마늘	-	100kg	-	미상
2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용기	철제통	-	1개	-	KR
3	2501.00.1020	소금	천일염	-	5kg	-	KR
4	2201.10.0000	물	물	-	250 l	-	KR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5호, 제1106호 및 제2001호부터 제2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FTA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세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도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U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루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701호 내지 제0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키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해당 물품의 경우 모든 협정에서『품목별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면『품목별기준』은 충족하지만 운송 및 저장목적의 보존 작업이 불인정 공정으로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미 FTA를 제외하고는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게 됨으로 여전히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건조

가. 물품개요

신선 상태의 비원산지 양파를 수입하여 ‘건조(Drying)’ 공정을 거쳐 건조한 양파를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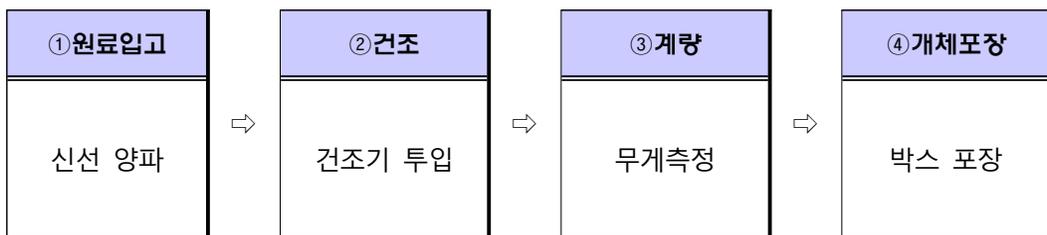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0712.20.0000	건조한 양파	-	-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703.1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양파	-	5kg	-	미상
2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	KR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5호, 제1106호 및 제2001호부터 제2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FTA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세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도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U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루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701호 내지 제0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키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해당 물품의 경우 모든 협정에서『품목별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면『품목별기준』은 충족하지만 단순히 건조만 수행된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에 적용된 제조공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원산지상품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냉동

가. 물품개요

신선 또는 냉장 상태의 비원산지 쇠갈비를 수입하여 ‘냉동(Freezing)’ 공정을 거쳐 냉동 쇠갈비를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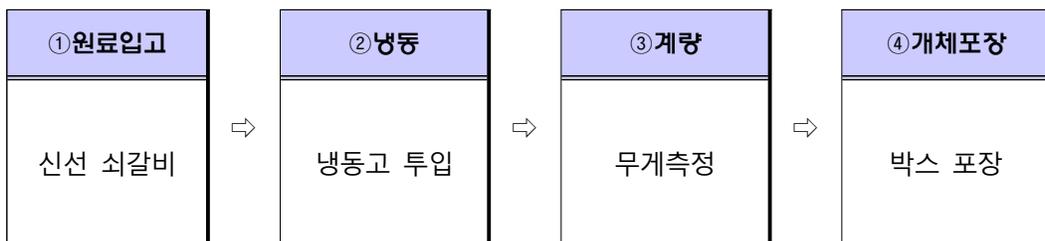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0202.20.1000	냉동 쇠갈비	-	-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201.2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쇠갈비	-	5kg	-	미상
2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	KR

제조과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FTA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세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도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U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의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제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키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국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해당 물품의 경우 비원산지 소(HS 제0102호)를 수입하여 도축을 통해 얻은 갈비를 냉동한 경우를 가정해 보면 냉동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는 여전히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한-미 FTA의 경우에는 『품목별기준』이 충족되고 냉동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세정 관련

1) 세탁(드라이 크리닝 포함)

가. 물품개요

완성된 상태의 세탁되지 않은 면사를 수입하여 청결 목적으로 ‘세탁(Cleaning)’ 공정을 거쳐 깨끗한 상태의 면사를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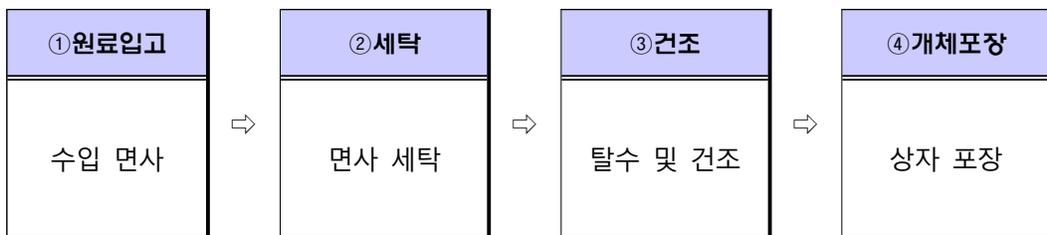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kg)	비고
5205.11.1000	면사	-	-	10kg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5205.11.1000	표백하지 않은 면사	면사	-	10kg	-	미상
2	2201.10.0000	물	세척수	-	5 l	-	KR
3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	KR

제조과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 산 지 결 정 기 준
칠 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및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 세 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 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 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 원료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제5205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페 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201호 내지 제5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소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소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5호, 또는 제5501호 내지 제5507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터 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 원료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제5205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CTC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RVC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2) 세척(먼지제거 포함)

가. 물품개요

신선 상태의 비원산지 양파를 수입하여 ‘건조(Drying)’ 공정을 거쳐 건조한 양파를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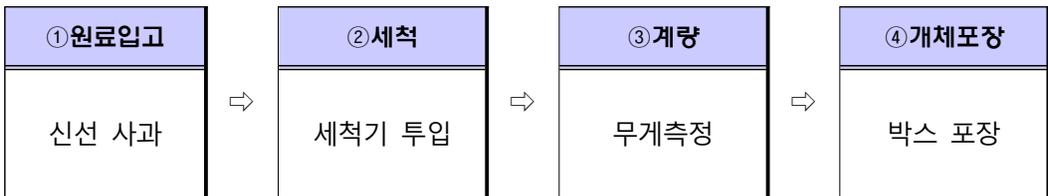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0808.10.0000	사과	-	-	-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803.10.0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사과	-	5kg	-	미상
2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	KR

□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 산 지 결 정 기 준
칠 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제8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 세 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 도	제8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 U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일 및 견과류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 루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801호 내지 제08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일 및 견과류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콜롬비아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4. 선별 관련

1) 채질

가. 물품개요

거친 가루와 고운 가루가 혼합되어 있는 비원산지 옥수수 가루를 ‘채질(Sifting)’ 공정을 거쳐 고운 가루를 선별하여 상품화 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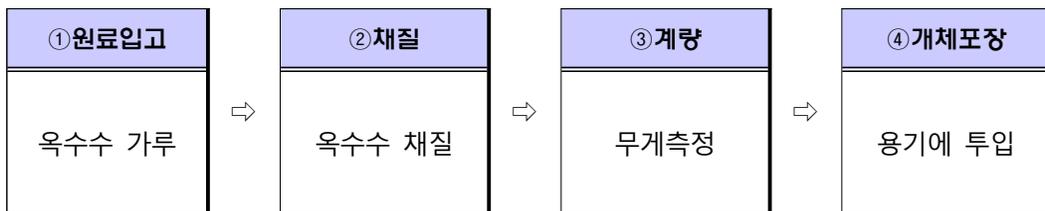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1102.20.0000	옥수수 가루	-	-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1103.13.0000	곡물의 거친 가루	옥수수	-	100kg	-	미상

제조공정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아 세 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 도	제7류, 제8류 및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E U	제7류, 제8류 및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 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102호 내지 제1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제7류, 제8류 및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또한 ‘채질(sifting)’은 검토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세번의 변경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개별 협정에서 검토 물품에 대한 『품목별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면 체질을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한-싱가포르·한-페루·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 분류 또는 등급화(선별 포함)

가. 물품개요

의류 및 이불 등의 제조에 충전재로 사용되는 비원산지 새(오리)의 깃털을 ‘분류 또는 등급화(Classification or Grading)’ 공정을 거쳐 크기 및 무게에 따라 선별하여 상품화 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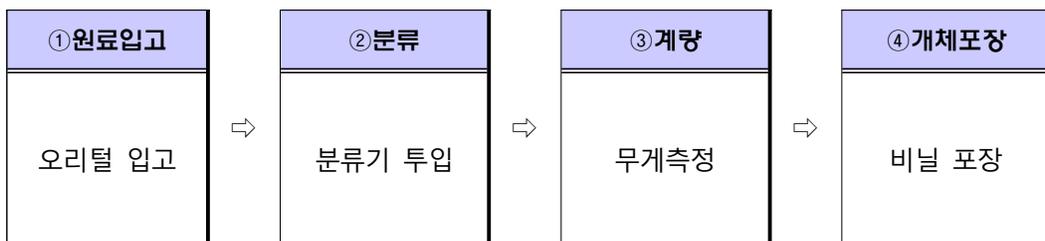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0505.10.0000	충전재용 깃털	-	-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505.10.0000	충전재용 깃털	오리털	-	500g	-	미상
2	4819.10.0000	상자류(폴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	KR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 산 지 결 정 기 준
칠 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와 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제1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 세 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 도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 U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 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변경된 것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501호 내지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5. 가공 관련

1) 절단(축산물)

가. 물품개요

냉동 상태의 비원산지 쇠고기를 수입하여 ‘절단(Cutting)’ 공정을 거쳐 냉동 쇠갈비를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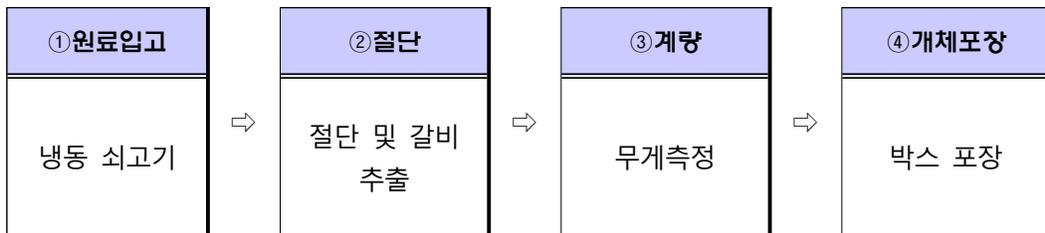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0202.20.1000	냉동 쇠갈비	-	-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202.10.0000	도체와 이분도체	쇠고기	-	50kg	-	미상
2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	KR

제조공정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 세 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 도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 U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 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의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제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해당 물품의 경우 비원산지 소(HS 제0102호)를 수입하여 도축을 통해 얻은 쇠고기를 절

단한 경우를 가정해 보면 절단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는 여전히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한-미 FTA의 경우에는 『품목별기준』이 충족되고 절단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절단(금속제품)

가. 물품개요

냉동 상태의 비원산지 쇠고기를 수입하여 ‘절단(Cutting)’ 공정을 거쳐 냉동 쇠갈비를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ton)	비고
7212.10.1000	평판압연(폭 600mm 미만)	100,000	110,000	10ton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7210.11.0000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철판	-	10ton	70,000	미상
2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	롤	-	1개	5,000	KR
3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비닐	-	50m	1,000	KR

□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 산 지 결 정 기 준
칠 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 세 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 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 U	제7206호 또는 제7207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 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 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8호 내지 제7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제7206호 또는 제7207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 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충 족	한-페루	충 족	
한-EFTA	충 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CTC	충 족	한-터키	충 족
	RVC			
한-인도	충 족	한-콜롬비아	충 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한-칠레·한-싱가포르) 불분명** : 이들 3개 협정의 경우 폭이 600mm 이상인 평판압연강판을 절단을 통해 폭이 600mm 이하의 평판압연강판으로 가공한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별기준』을 충족하나, 개별 협정의 불인정 공정 유형에 ‘단순 절단’이 포함되어 있고 ‘단순한(simple)’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한-EU FTA 등과 달리 명확한 판단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국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한-아세안·한-인도) 불분명** : 아세안이나 인도와의 협정의 경우에도 폭이 600mm 이상인 평판압연강판을 절단을 통해 폭이 600mm 이하의 평판압연강판으로 가공한 경우 『품목별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는데, 이들 2개 협정은 ‘단순한(simple)’에 대한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칠레 FTA나 한-싱가포르 FTA와는 달리 그 범위를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절단’에 대해서는 해당 정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절단을 통해 제작된 600mm 이하의 평판압연강판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국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한-EFTA·한-EU·한-터키·한-콜롬비아) 비해당** : 유럽권 3개 협정과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불충분한 공정으로 보지 않는 ‘단순한(simple)’의 범위를 별도의 주해 또는 각주의 형태로 규정하여 불인정 공정 중 ‘단순’이 부가되어 있는 모든 공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검토 물품과 같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한 절단공정의 경우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기준』이 충족되는 해당 사례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한-페루·한-미) 비해당** : 한-페루 FTA와 한-미 FTA에서는 ‘절단’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검토 물품이 ‘절단’을 통해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여 『품목별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분해 또는 해체

가. 물품개요

톱 및 망치 등 4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비원산지 소매용 공구세트를 수입하여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체(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하는 과정을 거쳐 개별 공구로 상품화하는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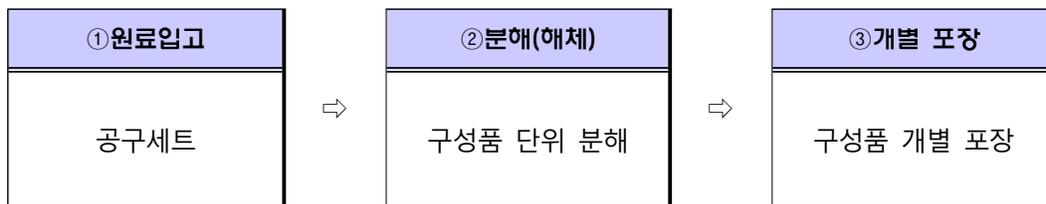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8202.10.1000	수동식 톱	3,000	3,200	-	-
8203.20.1000	플라이어	5,000	5,200	-	-
8204.12.0000	수동식 스패너	5,000	5,200	-	-
8205.20.0000	망치	5,000	5,200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8206.00.0000	소매용 공구세트	공구세트	-	1set	20,000	미상

제조과정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4개 단위물품 공통)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 세 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 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 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 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1호 내지 제8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콜롬비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CTC 충 족 RVC 불 충족
한-EFTA	충 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CTC 충 족 RVC 불 충족	한-터키	충 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CTC 충 족 RVC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한-EFTA · 한-아세안 · 한-EU · 한-페루 · 한-터키 · 한-콜롬비아) 해당 : 이들 6개 협정에서는 비원산지 소매용 공구세트를 수입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체(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하는 과정을

거쳐 개별 공구를 상품화하는 경우 해당 물품들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품목별기준』이 충족되나, 개별 협정에서 해당 공정을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 (기타 협정) 고려 불필요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인도 · 한-미 FTA 등의 4개 협정은 해당 물품들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

4) 분쇄(제분 포함)

가. 물품개요

비원산지 밀을 수입하여 제분과 같은 ‘분쇄(Grinding)’ 공정을 거쳐 생산된 밀가루의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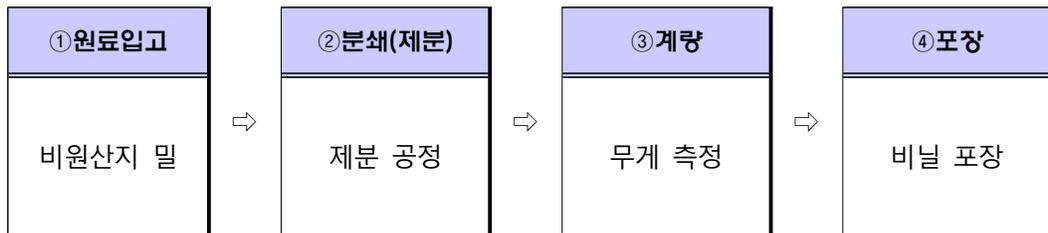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kg)	비고
1101.00.1000	밀가루	6,700	7,000	10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1001.99.2090	제분용 밀	밀	-	10kg	5,000	미상
2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비닐	-	1m	500	미상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 산 지 결 정 기 준
칠 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아 세 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인 도	제7류, 제8류 및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E U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 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충 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충 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한-아세안 · 한-페루 · 한-미) 비해당 : 이들 3개 협정에서는 비원산지 제분용 밀을 수입하여 계약당사국 내에서 제분과 같은 ‘분쇄(Grinding)’ 공정을 거쳐 밀가루를 생산한 경우 해당 물품은 『품목별기준』이 충족되며, 개별 협정에서 제분과 같은 ‘분쇄(Grinding)’ 공정을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기타 협정) 고려 불필요 : 한-아세안 · 한-페루 · 한-미 FTA를 제외한 7개 협정은 해당 물품들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

5) 표시나 상표 부착(장식품 부착 포함)

가. 물품개요

완성된 형태의 비원산지 셔츠 수입하여 제품의 로고 등 상표(장식품)를 부착하는 공정을 통해 판매에 적합한 셔츠를 제작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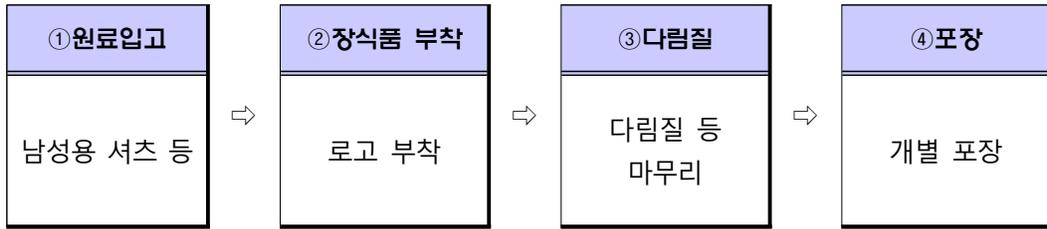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6205.20.0000	남성용 셔츠	5,000	5,200	200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6205.20.0000	남성용 셔츠	셔츠	-	1벌	2,000	미상
2	6217.10.0000	부속품	로고	-	1개	500	KR
3	5401.10.1000	나일론 재봉사	재봉사	-	1m	100	KR
4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비닐	-	1m	100	미상

□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p>완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이 부의 주석 7 참조</p>
페 루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p>
미 국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09호까지, 제5511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p>
터 키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이 부의 주석 7 참조
콜롬비아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다림질 또는 압착(Ironing or Pressing)’ 이나 한-아세안 FTA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자수상품의 부분 자수’ 의 경우에도 해당 공정의 수행결과 만들어지는 제품이 원재료와 세번의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6) 탈피(탈각 포함)

가. 물품개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비원산지 아몬드를 수입하여 ‘탈각(Unshelling)’ 공정을 거쳐 껍질을 벗긴 아몬드를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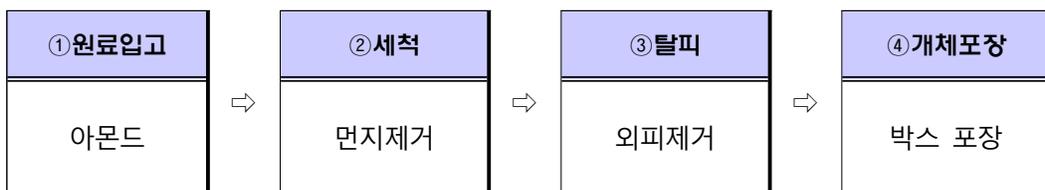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kg)	비고
0802.12.0000	아몬드	-	-	50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아몬드	-	50kg	-	미상
2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	KR

제조과정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세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도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U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일 및 견과류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801호 내지 제08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일 및 견과류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콜롬비아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7) 뼈 제거(축산물)

가. 물품개요

냉장 상태의 비원산지 양고기를 수입하여 ‘뼈 제거(Removal of Bones)’ 공정을 거쳐 뼈 없는 양고기를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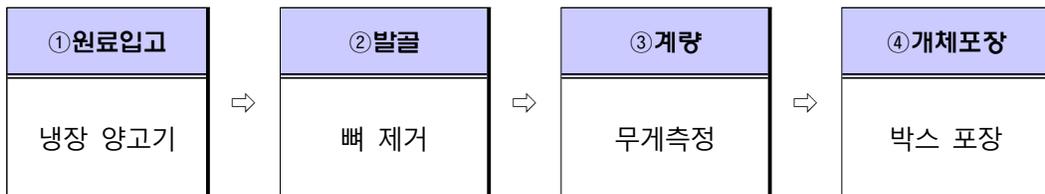
□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kg)	비고
0204.23.0000	양고기	-	-	35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204.21.0000	도체와 이분도체	양고기	-	50kg	-	미상
2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	KR

□ 제조과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FTA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세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도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 U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 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의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제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해당 물품의 경우 비원산지 양(HS 제0104호)을 수입하여 도축을 통해 얻은 양고기를 ‘뼈 제거(Removal of Bones)’ 공정을 거쳐 뼈 없는 양고기를 생산한 경우를 가정해 보면 ‘뼈 제거(Removal of Bones)’ 공정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는 여전히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한-미 FTA의 경우에는 『품목별기준』이 충족되고 ‘뼈 제거(Removal of Bones)’ 공정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8) 압착(농산물)

가. 물품개요

비원산지 귀리를 수입하여 가루상태로 만든 후 ‘압착(Squeezing)’ 공정을 거쳐 압착된 귀리 덩어리를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kg)	비고
1104.12.0000	압착 귀리	11,500	12,000	50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1004.90.0000	종자용이 아닌 귀리	귀리	-	10kg	10,000	미상
2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500	KR

□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제7류, 제8류 및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EU	제7류, 제8류 및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102호 내지 제1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키	제7류, 제8류 및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충족	
한-아세안	CTC	충족	한-터키	불 충족
	RVC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한-아세안·한-미) 비해당 : 이들 2개 협정에서는 비원산지 귀리를 수입하여 계약당사국 내에서 제분과 같은 ‘분쇄(Grinding)’ 공정을 거친 후 이를 ‘압착(Squeezing)’ 하여 압착된 귀리 덩어리를 생산한 경우 해당 물품은 『품목별기준』이 충족되며, 개별 협정에서 ‘압착(Squeezing)’ 공정을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비원산지 귀리

가루(HS 제1103호)를 수입 후 ‘압착(Squeezing)’ 하여 압착된 귀리 덩어리를 생산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품목별기준』이 충족될 수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기타 협정) 고려 불필요 : 이들 8개 협정은 해당 물품들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

9) 도살(도축)

가. 물품개요

비원산지 돼지를 수입 후 계약당사국 내에서 일정기간 사육한 후 ‘도살(Slaughter)’ 하여 얻어진 삼겹살의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kg)	비고
0203.19.1000	삼겹살	30,000	32,000	5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103.92.0000	50kg 이상의 돼지	돼지	-	60kg	100,000	미상
2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3	KR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 산 지 결 정 기 준
칠 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 세 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 도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 U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 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의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제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한-EU) 비해당 : 검토 물품인 삼겹살(HS 제0203호)에 적용되는 『품목별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투입된 원재료들이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만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한-EU FTA는 동물성 생산품에

대해 계약당사국 내에서 사육되고 도축되어 획득된 경우 완전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검토품의 경우 돼지는 비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국 내에서 사육되었다는 것과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도축(Slaughter)’ 되었다면 비록 ‘도축(Slaughter)’ 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사육 과정 없이 수입된 비원산지 돼지를 단순히 ‘도축(Slaughter)’ 만 하여 삼겹살을 획득한 경우에는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불인정 공정에도 해당되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 **(한-미) 비해당** : 검토품인 삼겹살(HS 제0203호)에 적용되는 『품목별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살아 있는 돼지를 도축하여 얻어진 경우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한-미 FTA는 동물성 생산품에 대해 ‘도축(Slaughter)’ 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품과 같이 계약당사국 내에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도축되어 획득된 삼겹살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 **(기타 협정) 고려 불필요** : 한-EU FTA와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들은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6. 조립 관련

1) 단순 조립

가. 물품개요

특정 기계의 제조에 특화되게 모델 및 규격이 정해진 비원산지 반제품(부분품 포함)을 수입하여 ‘조립(Assembly)’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8515.80.3000	용착기	100,000	110,000	-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9033.00.0000	부분품과 부속품	Middle Base Module	-	1EA	14,000	미상
2	9033.00.0000	부분품과 부속품	Wind Cover Module	-	1EA	10,000	미상
3	9033.00.0000	부분품과 부속품	Camera Module	-	1EA	15,000	미상
4	9033.00.0000	부분품과 부속품	Heater Module	-	1EA	10,000	미상
5	9033.00.0000	부분품과 부속품	Top Base Module	-	1EA	10,000	미상
6	4819.10.0000	상자류	종이박스	-	1매	1,000	KR

□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 산 지 결 정 기 준
칠 레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 F T A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 세 안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 도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p>
E U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 루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미 국	<p>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5.11호 내지 제85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p>
터 키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콜롬비아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CTC	충	족	한-EU	CTC	충	족	
	RVC	불	충		족	MC	불	충
한-싱가포르	CTC	충	족	한-페루	CTC	충	족	
	RVC	불	충		족	RVC	불	충
한-EFTA	CTC	충	족	한-미	충			족
	MC	불	충		족			
한-아세안	CTC	충	족	한-터키	CTC	충	족	
	RVC	불	충		족	MC	불	충
한-인도	불			한-콜롬비아	CTC	충	족	
					RVC	불	충	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한-인도) 고려 불필요** : 한-인도 CEPA의 경우 ‘CTSH+RVC 35’의 결합기준이 적용되어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한-미) 비해당** : 한-미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을 『일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협정들과 달리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제시하고 있는데, 검토 물품과 같이 ‘단순 조립’된 경우에 대해 불인정 공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품목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가능하다.
- **(기타 협정) 해당** :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정 공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한-인도 CEPA와 ‘단순 조립’에 대한 불인정 공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미 F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들은 모두 ‘단순 조립’만 수행된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협정에서 검토 물품과 같이 ‘부품을 단순 조립(Simple assembly of parts)’을 별도로 제시하여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칠레 FTA에서는 ‘상품의 단순 조립(Simple assembly of goods)’로 표현하고 있어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의 판단에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2) 세트구성(매칭 포함)

가. 물품개요

비원산지 톱 및 망치 등 4개의 수동 공구를 하나의 박스(포장용기)에 담아 소매용 공구세트로 구성하여 상품화하는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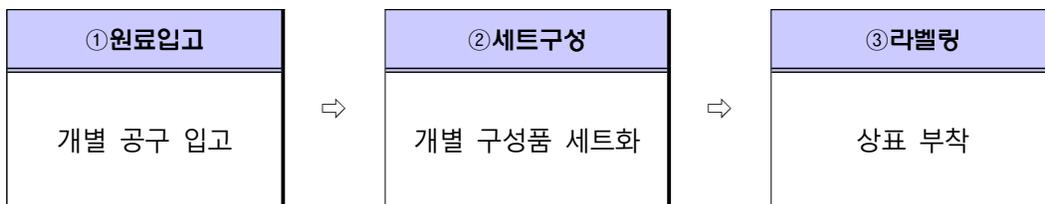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kg)	비고
8206.00.0000	소매용 공구세트	19,000	20,000	3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8202.10.1000	수동식 톱	톱	-	1EA	4,000	미상
2	8203.20.1000	플라이어	플라이어		1EA	5,000	미상
3	8204.12.0000	수동식 스패너	스패너		1EA	5,000	미상
4	8205.20.0000	망치	망치		1EA	3,000	미상
5	8206.00.0000	소매용 포장용기	통		1EA	1,000	KR

제조과정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 세 안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 도	<p>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p>
E U	<p>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비원산지 공구의 총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p>
페 루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미 국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1호 내지 제8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p>
터 키	<p>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비원산지 공구의 총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p>
콜롬비아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CTC	충 족
				RVC	불 충족
한-EFTA	CTC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MC	불 충족			
한-아세안	CTC	충 족	한-터키	불 충족	
	RVC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CTC	충 족
				RVC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한-EFTA · 한-EU · 한-터키) 고려 불필요** : 이들 3개 협정에서는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공구들 중 일부가 원산지상품으로 대체되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세트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록 ‘세트구성’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 **(한-아세안 · 한-페루 · 한-콜롬비아) 해당** : 이들 3개 협정에서는 검토 물품에 대한 『품목별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중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어 『품목별기준』은 충족되지만, 협정상 매칭(세트의 구성 포함)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어 충족한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아울러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앞에서 살펴 본 유럽권 3개 협정과 같이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공구들 중 일부가 원산지상품으로 대체되어 협정에서 정하고 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게 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한-인도) 고려 불필요** : 한-인도 CEPA의 경우 ‘CTSH+RVC 35’의 결합기준이 적용되어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기타 협정) 고려 불필요**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미 FTA 등 3개 협정은 검토 물품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

7. 검사 관련

1) 시험(실험)이나 측정

가. 물품개요

비원산지 모니터(monitor)를 수입하여 작동여부 및 색상 등을 ‘시험(testing)’ 한 후 수출하는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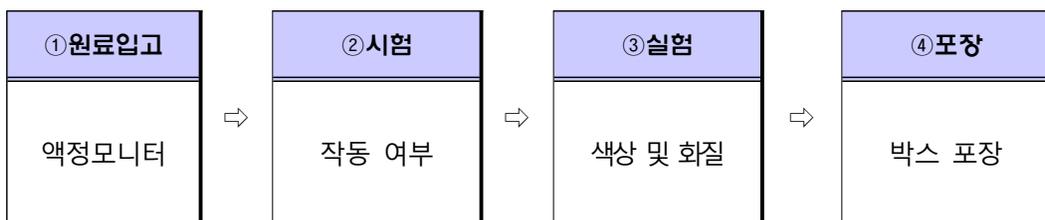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8528.51.1000	액정모니터	100,000	110,000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8528.51.1000	액정모니터	LCD monitor	-	1EA	90,000	미상
2	4819.10.0000	상자류	종이박스	-	1매	1,000	KR

제조공정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 세 안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 도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p>
E U	<p>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p>
페 루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미 국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7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8528.5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p>
터 키	<p>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p>
콜롬비아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CTC	불 충족
			RVC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CTC	불 충족
			RVC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한-페루 · 한-미 · 한-콜롬비아) 고려 불필요 : 이들 3개 협정에서는 ‘시험이나 측정(testing or calibrations)’ 이 불인정 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품목별기준』을 충족하면 ‘시험이나 측정(testing or calibrations)’ 만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기타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한-EFTA FTA와 한-인도 CEPA에서는 ‘시험이나 측정(testing or calibrations)’ 에 대해 ‘단순(simple)’ 한 것인지의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물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시험이나 측정(testing or calibrations)’ 만으로는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부가가치의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품목별기준』이 충족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구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협정들과 효력 면에서 차이가 없다.

2) 품질검사

가. 물품개요

비원산지 공기타이어를 수입하여 ‘품질검사(quality check)’ 를 거쳐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4011.10.1000	공기타이어	50,000	60,000	-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4011.10.1000	공기타이어	Pneumatic tyres	-	1EA	45,000	미상
2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비닐	-	1m	100	미상

□ 제조공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 산 지 결 정 기 준
칠 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 세 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인 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 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 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미 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콜롬비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CTC 불 충족
			RVC 불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계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8. 혼합 등 관련

1) 혼합(농산물)

가. 물품개요

비원산지 옥수수과 원산지 옥수수를 ‘혼합(mixing)’ 하여 사료용 옥수수를 제조해서 수출하는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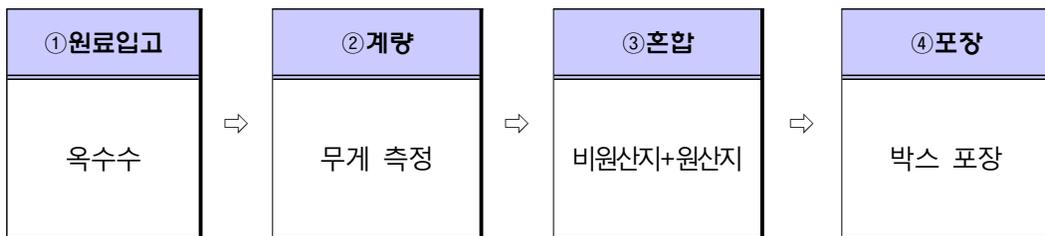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kg)	비고
1005.90.1000	사료용 옥수수	100,000	110,000	100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1005.90.1000	사료용 옥수수	옥수수	50	50kg	40,000	미상
2	1005.90.1000	사료용 옥수수	옥수수	50	50kg	45,000	KR

제조공정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 F T A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 세 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 도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 U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 루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001호 내지 제1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 충족	한-EU	불 충족
한-싱가포르	불 충족	한-페루	불 충족
한-EFTA	불 충족	한-미	불 충족
한-아세안	불 충족	한-터키	불 충족
한-인도	불 충족	한-콜롬비아	불 충족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전체 협정) 고려 불필요 : 불인정 공정은 특성상 『품목별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공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2) 혼합(화학제품)

가. 물품개요

원산지 및 비원산지 산화방지제를 별도의 화학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단순 혼합공정을 거쳐 다른 류에 분류되는 특정한 용도를 가진 새로운 산화방지제를 제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kg)	비고
3812.30.1000	산화방지조제품	10,000	11,000	5.0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29류	산화방지제	A	50	2.5kg	4,000	미상
2	29류	산화방지제	A*	50	2.5kg	4,000	KR

제조공정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아 세 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 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 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 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미 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09호 내지 제382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협정별 불인정 공정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족	한-EU	CTC : 충족 RVC : 충족
한-싱가포르	충족	한-페루	충족
한-EFTA	충족	한-미	충족
한-아세안	CTC : 충족 RVC : 충족	한-터키	CTC : 충족 RVC : 충족
한-인도	충족	한-콜롬비아	충족

□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한-칠레) 해당 : HS 제29류에 분류되는 두 물품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에 따라 특정 기계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 특정 입자 크기의 물품을 선별해서 HS 제38류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과정에서 진행된 공정이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열거하고 있는 ‘혼합→체질→선별’ 만이 진행되어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한-싱가포르) 해당 : HS 제29류에 분류되는 두 물품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에 따라 특정 기계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 특정 입자 크기의 물품을 선별해서 HS 제38류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과정에서 진행된 공정이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열거하고 있는 ‘단순혼합’ 에 해당되어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한-EFTA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EU · 한-페루 · 한-터키 · 한-콜롬비아) 해당 : HS 제29류에 분류되는 두 물품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에 따라 특정 기계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 특정 입자 크기의 물품을 선별해서 HS 제38류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과정에서 진행된 공정이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열거하고 있는 ‘혼합→체질→선별’ 만이 진행되어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혼합’ 의 예외에 해당하는 화학적 반응 또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
- (한-미) 비해당 : HS 제29류에 분류되는 두 물품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에 따라 특정 기계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 특정 입자 크기의 물품을 선별해서 HS 제38류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제6부의 주석 2’ 를 적용하여 세 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불인정 공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Part 2

최소허용기준

최소허용기준의 개요

1. 최소허용기준의 개념

최소허용기준이란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특정 비원산지재료로 인해 해당 제품에 설정되어 있는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비중이 개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생산된 제품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이다.

이때 허용되는 비원산지재료의 투입비중은 생산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모든 협정에서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개별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중량을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한다.

최소허용기준은 다른 말로 최소허용수준 또는 미소기준(De minimis or tolerance rule)이라고도 하는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협정별로 허용되는 비원산지재료의 양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 하고 있는가와 최소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을 어떤 물품으로 하고 있는가이다.

이중 최소허용기준의 적용대상물품을 살펴보면 협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품목을 기준으로 볼 때, HS 제50류~제63류에 해당하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일반품목에 비해 허용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HS 제1류~제24류까지의 농수축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하여 HS 제1류~제14류까지에 해당하는 기초농수축산물의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단위 세번변경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는 등 최소허용수준의 범위를 최소화 하고 있는 반면,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그 허용범위를 8~10% 수준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품목별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이 적용되는 HS 제8708호의 자동차용 에어백을 생산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 아래의 그림을 통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사례를 예시해보면, 국산 인플레이터와 중국산 커버 및 쿠션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 때 한국산(원산지재료)인 인플레이터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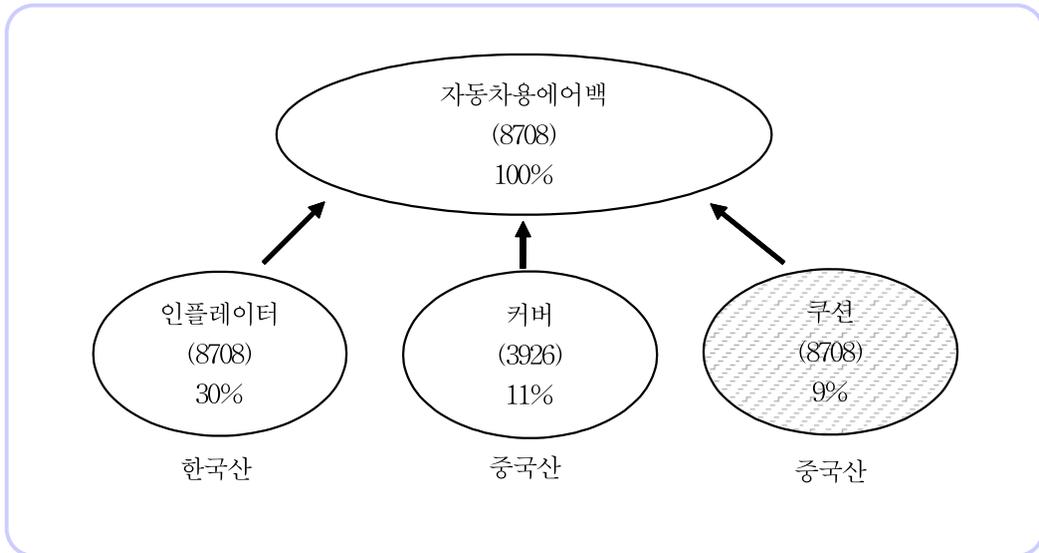
외하고 비원산지재료인 커버와 쿠션의 세번이 변경되어야 하나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중국산 쿠션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완제품인 자동차용에어백이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중국) 쿠션의 가격이 완제품인 에어백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완제품 가격의 10% 이내에서 최소 허용기준의 적용이 인정되는 등 사례의 경우 쿠션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에어백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림 2】 최소허용기준 적용사례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CTH

□ 최소허용기준 : 10%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년 개정판 원산지결정기준』, p.155.

2. 최소허용기준의 운영목적

최소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품목별기준』에서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 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특례규정으로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의 요건이 완화되게 되어 원산지상품의 인정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원산지 확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만약 최소허용기준이 특례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는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여야 하고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이들의 세번변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많아지게 되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원부자재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만 생산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이들 원부자재를 원산지물품으로 사용하여야만 하게 됨으로써 제품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규정 형태

1. 최소허용기준 규정형태

최소허용기준은 모든 협정에서 적용 방법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물품과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최소허용의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며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30) 중량을 기준으로 최소허용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50>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협정명	근거규정
한-칠레 FTA	· 제4.6조(최소허용기준)
한-싱가포르 FTA	· 제4.10조(최소허용기준)
한-EFTA FTA	· 부속서 I 제5조(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한-아세안 FTA	· 부속서3 제10조(최소허용기준)
한-인도 CEPA	· 제3.8조(최소허용기준)
한-EU FTA	·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 품목별원산지기준 주석 5, 주석 6
한-페루 FTA	· 부속서3 제3.7조(최소허용기준)
한-미 FTA	· 제6.6조(최소허용기준)
한-터키 FTA	·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 품목별원산지기준 주석 5, 주석 6
한-콜롬비아 FTA	· 부속서3 제3.7조(최소허용기준)

다만, 가격을 기준으로 최소허용의 수준이 결정되는 농수축산물은 일반물품과 달리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와 방법이 상이한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4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30) 물품 종류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농수축산물은 HS 제1류~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섬유 및 의류는 HS 제50류~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나머지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물품으로 구분한다.

<표 51>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요약

구 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미국	EU·터키	페루	콜롬비아
가격 기준	일반 품목	8%	10%		10%	10%	10%		10%	10%
	농수 산물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1류~14류 적용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제외)	10%	1류~14류 적용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제외)
중량 기준	섬유	8%	8%	10%	7%	10%	7%	8~30% 일부 가격기준	10%	10%
근거규정		제4.6조	제4.10조	부속서3 제10조	제3.8조	부속서1 제5조 제2~3항	· 제6.6조 부속서6나 · 제4.2조 제7항 (섬유)	제5조 2항 부속서1의 주석5.1 부속서2 목록	제3.7조	제3.7조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년 개정판 원산지결정기준』, p.156.

첫째, 기초농수축산물(HS 제1류~제14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가공농수축산물(HS 제15류~제24류)에 대해서는 일반물품과 동일한 비율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로 한-인도 CEPA와 한-페루 FTA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기초농수축산물(HS 제1류~제14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제외하지만 가공농수축산물(HS 제15류~제24류)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을 충족할 경우 일반물품과 동일한 비율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로 한-싱가포르 FTA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농수축산물(HS 제1류~제24류) 전체에 대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을 충족할 경우 일반물품과 동일한 비율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로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미 FTA 및 한-콜롬비아 FTA 등 4개 협정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중 한-미 FTA와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에는 다른 2개 협정과는 달리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넷째,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로 한-아세안 FTA, 한-EU FTA 및 한-터키 FTA가 이에 해당한다.

2.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근거 규정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협정문 제4장(원산지규정) 제4.6조에서 총 3개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상품 조정가격(AV : Adjusted Value)³¹⁾의 8% 이내일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HS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분류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6단위 세번과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6단위 세번이 상이한 경우에만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상품 조정가격의 8% 이내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8% 이내일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칠레 FTA에서는 물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허용되는 최소허용의 범위는 8%이며,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때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HS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농수축산물은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31) 제4.1조 정의

조정가격이라 함은 역내가치포함 비용 공식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은 모든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이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말한다.

<표 52> 한-칠레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4.6조 최소허용수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서 4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4.3조에 따라 산정된 상품의 조정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 하에서 원산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서 규정된 상품중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방사가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의 비율이 그 구성요소의 총 무게의 8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로 간주된다. 	<p>Article 4.6: De Minimi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ursuant to Annex 4, shall be considered originating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eight per cent of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determined pursuant to Article 4.3.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1 through 24 of the Harmonized System, unless the non-originating material is provided for in a different subheading from that of the good for which the origin is being determined under this Article.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that does not originate because certain fibres or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of the good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Annex 4, shall nonetheless be considered to originate if the total weight of all such fibres or yarns in that component is not more than eight per 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at component.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협정문 제4장(원산지규정) 제4.10조에서 총 3개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개의 호와 한 개의 단서조항으로 구성된 제1항에서는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가호에서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상품 관세가격(CV : Customs Value)³²⁾의 10%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호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제외하고 원산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지만, 역내가치포함 비율요건(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에 따라 용인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따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호에서는 HS 제1류부터 제14류에 해당하는 기초농수축산물은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호에서는 상품의 6단위 세번과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6단위 세번이 동일한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농수축산물은 HS 제15류부터 제24류에 속하면서 완제품과 6단위 기준에서의 세번이 동일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만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상품 관세가격의 10% 이내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세번의

32) 제4.1조 정의

관세가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원칙에 따라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상품 판매자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할 상품이나 재료의 가격, 또는
- 나.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그러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8% 이내일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싱가포르 FTA가 다른 협정에 비해 가지는 특징은 농수축산물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농수축산물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여타의 협정들이 HS 제1류부터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거나, HS 제1류부터 제14류에 해당하는 기초농수축산물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가공농수축산물은 별도의 제약 사항 없이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의 기초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도 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의 가공농수축산물의 경우에도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여야만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53> 한-싱가포르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4.10조 최소허용수준</p> <p>1. 부속서 4A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p> <p>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p> <p>나.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할 것</p> <p>그러나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p>	<p>Article 4.10: De Minimis</p> <p>1.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ursuant to Annex 4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p> <p>(a)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10) per cent of the customs value of the good; and</p> <p>(b)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criteria set forth in this Chapter for qualifying as an originating good.</p> <p>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however, be included in the value of</p>

<p>가치포함 비율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p> <p>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1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그리고</p> <p>나. 비원산지재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5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p> <p>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 중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방사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의 비율이 그 구성요소의 총 무게의 8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로 간주된다.</p>	<p>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for the good.</p> <p>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p> <p>(a) a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1 through 14 of the Harmonized System; and</p> <p>(b) a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15 through 24 of the Harmonized System unless the non-originating material is provided for in a different subheading from that of the good for which the origin is being determined under this Article.</p> <p>3.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that is not an originating good, because certain fibres or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of the good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do not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Annex 4A, shall nonetheless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 the total weight of all such fibres or yarns in that component is not more than eight (8) per 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at component.</p>
--	---

3) 한-EFTA FTA

한-EFTA FT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협정문 부속서 I 제1장(원산지규정) 제5조에서 총 2개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허용기준의 규정방식에 있어 한-EFTA FTA는 일반기준에서 별도로 최소허용기준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협정들과 달리 충분가공과 관련된 규정 속에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유럽권 협정들이 최소허용기준을 규정하는 공통된 방식이다.

규정형태를 보면 먼저 제5조 제2항에서 일반물품과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최소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호에서는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상품 공장도가격(EXW : Ex-Works Price)³³⁾의 10%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호에서는 섬유 및 의류의 경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10% 이내일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호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협정문의 부록 2(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규정되어 있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허용기준으로 인해 양해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비율)는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할 때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제3항에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HS 제1류부터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상품의 6단위 세번과 투입된 비원산재료의 6단위 세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EFTA FTA에서는 HS 제1류부터 제24류에 속하는 농수축산물은 완제품과 6단위 기준에서의 세번이 동일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만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상품 공장도가격의 10% 이내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EFTA FTA의 최소허용기준의 적용방식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타의 협정에 비해 따로 세번변경기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³⁴⁾

33) 제1조 정의

공장도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다.

<표 54> 한-EFTA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5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p> <p>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는 비원산지 재료는 다음의 경우 사용될 수 있다.</p> <p>가. HS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하여는,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p> <p>나. HS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p> <p>다. 이 항의 적용을 포함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이 부록 2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2항은 HS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Article 5: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p> <p>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according to the conditions set out in Appendix 2, should not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product may nevertheless be used, provided that:</p> <p>(a) or products except for those falling within Chapters 50 to 63 of the HS, their total value does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and</p> <p>(b) for products falling within Chapters 50 to 63 of the HS, their total weight of basic textile material used does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total weight of all the basic textile materials used; and</p> <p>(c) any of the percentages given in Appendix 2 for the maximu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re not exceed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p> <p>3.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a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1 through 24 of the HS unless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is provided for in a different subheading from that of the good for which the origin is being determined under this Article.</p>

34) 이는 한-EU FTA와 한-터키 FTA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4)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협정문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10조에서 총 2개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개의 호와 한 개의 단서조항으로 구성된 제1항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가호에서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의 경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FOB가격의 10%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지는 나호에서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10% 이내일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단서를 따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지만, 역내가치포함 비율요건(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에 따라 용인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소허용기준으로 인해 양해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비율)가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할 때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 계산되도록 하고 있다.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아세안 FTA가 다른 협정에 비해 가지는 특징은 당해 규정의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타의 협정들이 농수축산물의 경우 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의 기초농수축산물은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단위 세번변경 이상이 발생하여야만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아세안 FTA에서는 별도의 제약 조건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동일하게 10% 범위 내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55> 한-아세안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10조 최소허용수준></p> <p>1.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p> <p>가.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나.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특정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부속서상 규정된 모든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p> <p>2.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RVC 요구조건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된다.</p>	<p>Rule 10 : De Minimis</p> <p>1.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p> <p>(a) for a good, other than that provided for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1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p> <p>(b) for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weight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10)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e good;</p> <p>and the good specified in sub-paragraph (a) and (b) meets all other applicable criteria set forth in this Annex for qualifying as an originating good.</p> <p>2.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however,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VC requirement for the good.</p>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협정문 제3장(원산지규정) 제3.8조에서 총 2개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는 제1항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가호에서 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의 기초농수축산물과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의 가공농수축산물을 포함한다)의 경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FOB가격³⁵⁾의 10% 이내일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나호에서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7% 이내일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호에서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단서를 따로 제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지만, 역내가치포함 비율요건(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에 따라 용인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소허용기준으로 인해 양해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비율)가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할 때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 계산되도록 하고 있다.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인도 CEPA가 다른 협정에 비해 가지는 특징은 섬유 및 의류에 대해 당해 규정의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타의 협정들이 8~10% 수준의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는데 반해 한-인도 CEPA는 한-미 FTA와 더불어 가장 적은 허용수준인 7%를 양해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35) 제3.1조 정의

FOB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표 56> 한-인도 CEP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3.8조 최소허용수준></p> <p>1. 생산의 최종 공정에서 제3.4조 및 부속서 3-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p> <p>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 섬유 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 재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p> <p>다.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p> <p>2.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 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p>	<p>ARTICLE 3.8: DE MINIMIS</p> <p>1.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3.4 and Annex 3-A in the final process of production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p> <p>(a) for goods except for those falling within Chapters 1 through 14 and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which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p> <p>(b) for goods falling with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the total weight of non-originating basic textile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which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seven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all the basic textile materials used; and</p> <p>(c)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criteria set forth in this Chapter for qualifying as an originating good.</p> <p>2.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for the good.</p>

6) 한-EU FTA

한-EU FT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일반물품과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섬유 및 의류를 구분하여 일반물품은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에서 규정하고,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부속서 1 ‘부속서 2(품목별기준)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규정방식은 일반기준에서 별도로 최소허용기준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협정들과 달리 한-EFTA FTA와 마찬가지로 충분가공과 관련된 규정 속에 별개의 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규정형식을 보면 먼저 제2항 가호에서 일반물품의 경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상품 공장도가격(EXW : Ex-Works Price)³⁶⁾의 10%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호에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품목별기준』에서 요구되어지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허용기준으로 인해 양해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비율)는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할 때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허용기준이 HS 제50류부터 제63류에 해당하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EU FTA가 다른 협정에 비해 가지는 특징은 당해 규정의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타의 협정들이 농수축산물의 경우 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의 기초농수축산물은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단위 세번변경 이상이 발생하여야만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EU FTA에서는 별도의 제약 조건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동일하게 10% 범위 내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36) 제1조 정의

공장도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내국세를 공제한다.

<표 57> 한-EU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5조 충분히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p> <p>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p> <p>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p> <p>3. 제2항은 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p>	<p><Article 5 :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Products></p> <p>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according to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list in Annex II, should not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product may nevertheless be used, provided that:</p> <p>(a) their total value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and</p> <p>(b) any of the percentages given in the list in Annex II for the maximu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re not exceed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p> <p>3.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products falling within Chapters 50 to 63 of the HS.</p>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과는 별도로 부속서 1에 따로 제시되어 있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최소허용기준은 주석 5와 주석 6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석 5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고 주석 6은 HS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만 적용된다.

주석 5는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총 4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5.1조에서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모든 기초 방직 재료 중 10% 이하의 기초 방직 재료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제5.3조 및 제5.4조도 참조하도록 규정하여 별도로 정한 허용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제5.2조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을 둘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로 만들어진 혼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초 방직 재료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에 대한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규정에 열거된 기초 방직 재료 중 둘 이상이 혼용되어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만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비율이 양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5.3조 및 제5.4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0%의 최소허용범위가 적용되지 않고 20% 또는 30%의 허용범위가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HS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주석 6은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총 3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최소허용기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은 제6.1조와 제6.3조 2개의 조항이다.³⁷⁾

먼저, 제6.1조에서는 해당 주석의 참조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안감과 심감을 제외하고 8%의 최소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방직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하며, 최소허용기준의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여타의 다른 협정들이 섬유 및 의류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EU FTA에서는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제6.3조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될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제6.2조에 따라 HS 제50류부터 제63류에 분류되는 물품의 생산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라 할지라도 부가가치를 계산할 경우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 계산되도록 하고 있다.

한-EU FTA가 다른 협정에 비해 가지는 특징은 한-EFTA FTA와 마찬가지로 여타의 협정들이 최소허용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허용범위가 품목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적용물품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37) 제6.2조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 조항으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최소허용기준의 특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협정에서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산정을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EU FTA에서는 HS 제61류 및 제62류에 해당하는 의류와 제63류의 기타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공장도 가격을 최소허용기준의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표 58> 한-EU FTA '섬유 및 의류'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p> <p>[주석 5]</p> <p>5.1. 목록에 제시된 제품에 대해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제3열에 규정된 조건은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합산되는 경우 사용된 모든 기초 방직 재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초 방직 재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아래의 주석 5.3 및 5.4도 참조).</p> <p>5.2. 그러나 주석 5.1에 언급된 최소허용치는 단지 둘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기초 방직 재료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 - 양모 - 조수모 - 섬수모 - 마모 - 면 - 제지 원료 및 종이 - 아마 - 대마 	<p><Annex I Introductory Notes to the in Annex II></p> <p>Note 5:</p> <p>5.1 Where, for a given product in the list, reference is made to this Note, the conditions set out in column 3 shall not be applied to any basic textile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is product and which, taken together, represent 10 percent or less of the total weight of all the basic textile materials used.(see also Notes 5.3 and 5.4 below)</p> <p>5.2 However, the tolerance mentioned in Note 5.1 may be applied only to mixed products which have been made from two or more basic textile materials. The following are the basic textile materi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 - wool, - coarse animal hair, - fine animal hair, - horsehair, - cotton, - paper-making materials and paper, - flax, - true hemp,

-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 사이잘삼 및 기타 아게부류의 방직용 섬유
- 코코넛, 아바카, 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합성 인조 필라멘트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 전도성 필라멘트
-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폴리에테르의 연결 조각을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집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폴리에스테르의 연결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집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5605호의 제품(금속드리사)
- 제5605호의 기타 제품

예 : 제5203호의 면섬유 및 제5506호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제5205호의 사는 혼방사이다. 그러므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합성 스테이플 섬유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총중량이 사의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 : 제5107호의 양모사와 제5509호의 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 만들어진

- 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 sisal and other textile fibres of the genus Agave,
- coconut, abaca, ramie and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 synthetic man-made filaments,
- artificial man-made filaments,
- current-conducting filaments,
- synthetic man-made staple fibres,
- artificial man-made staple fibres,
-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ther, whether or not gimped,
-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ster, whether or not gimped,
- products of heading 5605 (metallised yarn) incorporating strip consisting of a core of aluminium foil or of a core of plastic film whether or not coated with aluminium powder, of a width not exceeding 5 mm, sandwiched by means of a transparent or coloured adhesive between two layers of plastic film,
- other products of heading 5605.

Example : A yarn, of heading 5205, made from cotton fibres of heading 5203 and synthetic staple fibres of heading 5506, is a mixed yarn. Therefore, non-originating synthetic staple fibres which do not satisfy the origin-rules(which require manufacture from chemical materials or textile pulp)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ir total weight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yarn.

Example : A woollen fabric, of heading 5112, made from woollen yarn of heading 5107 and

제5112호의 모직물은 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합성사 또는 원산지 규정(카드 또는 코움을 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방적처리를 위해 준비되지 아니한 천연섬유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양모사 또는 그 둘의 결합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총중량이 직물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 : 제5205호의 면사와 제5210호의 면직물로부터 만들어진 제5802호의 터후트직물은 면직물 그 자체가 두 개의 별도의 호에 분류된 사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직물이거나 사용된 면사 자체가 혼방인 경우에만 혼방 제품이다.

예 : 해당 터후트직물이 제5205호의 면사 및 제5407호의 합성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경우, 사용된 사는 명백히 두 개의 별도의 기초 방직 재료이고 따라서 터후트직물은 그 자체로 혼방 제품이다.

5.3. “폴리에테르의 연결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허용치는 이 사에 대해 20퍼센트이다.

5.4.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

synthetic yarn of staple fibres of heading 5509, is a mixed fabric. Therefore, synthetic yarn which does not satisfy the origin-rules (which require manufacture from chemical materials or textile pulp), or woollen yarn which does not satisfy the origin-rules(which require manufacture from natural fibres, not carded or combed or otherwise prepared for spinning), or a combination of the two,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ir total weight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fabric.

Example : Tufted textile fabric, of heading 5802, made from cotton yarn of heading 5205 and cotton fabric of heading 5210, is only a mixed product if the cotton fabric is itself a mixed fabric made from yarns classified in two separate headings, or if the cotton yarns used are themselves mixtures.

Example : If the tufted textile fabric concerned had been made from cotton yarn of heading 5205 and synthetic fabric of heading 5407, then, obviously, the yarns used are two separate basic textile materials and the tufted textile fabric is, accordingly, a mixed product.

5.3. In the case of products incorporating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ther, whether or not gimped”, this tolerance is 20 percent in respect of this yarn.

5.4. In the case of products incorporating “strip consisting of a core of aluminium foil or of a core of plastic film whether or not coated with aluminium powder, of

같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최소허용치는 이 스트립에 대해 30퍼센트이다.

[주석 6]

6.1. 목록에서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목록의 제3열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 재료를 (안감과 심감은 예외)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2. 주석 6.3을 저해함이 없이,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그 재료가 직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 제품의 생산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예 : 목록의 규정이 특정 직물물품(바지와 같은)에 대해 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단추와 같은 금속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단추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는 지퍼가 통상적으로 직물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3.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는 결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a width not exceeding 5 mm, sandwiched by means of a transparent or coloured adhesive between two layers of plastic film“, this tolerance is 30 percent in respect of this strip.

Note 6:

6.1. Where, in the list, reference is made to this Note, textile materials(with the exception of linings and interlinings), which do not satisfy the rule set out in the list in column 3 from the made-up product concerned,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y are classified in a heading other than that of the product and that their value does not exceed eight percent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6.2. Without prejudice to Note 6.3, materials, which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 50 to 63, may be used freely in the manufacture of textile products, whether or not they contain textiles.

Example : If a rule in the list provides that, for a particular textile item (such as trousers), yarn must be used, this does not prevent the use of metal items, such as buttons, because buttons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s 50 to 63. For the same reason, it does not prevent the use of slide-fasteners, even though slide-fasteners normally contain textiles.

6.3. Where a percentage-rule applies, the value of materials which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 50 to 63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incorporated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협정문 제3장(원산지규정) 제3.7조에서 총 2개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개의 호로 구성된 제1항에서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상품 가치³⁸⁾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최소허용범위의 산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호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지만 역내가치포함 비율요건(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에 따라 용인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소허용기준으로 인해 양해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비율)가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할 때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 계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나호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에 해당하는 기초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며,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는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10% 이내일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페루 FTA가 가지는 특징은 한-싱가포르 FTA 및 한-인도 CEPA와 마찬가지로 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의 기초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는 등 농수축산물에 대해 적용되는 범위가 좁다는 점이다.

다만, 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의 가공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협정들이

38) 상품 가치란 FOB가격을 의미한다.

6단위 세 번변경기준을 충족해야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한-페루 FTA는 이러한 제한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6단위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최소허용수준 이내에서는 투입이 가능하다.

<표 59> 한-페루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3.7조 최소허용수준〉</p> <p>1. 다음의 경우, 부속서 3가에 따라 세 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그 상품의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p> <p>가.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모든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해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었을 것. 그리고</p> <p>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p>2. 제1항은 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 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되는 세 번변경을 거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p>	<p>Article 3.7: De Minimis</p> <p>1.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3A shall nonetheless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in its production and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value of the good,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if:</p> <p>(a)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is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and</p> <p>(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p> <p>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goods classified in Chapters 1 through 14 and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A good classified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be considered an originating good if the total weight of all non-originating fibers or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that</p>

상품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at good, that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good.

8) 한-미 FTA

한-미 FT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일반물품과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섬유 및 의류를 구분하여 일반물품은 협정문 제6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6.6조에서 규정하고,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협정문 제4장(섬유 및 의류) 제4.2조(원산지규정 및 관련 시안)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제6.6조의 적용에 있어 적용이 배제되는 농수축산물을 다른 협정들과 달리 부속서 6-나에서 별도로 제시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수축산물을 포함하여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규정형식을 보면 먼저 제1항에서 부속서 6-나에서 동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물품의 경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조정가치(AV : Adjusted Value)³⁹⁾의 10% 이내일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치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고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에 해당하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은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시장) 제7항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제6.22조 정의

조정가치라 함은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그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로서, 필요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의 국제운송에 수반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부과금 또는 경비를 제외하여 조정된 가치를 말한다.

<표 60> 한-미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6.6조 최소허용수준></p> <p>1.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2.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 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제 7항이 제1항을 대신하여 적용된다.</p>	<p>Article 6.6: De Minimis</p> <p>1. Except as provided in Annex 6-B,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ursuant to Annex 6-A is nonetheless originating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nd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provided that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and that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p> <p>2. With respect to a textile or apparel good, Article 4.2.7(Rules of Origin and Related Matters) applies in place of paragraph 1.</p>

한-미 FTA에서는 부속서 6-나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해 제6.6조(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동 조항의 규정형태는 가호부터 차호까지의 10개 항목에서는 특정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재료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11번째 항목인 카호에서는 가호부터 차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포함하여 HS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6단위 세번과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6단위 세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는 HS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한-칠레 FTA나 한-EFTA FTA 등과 같이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6단위 세번이 완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며, 부속서 6-나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경우에는 6단위 세번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표 61> 한-미 FTA '농수축산물' 최소허용기준 적용예외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p> <p>제6.6조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3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p> <p>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4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제1901.90호나 제2106.90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낙농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p> <p>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4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1901.90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낙농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며 다음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 제 1901.10호로 분류된 유아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을 중량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제 1901.20호로 분류된 혼합물 및 가루 반죽으로서 소매용이 아니며 버터지를 중량으로 25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제1901.90호 또는</p>	<p>ANNEX 6-B EXCEPTIONS TO ARTICLE 6.6</p> <p>Article 6.6 shall not apply to :</p> <p>(a)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3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in that Chapter;</p> <p>(b)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4, or a non-originating dairy preparation containing over ten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1901.90 or 2106.90,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in that Chapter;</p> <p>(c)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4, or a non-originating dairy preparation containing over ten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1901.90,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following goods: infant preparations containing over ten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1901.10; mixes and doughs, containing over 25 percent by weight of butterfat, not put up for retail sale, classified under subheading 1901.20; dairy preparations containing over ten percent by weight of</p>

<p>제2106.90호로 분류된 낙농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 제2105호로 분류된 상품, 제2202.90호로 분류된 우유를 포함한 음료, 또는 제2309.90호로 분류된 동물사료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것</p>	<p>milk soli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1901.90 or 2106.90; goods classified under heading 21.05; beverages containing milk classified under subheading 2202.90; or animal feeds containing over ten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2309.90;</p>
<p>라. 제0703.10호, 제0703.20호, 제0709.59호, 제0709.60호, 제0710.21호 내지 제0710.80호, 제0711.90호, 제0712.20호, 제0712.39호 내지 제0713.10호, 또는 제0714.20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7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p>	<p>(d)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7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subheading 0703.10, 0703.20, 0709.59, 0709.60, 0710.21 through 0710.80, 0711.90, 0712.20, 0712.39 through 0713.10, or 0714.20;</p>
<p>마. 제1006호, 제1102호, 제1103호, 제1104호, 제1901.20호 또는 제1901.90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1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쌀 제품, 또는 제1006호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p>	<p>(e)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under heading 10.06, or a non-originating rice product classified in HS Chapter 11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heading 10.06, 11.02, 11.03, or 11.04, or subheading 1901.20 or 1901.90;</p>
<p>바. 제2009.11호 내지 제2009.39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 또는 제2106.90호 또는 제2202.90호로 분류된 농축 또는 비농축된 것으로서 미네랄 또는 비타민으로 강화된 단일의 과일이나 야채의 과일 주스 또는 야채 주스에 사용되며 제0805호 또는 제2009.11호 내지 제2009.39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p>	<p>(f)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under heading 08.05 or subheading 2009.11 through 2009.39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subheading 2009.11 through 2009.39, or in fruit or vegetable juice of any single fruit or vegetable, fortified with minerals or vitamins, concentrated or unconcentrated, classified under subheading 2106.90 or 2202.90;</p>
<p>사. 제2008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8류 또는 제20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복숭아·배 또는 살구</p>	<p>(g) non-originating peaches, pears, or apricots classified in HS Chapters 8 or 20, that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heading 20.08;</p>

<p>아. 제1501호 내지 제1508호, 제1512호, 제1514호 또는 제1515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5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p>	<p>(h)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15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heading 15.01 through 15.08, 15.12, 15.14, or 15.15;</p>
<p>자. 제1701호 내지 제1703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제1701호로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p>	<p>(i)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under heading 17.01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heading 17.01 through 17.03;</p>
<p>차. 제1806.10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7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p>	<p>(j)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17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subheading 1806.10; or</p>
<p>카. 가호 내지 차호와 부속서 6-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p>	<p>(k) except as provided under paragraphs (a) through (j) and in the specific rules of origin under Annex 6-A, a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in HS Chapters 1 through 24 unless the non-originating material is classified under a different subheading than the good for which origin is being determined</p>

한-미 FTA에서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경우 하나의 규정에서 별개의 항이나 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협정들과 달리 한-EU FTA나 한-터키 FTA와 같이 별개의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 FTA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최소허용기준은 제4.2조(원산지규정 및 관련 시안)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는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7% 이내일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만약 상품의 구성요소에 탄성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탄성사가 계약당사국 내에서 만들어진 원산지상품이 사용된 경우에만 세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62> 한-미 FTA '섬유 및 의류'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4.2조 원산지규정 및 관련 시안></p> <p>최소허용수준</p> <p>7.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에 탄성사가 들어있는 상품은 그러한 원사가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p> <p>* 제7항의 목적상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추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p>	<p>Article 4.2: Rules of Origin and Related Matters</p> <p>De Minimis</p> <p>7. A textile or apparel good that is not an originating good because certain fibers or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of the good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do not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Annex 4-A shall nonetheless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if the total weight of all such fibers or yarns in that component is not more than seven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at component.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sentence, a good containing elastomeric yarns in the component of the good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shall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only if such yarns are wholly form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p> <p>* For purposes of paragraph 7 wholly formed and finished mean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beginning with the extrusion of filaments, strips, film, or sheet, and including drawing to fully orient a filament or slitting a film or sheet into strip, or the</p>

원사로 방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spinning of all fibers into yarn, or both, and ending with a finished yarn or plied yarn.

9) 한-터키 FTA

한-터키 FT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한-EU FTA와 동일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일반물품과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섬유 및 의류를 구분하여 일반물품은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5조에서 규정하고,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부속서 1 ‘부속서 2(품목별기준)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규정방식은 일반기준에서 별도로 최소허용기준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협정들과 달리 한-EFTA FTA 및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충분가공과 관련된 규정 속에 별개의 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규정형식을 보면 먼저 제2항 가호에서 일반물품의 경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상품 공장도가격(EXW : Ex-Works Price)⁴⁰⁾의 10%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지는 나호에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품목별기준에서 요구되어지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허용기준으로 인해 양해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비율)는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할 때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허용기준이 HS 제50류부터 제63류에 해당하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터

40) 제1조 정의

공장도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내국세를 공제한다.

키 FTA가 다른 협정에 비해 가지는 특징은 당해 규정의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타의 협정들이 농수축산물의 경우 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의 기초농수축산물은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단위 세번변경 이상이 발생하여야만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터키 FTA에서는 한-EU FTA와 같이 별도의 제약 조건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동일하게 10% 범위 내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63> 한-터키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5조 충분히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p> <p>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p> <p>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p> <p>3. 제2항은 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p>	<p><Article 5 :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Products></p> <p>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according to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list in Annex II, should not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product may nevertheless be used, provided that:</p> <p>(a) their total value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and</p> <p>(b) any of the percentages given in the list in Annex II for the maximu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re not exceed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p> <p>3.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products falling within Chapters 50 to 63 of the HS.</p>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과는 별도로 부속서 1에 따로 제시되어 있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최소허용기준은 주석 5와 주석 6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석 5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고 주석 6은 HS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만 적용된다.

주석 5는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총 4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5.1조에서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섬유 및 의류의 경우 모든 기초 방직재료 중 10% 이하의 기초 방직 재료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제5.3조 및 제5.4조도 참조하도록 규정하여 별도로 정한 허용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제5.2조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을 둘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로 만들어진 혼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초 방직 재료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에 대한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규정에 열거된 기초 방직 재료 중 둘 이상이 혼용되어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만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비율이 양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5.3조 및 제5.4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0%의 최소허용범위가 적용되지 않고 20% 또는 30%의 허용범위가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HS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주석 6은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총 3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최소허용기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은 제6.1조와 제6.3조 2개의 조항이다.⁴¹⁾

먼저, 제6.1조에서는 해당 주석의 참조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안감과 심감을 제외하고 8%의 최소허용기준이 적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방직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하며, 최소허용기준의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여타의 다른 협정들이 섬유 및 의류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터키 FTA에서는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제6.3조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될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제6.2조에 따라 HS 제50류부터 제63류에 분류되는 물품의 생산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

41) 제6.2조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 조항으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최소허용기준의 특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라 할지라도 부가가치를 계산할 경우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 계산 되도록 하고 있다.

한-터키 FTA가 다른 협정에 비해 가지는 특징은 한-EFTA FTA나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여타의 협정들이 최소허용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한-터키 FTA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허용범위가 품목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적용물품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협정에서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산정을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터키 FTA에서는 HS 제61류 및 제62류에 해당하는 의류와 제63류의 기타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공장도 가격을 최소허용기준의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표 64> 한-터키 FTA '섬유 및 의류'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5]</p> <p>5.1. 목록에 제시된 제품에 대해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제3열에 규정된 조건은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합산되는 경우 사용된 모든 기초 방직 재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초 방직 재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아래의 주석 5.3 및 5.4도 참조).</p> <p>5.2. 그러나 주석 5.1에 언급된 최소허용치는 단지 둘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기초 방직 재료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 - 양모 	<p><Annex I Introductory Notes to the in Annex II> Note 5:</p> <p>5.1 Where, for a given product in the list, reference is made to this Note, the conditions set out in column 3 shall not be applied to any basic textile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is product and which, taken together, represent 10 percent or less of the total weight of all the basic textile materials used.(see also Notes 5.3 and 5.4 below)</p> <p>5.2 However, the tolerance mentioned in Note 5.1 may be applied only to mixed products which have been made from two or more basic textile materials. The following are the basic textile materi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 - wool,

- 조수모
- 섬수모
- 마모
- 면
- 제지 원료 및 종이
- 아마
- 대마
-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 사이잘삼 및 기타 아케부류의 방직용 섬유
- 코코넛, 아바카, 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합성 인조 필라멘트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 전도성 필라멘트
-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폴리에테르의 연결 조각을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폴리에스테르의 연결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 5605호의 제품(금속드리사)
- 제5605호의 기타 제품

예 : 제5203호의 면섬유 및 제5506호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제5205호의 사는 혼방사이다. 그러므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

- coarse animal hair,
- fine animal hair,
- horsehair,
- cotton,
- paper-making materials and paper,
- flax,
- true hemp,
- 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 sisal and other textile fibres of the genus *Agave*,
- coconut, abaca, ramie and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 synthetic man-made filaments,
- artificial man-made filaments,
- current-conducting filaments,
- synthetic man-made staple fibres,
- artificial man-made staple fibres,
-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ther, whether or not gimped,
-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ster, whether or not gimped,
- products of heading 5605 (metallised yarn) incorporating strip consisting of a core of aluminium foil or of a core of plastic film whether or not coated with aluminium powder, of a width not exceeding 5 mm, sandwiched by means of a transparent or coloured adhesive between two layers of plastic film,
- other products of heading 5605.

Example : A yarn, of heading 5205, made from cotton fibres of heading 5203 and synthetic staple fibres of heading 5506, is a mixed yarn. Therefore, non-originating synthetic staple fibres

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 원산지 합성 스테이플 섬유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총중량이 사의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 : 제5107호의 양모사와 제5509호의 합성 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 만들어진 제5112호의 모직물은 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합성사 또는 원산지 규정(카드 또는 코움을 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방적처리를 위해 준비되지 아니한 천연섬유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양모사 또는 그 둘의 결합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총중량이 직물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 : 제5205호의 면사와 제5210호의 면직물로부터 만들어진 제5802호의 터후트직물은 면직물 그 자체가 두 개의 별도의 호에 분류된 사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직물이거나 사용된 면사 자체가 혼방인 경우에만 혼방 제품이다.

예 : 해당 터후트직물이 제5205호의 면사 및 제5407호의 합성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경우, 사용된 사는 명백히 두 개의 별도의 기초 방직 재료이고 따라서 터후트직물은 그 자체로 혼방 제품이다.

5.3.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허용치는 이 사에 대해 20퍼센트이다.

which do not satisfy the origin-rules(which require manufacture from chemical materials or textile pulp)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ir total weight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yarn.

Example : A woollen fabric, of heading 5112, made from woollen yarn of heading 5107 and synthetic yarn of staple fibres of heading 5509, is a mixed fabric. Therefore, synthetic yarn which does not satisfy the origin-rules (which require manufacture from chemical materials or textile pulp), or woollen yarn which does not satisfy the origin-rules(which require manufacture from natural fibres, not carded or combed or otherwise prepared for spinning), or a combination of the two,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ir total weight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fabric.

Example : Tufted textile fabric, of heading 5802, made from cotton yarn of heading 5205 and cotton fabric of heading 5210, is only a mixed product if the cotton fabric is itself a mixed fabric made from yarns classified in two separate headings, or if the cotton yarns used are themselves mixtures.

Example : If the tufted textile fabric concerned had been made from cotton yarn of heading 5205 and synthetic fabric of heading 5407, then, obviously, the yarns used are two separate basic textile materials and the tufted textile fabric is, accordingly, a mixed product.

5.3. In the case of products incorporating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ther, whether or not gimped“, this tolerance is 20 percent in respect of this yarn.

5.4.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최소허용치는 이 스트립에 대해 30퍼센트이다.

[주석 6]

6.1. 목록에서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목록의 제3열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 재료(안감과 심감은 예외)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2. 주석 6.3을 저해함이 없이,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그 재료가 직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 제품의 생산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예 : 목록의 규정이 특정 직물물품(바지와 같은)에 대해 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단추와 같은 금속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단추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는 지퍼가 통상적으로 직물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3.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는 결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5.4. In the case of products incorporating “strip consisting of a core of aluminium foil or of a core of plastic film whether or not coated with aluminium powder, of a width not exceeding 5 mm, sandwiched by means of a transparent or coloured adhesive between two layers of plastic film”, this tolerance is 30 percent in respect of this strip.

Note 6:

6.1. Where, in the list, reference is made to this Note, textile materials(with the exception of linings and interlinings), which do not satisfy the rule set out in the list in column 3 from the made-up product concerned,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y are classified in a heading other than that of the product and that their value does not exceed eight percent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6.2. Without prejudice to Note 6.3, materials, which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 50 to 63, may be used freely in the manufacture of textile products, whether or not they contain textiles.

Example : If a rule in the list provides that, for a particular textile item (such as trousers), yarn must be used, this does not prevent the use of metal items, such as buttons, because buttons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s 50 to 63. For the same reason, it does not prevent the use of slide-fasteners, even though slide-fasteners normally contain textiles.

6.3. Where a percentage-rule applies, the value of materials which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 50 to 63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incorporated.

10) 한-콜롬비아 FTA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협정문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3.7조에서 총 4개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개의 호로 구성된 제1항에서는 일반물품에 대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상품 조정가치⁴²⁾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최소허용범위의 산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비원산지재료가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지만 역내가치포함 비율요건(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에 따라 용인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소허용기준으로 인해 양해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비율)가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할 때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 계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나호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HS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분류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6단위 세번과 투입된 비원산재료의 6단위 세번이 상이한 경우에만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상품 조정가격의 10% 이내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수축산물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HS 제1501호부터 제1508호까지와 제1511호부터 제151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HS 제15류에 분류되는 비원산지재료가 원재료로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2) 제3.30조 정의

조정가치란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를 말한다.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가 없거나 알지 못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가치

따라서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농수축산물은 HS 제1류부터 제24류에 속하면서 완제품과 6단위 기준에서의 세번이 동일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만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상품 조정가격의 10% 이내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며, 제15류에 속하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적용되는 최소허용기준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10% 이내일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65> 한-콜롬비아 FTA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p><제3.7조 최소허용기준></p> <p>1.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이다. 다만,</p> <p>가.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모든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해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p> <p>나. 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2.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은 HS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분류된 상</p>	<p>Article 3.7 De Minimis</p> <p>1. A good that does not satisfy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equirement pursuant to Annex 3-A is nonetheless originating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nd that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provided that:</p> <p>(a)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and</p> <p>(b)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p> <p>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s classified in Chapter 1 through 24 of the HS, unless they are classified in a different</p>

<p>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은 HS 제1501호부터 제1508호까지 또는 제1511호부터 제1515호까지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HS 제15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4. 제1항은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 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p>	<p>subheading from that of the goods for which the origin is being determined under this Article.</p> <p>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non-originating materials classified in Chapter 15 of the HS that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s classified under headings 15.01 through 15.08 or 15.11 through 15.15 of the HS.</p> <p>4.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goods classified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A good classified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if the total weight of all non-originating fibers or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that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good.</p>
---	--

최소허용기준 적용 및 적용제외 사례 검토

1. 가격기준 적용사례

1) 냉동소갈비

가. 물품개요

신선 또는 냉장상태 비원산지 쇠갈비와 원산지 쇠갈비를 혼용하여 ‘냉동(Freezing)’ 공정을 거쳐 냉동 쇠갈비를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kg)	비고
0202.20.1000	냉동 쇠갈비	50,000	55,000	5.1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201.2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쇠갈비	-	1kg	3,000	미상
2	0201.2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쇠갈비	-	4kg	40,000	KR
3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박스	-	1매	300	KR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EFTA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아세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인도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E U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 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미 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의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제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 키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나.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적용여부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 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불 충 족	한-페루	불 충 족
한-EFTA	충 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충 족	한-터키	충 족
한-인도	불 충 족	한-콜롬비아	충 족

PSR불충족 비원산지재료 투입비율

FOB기준 : 5.45%

EXW기준 : 6.00%

□ 최소허용기준 적용 여부

- (적용불가)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페루 : 이들 3개 협정은 HS 제01류~제14류에 해당하는 기초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불가함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적용가능) 한-아세안, 한-EU, 한-터키 : 이들 3개 협정은 별도의 제한 없이 세번변경기준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전체 가격의 10% 이내에서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 (적용가능) 한-칠레, 한-EFTA, 한-미, 한-콜롬비아 : 이들 4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2) 유자차

가. 물품개요

유자차는 유자를 재료로 만든 차로서 신맛이 많고 신경통, 관절염 등에 유효하며 주독을 풀거나 소화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원산지 유자와 원산지 유자를 혼용하여 유자차를 생산한 경우 개별 협정별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2008.30.1000	유자차	1,500	1,600	200g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409.00.0000	천연꿀	벌꿀	-	10g	400	미상
2	1702.60.2000	그 밖의 당류	과당	-	10g	100	미상
3	2008.30.1000	유자	당침유자	-	80g	500	KR
4	2008.30.1000	유자	당침유자	-	40g	100	미상
5	2918.14.0000	시트르산	시트르산	-	10g	100	미상
6	1701.14.1000	사탕수수당	정백당	-	15g	100	미상
7	2201.10.0000	광천수	물	-	20g	100	KR
재 료 비 계						1,400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일, 견과류 및 채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8.19호 내지 제20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터키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일, 견과류 및 채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콜롬비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

나.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적용여부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족	한-EU	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충족
한-아세안	충족	한-터키	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충족

PSR불충족 비원산지재료 투입비율

FOB기준 : 3.33%

EXW기준 : 3.70%

□ **최소허용기준 적용 여부**

- (적용불가)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페루** : 이들 3개 협정은 HS 제01류~제14류에 해당하는 기초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불가함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적용불가) **한-칠레, 한-미, 한-콜롬비아** : 이들 3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의 경우 투입된 비원산지 유자의 세번의 6단위 수준에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적용가능) **한-아세안, 한-EU, 한-터키** : 이들 3개 협정은 별도의 제한 없이 세번변경기준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전체 가격의 10% 이내에서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 (적용가능) **한-EFTA** : 한-EFTA FTA의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은 가능하나 결합기준으로 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된장

가. 물품개요

된장은 메주로 장을 담궈 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로 만든 장으로 메주에 소금물을 알맞게 부어 익혀서 장물을 떠내지 않고 그냥 만들기도 한다. 된장은 간장과 함께 예로부터 전해진 우리나라의 조미식품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데 기본이 되는 식품으로, 나물을 무치는 조미료나 토장국 등을 끓이는 데 이용되고 여러 반찬을 만드는 데에도 이용된다.

□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2103.90.1010	된장	2,000	2,200	300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1201.90.9000	소이케이크용 및 간장원료	콩	-	150g	1,000	미상
2	2201.90.9000	정제수	물	-	50g	100	미상
3	2103.30.1000	겨자가루	겨자	-	10g	300	미상
4	2207.20.0000	변성하지 않은 알코올	알코올	-	10g	200	미상
5	2501.00.1020	천일염	소금		30g	300	미상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 산 지 결 정 기 준
칠 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 F T 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 세 안	1.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030호의 혼합조미료, 제2103.90.9090호의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 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 U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 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미 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 키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콜롬비아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나.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적용여부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 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불 충 족	한-페루	충 족
한-EFTA	충 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충 족	한-터키	충 족
한-인도	불 충 족	한-콜롬비아	불 충 족

PSR불충족 비원산지재료 투입비율

FOB기준 : 4.54%

EXW기준 : 5.00%

□ 최소허용기준 적용 여부

- (적용불가) 한-콜롬비아 : 한-콜롬비아 FTA는 해당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고려할 수 없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적용불가)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콜롬비아 : 이들 3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적용가능) 한-아세안, 한-EU, 한-터키 : 이들 3개 협정은 별도의 제한 없이 세번변경기준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전체 가격의 10% 이내에서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 (적용가능) 한-칠레, 한-EFTA, 한-미 : 이들 3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냉동 홍게 살

가. 물품개요

홍게 살이란 게를 익혀 살만 분리시킨 것으로 게는 익히면 그 안의 색소와 반응하여 주황색을 띠게 되는데 이로 인해 홍게 살로 불린다.

□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1605.10.1091	홍게 살	1,500	1,600	300g	-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0306.24.1090	게살	홍게	-	150g	1,200	KR
2	0306.24.1090	게살	홍게	-	10g	100	미상
3	2501.00.1020	천일염	소금		30g	50	미상
4	2201.90.9000	물	정제수	-	10g	50	미상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터 키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콜롬비아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적용여부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 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충 족	한-페루	충 족
한-EFTA	충 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충 족	한-터키	충 족
한-인도	충 족	한-콜롬비아	충 족

PSR불충족 비원산지재료 투입비율

FOB기준 : 6.25%

EXW기준 : 6.66%

□ 최소허용기준 적용 여부

- (적용불가) 한-아세안 : 한-아세안 FTA는 해당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고려할 수 없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 (적용불가) 한-칠레, 한-미, 한-콜롬비아, 한-싱가포르, 한-EFTA, 한-인도 : 이들 6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의 경우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들이 2단위 수준에서 변경되어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므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적용가능) 한-EU, 한-페루, 한-터키 : 이들 3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2. 중량기준 적용사례

1) 자수직물

가. 물품개요

자수란 바탕천에 여러 가지 색실로 무늬를 수놓아 장식하는 공예미술을 말하는 것으로 직물·편물·망·피혁·종이류 등의 표면에 실·끈·천 조각·피혁·비즈·깃털 등으로 누비거나 붙이거나 묶는 등의 방법으로 장식하는 수예기법 및 그런 작품의 총칭을 의미하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 직물을 자수직물이라고 한다.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5810.92.0000	자수직물	9,000	10,000	100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5402.32.1020	합성필라멘트사	실	-	5g	500	미상
2	6005.22.0000	경편직 직물	원단	-	80g	5,000	KR
3	5508.10.1000	나일론사	실	-	3g	500	KR
4	5605.00.0000	급속드리사	실	-	5g	500	KR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U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터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콜롬비아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적용여부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족	한-EU	충족
한-싱가포르	충족	한-페루	충족
한-EFTA	충족	한-미	충족
한-아세안	충족	한-터키	충족
한-인도	충족	한-콜롬비아	충족

PSR불충족 비원산지재료 투입비율 : 5%

□ 최소허용기준 적용 여부

- **(적용불가)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 이들 3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범위 이내만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의 경우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들이 4단위 수준에서 변경되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적용불가) 한-EFTA** : 한-EFTA FTA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범위 이내만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의 경우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들이 2단위 수준에서 변경되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적용불가) 한-EU, 한-터키** : 이들 2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범위 이내만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의 경우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들이 4단위 수준에서 변경되고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부가가치기준도 충족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적용가능) 한-칠레, 한-페루, 한-미, 한-콜롬비아** : 이들 4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범위 이내만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의 경우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원사 중 일부가 비원산지 원재료가 사용되었으나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허용기준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2) 합성섬유제 양말

가. 물품개요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가 분류되는데 여자 또는 남

자용의 구분 없이 발 및 다리(호스)와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 및 타이즈(발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스타킹 및 양말, 속 양말(주로 방한용에 사용되는 것),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과 같은 단계압박 양말류,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겹 양말, 바깥바닥과 갑피를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붙이지 아니한 신발류(유아용 털실 신 제외) 등이 모두 분류된다.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g)	비고
6115.96.0000	양말	700	750	100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5402.32.1020	합성필라멘트사	실	-	5g	500	미상
2	5604.12.0000	고무실과 고무끈	고무실	-	80g	5,000	KR
3	5508.10.1000	나일론사	실	-	3g	500	KR
4	5606.00.0000	짐프사	스판텍스	-	5g	500	KR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인도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E U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p>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p> <p>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p>
페 루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p>
미 국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p>
터 키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p>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p> <p>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p>
콜롬비아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나.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적용여부 검토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 정	충족여부	협 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 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충 족	한-페루	충 족
한-EFTA	충 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충 족	한-터키	충 족
한-인도	충 족	한-콜롬비아	충 족

PSR불충족 비원산지재료 투입비율 : 5%	
중량기준 5%	가격기준(EXW) 7.14%

□ **최소허용기준 적용 여부**

- **(적용불가)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 이들 4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범위 이내만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의 경우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들이 2단위 수준에서 변경되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적용불가) 한-EU, 한-터키** : 이들 2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범위(공장도가격 기준) 이내만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적용가능) 한-칠레, 한-페루, 한-미, 한-콜롬비아** : 이들 4개 협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범위 이내만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의 경우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원사 중 일부가 비원산지 원재료가 사용되었으나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허용기준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부 록

**불인정공정 회피
간편 비즈니스모델**

모델 1

볶음 공정(Roasting)만으로 커피의 FTA특혜수출 활용

□ 활용물품 : 볶은 커피(HS 제0901.21호 및 제0901.22호)

[협정별 활용가능성 및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명	기본세율	협정세율	세율차	활용가능성	원산지결정기준
FCL	8.0	0.0	8.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SG	8.0	0.0	8.0	×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FEF	8.0	1.4	6.6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FAS	8.0	0.0	8.0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FIN	8.0	5.5	2.5	×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FEU	8.0	4.0	4.0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PE	8.0	1.6	6.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FUS	8.0	3.2	4.8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FTR	8.0	5.6	2.4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CO	8.0	0.0	8.0	×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 (활용모델) 비원산지 볶지 않은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 볶음 공정(Roasting)만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후 FTA특혜 수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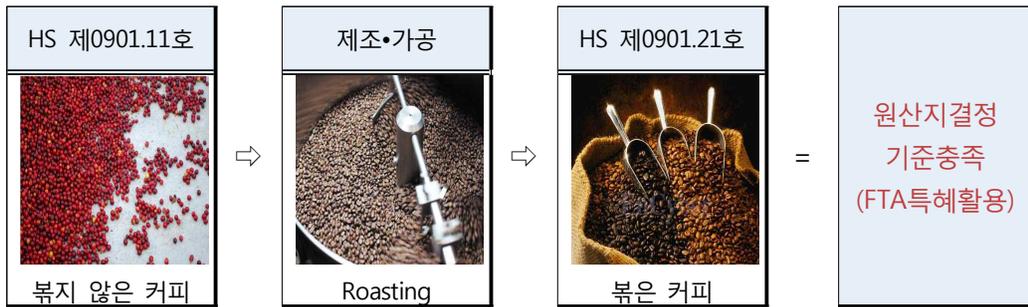
- 한-미 FTA는 커피에 대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 적용되고 있어 비원산지 볶지 않은 커피 원두(HS 제0901.11호)*를 우리나라에서 볶음 공정(Roasting)만을 거쳐 볶은 커피(HS 제0901.21호)**를 생산한 경우 FTA특혜 수출 가능

* 볶지 않은 커피의 경우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HS 제0901.11호에 분류되나 카페인을 제거한 것은 HS 제0901.12호에 분류

** 볶지 않은 커피의 경우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HS 제0901.21호에 분류되나 카페인을 제거한 것은 HS 제0901.22호에 분류

- 한-EU FTA와 한-터키 FTA는 커피에 대해 동일 호를 포함한 '4단위 세번 변경기준(within CTH)'이 적용되고 있어, 비원산지 볶지 않은 커피 원두 (HS 제0901.11호)를 우리나라에서 볶음 공정(Roasting)을 거쳐 볶은 커피 (HS 제0901.21호)를 생산한 경우 FTA특혜 수출 가능

[FTA특혜 활용과정]



모델 2

반가공품(Blank)을 활용한 골프채 FTA특혜수출 활용

□ 활용물품 : 골프채(HS 제9506.31호)

[협정별 활용가능성 및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명	기본세율	협정세율	세율차	활용가능성	원산지결정기준
FCL	8.0	0.0	8.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FSG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EF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AS	8.0	0.0	8.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FIN	8.0	0.0	8.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FEU	8.0	0.0	8.0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FPE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FUS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506호 내지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소호 제 9506.3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6.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FTR	8.0	0.0	8.0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FCO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 이상 또는 2. 공제법 45% 이상

□ **(활용모델)** 골프채에 있어 헤드는 손잡이 부분에 해당하는 샤프트에 비해 고도의 기술과 가공비가 발생하는 부분품으로 반가공품(blank) 상태의 역외산 헤드를 수입하여 정밀가공을 거쳐 골프클럽 헤드를 생산할 경우 FTA특혜 수출 가능

- 한-EU FTA와 한-터키 FTA는 골프채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하고 있으나, 반가공품(blank)* 상태의 골프클럽 헤드(HS 제9506.39호)는 역외산을 사용하여도 상관없도록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가공임이 저렴한 역외국가에서 헤드를 반가공품(blank) 상태로 제조하여 반입 후 정밀가공을 거쳐 샤프트와 결합하여 골프채를 생산할 경우 FTA특혜 수출 가능

* 반가공품이란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나 완전하거나 완성된 제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전한 제품이나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WCO사례 통칙 2가-1과 통칙 2가-2 참조)

[FTA특혜 활용과정]



모델 3

반가공품을 활용한 흡연용 파이프 FTA특혜수출 활용

□ 활용물품 : 흡연용 파이프(HS 제9614.00호)

[협정별 활용가능성 및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명	기본세율	협정세율	세율차	활용가능성	원산지결정기준
FCL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SG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EF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AS	8.0	0.0	8.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FIN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FEU	8.0	0.0	8.0	○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의 것으로부터 생산된 것
FPE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FUS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FTR	8.0	0.0	8.0	○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의 것으로부터 생산된 것
FCO	8.0	0.0	8.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공제법으로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활용모델) 흡연용 파이프는 심미적(審美的) 요소가 강한 품목으로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크나,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물품으로 반가공 상태의 역외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밀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FTA특혜 수출 가능

- 한-EU FTA와 한-터키 FTA는 흡연용 파이프에 대해 반가공품(blank)* 상태의 흡연용 파이프(HS 제9614.00호)를 역외산을 사용하여도 상관없도록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재료비 및 가공임이 저렴한 역외국가에서 반가공품 상태의 흡연용 파이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밀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FTA특혜 수출 가능

* 반가공품이란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나 완전하거나 완성된 제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전한 제품이나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WCO사례 통칙 2가-1과 통칙 2가-2 참조)

- 한-페루 FTA와 한-콜롬비아 FTA는 흡연용 파이프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역외산 반가공품(blank)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은 불가능하나 반가공품의 가격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FTA특혜 활용 가능

[FTA특혜 활용과정]



모델 4

재배만으로도 선인장 FTA특혜수출 Up!!

□ 활용물품 : 접목 선인장(HS 제0602.90호)

[협정별 활용가능성 및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명	기본세율	협정세율	세율차	활용가능성	원산지결정기준
FCL	8.0	0.0	8.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SG	8.0	0.0	8.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EF	8.0	6.4	1.6	△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FAS	8.0	0.0	8.0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FIN	8.0	5.5	2.5	○	제0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FEU	8.0	5.8	2.2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FPE	8.0	4.8	3.2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FUS	8.0	5.6	2.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601호 내지 제0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FTR	8.0	8.0	0.0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FCO	8.0	7.2	0.8	○	제0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 **(활용모델)** 식물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만을 규정하고 있는 완전생산기준을 활용하여 파종 후 발아 등을 거쳐 모종을 수확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FTA특혜수출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까지 일거양득(一舉兩得)

- * 식물성 생산품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은 종자의 파종부터 발아 등을 거쳐 모종을 생산하고 당해 모종으로부터 상품성이 있는 식물성 생산품이 수확될 것을 규정하지 않고, 상품이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되면 FTA특혜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3개 협정(한-아세안·한-인도·한-콜롬비아 FTA)은 선인장의 삼각주를 가격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한 후 모수와 접목 및 양생(재배)과정을 거쳐 접목선인장을 생산한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충족되어 FTA특혜활용 가능
- 완전생산기준과 더불어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유럽권 3개 협정(한-EFTA·한-EU·한-터키 FTA)은 역외산 삼각주의 사용이 가능하나 그 가격이 완제품인 접목선인장 가격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되어야 FTA활용 가능

모델 5

제재목, 대패질만으로도 FTA특혜수출이 가능!

□ 활용물품 : 제재목(HS 제4407호)

[협정별 활용가능성 및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명	기본 세율	협정 세율	세율차	활 용 가능성	원산지결정기준
FCL	8.0	0.0	8.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SG	8.0	0.0	8.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EF	8.0	6.4	1.6	△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FAS	8.0	0.0	8.0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FIN	8.0	5.5	2.5	○	제0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FEU	8.0	5.8	2.2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FPE	8.0	4.8	3.2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FUS	8.0	5.6	2.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601호 내지 제0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FTR	8.0	8.0	0.0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FCO	8.0	7.2	0.8	○	제0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주 : 제재목으로 만들어지는 원목의 종류가 다양하여 세율은 '삼나무(4407.10.1000)'를 기준으로 적용

□ **(활용모델)**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은 원목을 원재료로 하며 적당한 크기로 절단 등을 거쳐 생산된 반제품 상태의 제재목에 대패질 등 추가적인 성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거칠게 성형된 비원산지 제재목을 수입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대패질 등만을 거쳐 FTA특혜수출이 가능하므로 원목이 부족하고 가공임이 비싼 우리나라에 안성맞춤

- 한-EU FTA와 한-터키 FTA에서는 제재목에 대해 가공공정기준(대패질, 연마, 엔드-조인트 공정)을 적용하고 있어 원목을 제재목 형태로 거칠게 성형한 상태의 역외산 물품을 수입하여 체약당사국에서 대패질이나 연마 공정을 거쳐 상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제조한 경우 FTA특혜대상으로 인정*
- *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한-칠레, 한-미, 한-콜롬비아,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재료인 원목을 역외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제재목의 형태로 성형한 재료를 역외산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FTA특혜활용이 불가능

[FTA특혜 활용과정]



모델 6

펫(Pet)테크, 나도 할 수 있다!

□ 활용물품 : 곤충(HS 제0106.49호)

[협정별 활용가능성 및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명	기본세율	협정세율	세율차	활용가능성	원산지결정기준
FCL	8.0	0.0	8.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SG	8.0	0.0	8.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EF	8.0	6.4	1.6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FAS	8.0	0.0	8.0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FIN	8.0	3.0	5.0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FEU	8.0	0.0	8.0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FPE	8.0	0.0	8.0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FUS	8.0	0.0	8.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FTR	8.0	5.3	2.7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FCO	8.0	6.4	1.6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활용모델)** 애완용이나 학습용으로 주로 거래되는 곤충을 FTA를 활용하여 수출할 경우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모든 FTA협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은 계약당사국 또는 수출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될 경우' FTA특혜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곤충 등은 FTA를 활용하여 특혜수출 가능*

* 곤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로 각광받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 비단뱀 등 모든 살아 있는 동물이 이에 해당

- 최근 정부도 전략품종을 선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창업자금 지원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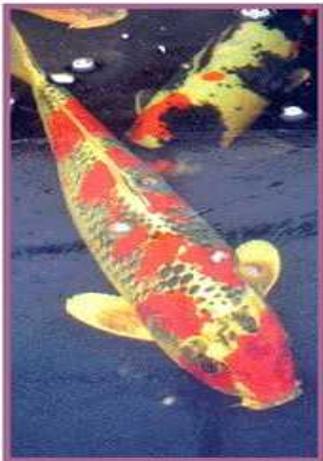
붙임 : 펫 테크 관련 기사(아시아경제 기사 2014.06.18.)

[금융이야기] 애완동물... 펫 테크가 뜬다

희소성 있는 관상어·곤충 등 수요 늘자 재테크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증가
정부, 전략품종 선정해 관련산업 육성...인기 열대어 파랑점자돔 1000마리 분양

3000만원짜리 비단잉어, 1억원짜리 왕사슴벌레. 최근 이색 재테크로 이른바 '펫(Pet)테크'가 뜨고 있다. 혈통 좋은 개부터 희귀하고 아름다운 관상어, 곤충 등 남들과 다른 동물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부터다. 아직은 '반려'의 성격이 강하지만 소수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층이 형성되면서 재테크의 목적으로 동물을 찾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000만원 비단잉어



1억원 왕사슴벌레



21억원 사자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상어는 최근 들어 가장 각광받고 있는 '펫테크'다. 전문가들은 잘 팔리는 관상어의 특징으로 아름다움과 희귀함을 꼽는다. 흔히 가정에서 기르는 열대어 중 빛깔이 고운 것은 20만~30만원대에 거래되고 희소성 있는 관상어들은 수천만원대를 호가한다.

특히 담수가오리나 해마처럼 일반 수족관에서 기를 수 없는 것들은 관리시설을 만들고 기르는데만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 탓에 대기업 임원이나 일부 부호들이 주로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상어의 인기가 높아지자 정부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 해삼, 참다랑어 등과 함께 관상어를 10대 전략 양식품종으로 선정해 품종을 개량하고 여러 어종들을 양식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수산물과학원 산하 미래양식연구센터는 인기 열대어 파랑점자돔의 인공종묘를 생산해 1000마리를 민간업체에 분양하기도 했다.

정민민 국립수산물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박사는 "현재 센터에서 민간에 분양할 수 있는 관상어종은 약 10종 정도"라며 "특히 관상어종 분양 사업을 고려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상어를 재테크 명목으로도 찾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현재 세계 관상어 시장 규모는 4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곤충 역시 '펫테크'의 한 종류로 인기를 얻고 있다. 왕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왕귀뚜라미 등이 주로 거래된다. 일본에서는 몇 해 전 8cm짜리 왕사슴벌레가 무려 1억원에 경매되기도 했다. 일본에선 사슴벌레 시장 규모만 3000억원을 상회한다. 세계적으로 애완용이나 관상용 곤충 시장규모는 이미 1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봉사업도 곤충을 이용한 '펫테크'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 양봉'을 국내에도 들여온 것이다.

직접 혈통이 좋은 개를 키워 분양해 수입을 올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귀농을 하거나 도시 외곽에 집을 구해 순수 혈통견을 통해 교배를 하고 새끼를 분양하는 것이다. 서울 외곽의 주택에서 삼살개를 분양하고 있는 김모(53)씨는 "교배비는 통상 50만원, 분양가격은 100만원을 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물이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교배과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몸값이 떨어지면 쉽게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수의사는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 중에는 위생이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학대에 가까운 환경에서 동물이 사육되는 곳도 있다"며 "생명체를 다루는 만큼 분양하고 기르는데 신중함이 요구 된다"고 조언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아시아경제, 2014.06.18.)